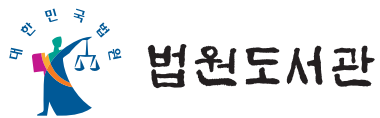


감사 직무 편람



머 리 말

법원도서관은 도산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모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4편으로 구성된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를 발간 하였습니다.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는, 법원도서관이 2011년 10월 발간한 『감사 직무 편람』과 『관리인 직무 편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년 발간한 『개인파산관재인 업무편람』과 『회생위원 실무편람』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012년 4월 발간한 『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과 『회생위원 직무 편람』으로 구성됩니다.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들 및 감사, 관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꼭 필요한 각종 법률과 실무 관행,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경험을 정리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이번에 2011년 10월 발간된 『감사 직무 편람』의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직무 편람(개정판)』은 2011년 10월 이후의 개정된 법 규정, 대법원 판결과 결정, 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방식의 변화까지 모두 반영한 것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쁜 업무 중에 개정 내용 반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들 및 감사 여러분, 이 책이 나오기까지 세심한 실무 작업을 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1.

법원도서관장 김 찬 돈

머 리 말

올해는 이른바 ‘통합도산법’으로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DIP)가 관리인 선임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자리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DIP 제도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의 사정을 잘 아는 기존경영자로 하여금 회사를 계속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기업이 신속하게 회생절차에 진입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인이 기업의 회생에 의지를 갖고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DIP 제도는 회생절차를 통해 기존경영자가 계속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채권자 등으로부터 도덕적 해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는 관리인의 업무처리와 자금사용을 감시하는 것을 기본 책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DIP 제도하에서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감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사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감사들이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 직무 편람』을 발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산전자소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한편, 법 개정으로 제1회 관계인집회가 임의화되고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도입되는 등 절차 전반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시행하면서 채권자의 절차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감사와 유사한 구조조정임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무상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관은 기존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법개정 내용 및 패스트트랙과 구조조정임원 제도

등 기존 편람의 발간 이후 변화된 제도와 실무를 새로이 소개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법인회생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회생의 동반자이자 감시자인 감사의 적절한 업무수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판이 회생회사 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길라잡이로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회생절차 기업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받으며 효과적으로 회생에 성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윤 준

머 리 말

법원도서관은 재판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재판자료
집 등으로 발간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도산 관련 직무편람 시리즈는 감사 직무 편람, 개인파
산관재인 직무 편람, 관리인 직무 편람, 회생위원 직무 편람의 총 4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 및 감사, 파산
관재인, 관리위원, 회생위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꼭 필요한 각종 법률과 실무 관행, 실제 사례에서 얻은 경험 등을 정리
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도산법 분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요즘, 창조적이고 효
율적인 업무 수행의 길잡이이자 좋은 실무 연구 자료로서 이 분야에 관
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님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훌륭
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신 법관 및 감사, 파산관재인, 관리인, 회생위원
여러분, 또 이 책이 나오기까지 세심한 실무 작업을 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 10.

법원도서관장 강 영 호

머 리 말

감사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직책입니다. 특히 재정적 파탄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희생과 양보 위에 진행되는 회생절차에서 투명경영과 준법경영이 더욱 요구된다는 면에서 회생절차에서의 감사제도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미 회사정리법 시절부터 회생회사의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에게 실질적인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감사의 업무수행을 철저하게 감독·평가하는 '실질 감사제도'를 운영해온 바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와 2008년 이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2008년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이 인가된 회생회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회생회사 경영의 투명성·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감사의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생회사의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어 개별 회생회사 차원에서 감사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한 감사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마다 업무의 편차가 발생하거나 회생회사마다 감사업무의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는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회생회사 감사업무의 균질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감사들이 회생회사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번에 『감사 직무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직무 편람』은 먼저 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깊은 이해가 회생회사 감사업무수행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아래 회생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생회사 감사의 법적 지위, 의미와 역할, 기본적인 근무자세와 업무수행 요령을 개관한 다음, 회생회사의 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감사 선임 직후 조치 및 확인사항, 일상 점검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 및 보고업무에 대한 감사, 감사 자신의 법원에 대한 보고업무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의 기본양식과 감사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직무 편람』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회생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이 책자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감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감사로서의 업무수행내용이 이 책자에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 직무 편람』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감사들이 개별 회생회사의 실정과 상황에 맞는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을 개발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감사로서는 이 책자를 기초로 개별 회생회사의 특성에 필요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 직무 편람』이 회생회사 감사의 업무수행에 좋은 지침서가 되어 작게는 회생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성공적인 회생을 이끌어 내고 크게는 기업회생절차의 정당성 확보와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회생회사의 바쁜 감사업무 중에서도 이 책자 중 일상 점검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감사의 법원에 대한 보고업무 관련 부분의 원고 작성에 도움을 주신 남승희, 남택동, 허환 감사님과 양식 작성에 도움을 주신 박창섭 감사님, 그리고 공인회계사로서 이 책자 중 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창구 관리위원님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지 대 운

목 차

제1편 회생절차의 이해

제1장 회생절차 일반	3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3
1. 회생절차의 목적	3
2. 회생절차와 워크아웃·파산절차의 비교	3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4
1. 개요	4
2. 채무자의 재산 확보	4
3. 회생계획을 통한 채무조정과 지배구조 변경	8
4.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10
5.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11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12
1. 회생절차의 흐름도	12
2. 회생절차의 개요	12
제2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18
제1절 개요	18
제2절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18
1. 회생채권의 의의	18
2. 회생담보권의 의의	19
3.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차등 취급	20

제3절 공익채권	21
1. 공익채권의 의의	21
2.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22
3.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	23
제4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	24
1.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의 가부	24
2. 인가된 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	25
제5절 조세 등 채권	26
1. 개요	26
2. 국세·지방세 등	26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	28
제6절 주주	29
1. 회생절차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29
2. 회생절차에서 주주의 지위	29
제7절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31
1. 개요	31
2. 회생계획안의 기재 및 결의 집회의 출석·진술	31
제3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32
제1절 법원	32
1. 관할	32
2. 합의부의 구성과 역할	32
제2절 관리위원회·관리위원	33
1. 개요	33
2. 주요 역할	33
제3절 관리인	34
1. 개요	34
2. 관리인의 선임	34

3. 관리인의 지위·권한	37
4. 사업경영 측면에서 관리인의 업무	39
제4절 조사위원	40
1. 개요	40
2. 주요 역할	40
제5절 채권자협의회	41
1. 개요	41
2. 주요 역할	42
제6절 인가 후 감사와 인가 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43
제4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44
제1절 개요	44
제2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45
1. 재산관리처분권 등의 관리인 귀속	45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	45
3. 계속적 공급계약(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	47
4. 그 밖에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된 사항	48
5. 기존 강제집행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49
6.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	50
7. 주주총회·이사회 권한의 제한	56
8. 공유관계	57
9. 환취권	58
제5장 부인권	59
제1절 개요	59
제2절 부인권의 종류	60
제3절 부인권의 행사	62
1. 행사방법	62

2. 유의사항	62
3. 행사의 시기적 제한	63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64
1. 원상회복	64
2. 상대방의 지위	64
제6장 상계의 제한	66
제1절 개요	66
제2절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	66
제3절 희생채권자·희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67
1. 상계권 행사의 시기상 제한	67
2. 부당한 상계권 행사의 금지	67
제7장 희생계획 인가결정	70
제1절 개요	70
제2절 희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71
1. 효력의 발생시기와 범위	71
2. 면책 및 담보권의 소멸	72
3. 권리의 변경	72
4.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72
5. 희생채권자표 등 기재	73
제3절 희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절차	73
1. 희생계획 확정본의 제출	73
2. 각종 등기축탁신청	73
제8장 희생계획의 수행·변경	74
제1절 개요	74
제2절 희생계획의 수행	75

1. 사업계획의 수행	75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75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	76
제3절 회생계획의 변경	76
제9장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78
제1절 회생절차 종결결정	78
제2절 회생절차 폐지결정	78
제3절 종결·폐지의 효과	79
1.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79
2. 회생절차 폐지의 효과	80
제10장 간이회생절차	82
제1절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82
제2절 간이회생절차의 내용	82
1.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82
2.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83

제2편 회생절차의 감사와 직무수행

제1장 회생회사 감사제도 개관	87
제1절 기업회생절차의 의미와 투명경영의 필요성	87
1. 기업회생절차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87
2. 투명경영의 필요성	87
제2절 회생회사 감사제도의 의미와 역할	87
1. 감사의 역할과 위상	87

2. 법원의 회생회사에 대한 감독업무의 실효성 확보 기능	88
3.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시행에 따른 감사 역할의 중요성	88
4.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 필요	89
제3절 회생회사 감사의 법적 지위	89
1. 감사의 선임	89
2. 감사의 임기 및 보수	90
3. 감사의 의무	91
4. 감사의 사임 및 해임	91
5. 공동감사	92
제4절 감사로서의 기본적 근무자세	92
제5절 업무수행 요령	95
제6절 중점 감사사항	95
제2장 감사 선임 직후 조치 및 확인사항	97
1. 합리적·상시적 감사 시스템 구축	97
2. 현금 및 예금의 관리상태 점검	98
3. 관리인 인장 관리상태 점검	98
4. 회생계획 및 이행실태 점검	99
5. 각종 소송절차 내역 확인	99
6. 회생회사의 부실원인 및 현 상태 파악	99
7. 회생계획 인가 후 허가신청 사항 확인	99
제3장 일상 점검사항	101
제1절 회계 관련 점검사항	101
1. 주요 점검사항 개관	101
2. 자금 입·출금 관련 점검사항	103
3. 회계계정 관련 점검사항	105
4. 수입 및 지출 관련 점검사항	112

제2절 현금흐름(Cash-Flow) 관련 점검사항	114
1. 현금흐름(Cash-Flow) 관련 개괄적인 점검내용	114
2. 미수금(외상매출채권)의 점검	116
3. 부가세 환급 내용 점검	117
4. 미지급(외상매입대금)의 점검	117
5. 기타	117
제3절 회생계획 수행에 대한 점검과 독려	118
1. 영업실적 점검	118
2. 부동산 등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처분) 점검	119
제4절 관리인에 대한 경영상 조언	119
제5절 접대비 편성 및 지출 관련	120
1. 접대비 관련 실무상 문제점	120
2. 개선방안	121
제6절 그 밖의 점검사항	122
1. 현금 시재 검사	122
2. 정기에·적금 등 현금자산 확인	122
3. 받을 어음, 유가증권 B/S 잔액과 실물대조	123
4. 재고, 입·출고 및 외주관리 상태 점검	123
5. 자재대금 지급 시 법원 허가 여부 및 관련 미지급금에서 지급되는지 확인	123
제4장 업종별 유의사항	125
제1절 건설업	125
1. 건설사가 분식회계를 많이 하는 이유	125
2. 분식회계 방법	125
3. 기타 점검 사항	129
제2절 제조업	130
1. 개요	130

2. 원자재 구매관리	130
3. 제조원가 및 제품재고 관리	130
4. 매출액 및 매출채권 관리	132
5. 기타 회계 관련	132
제3절 해운 및 항공운송업	133
1. 개요	133
2. 영업활동 관련 유의사항	133
3. 투자활동 관련 유의사항	134
4. 기타	135
제4절 유통업	136
1. 개요	136
2. 영업활동 관련 유의사항	136
3. 투자활동 관련 유의사항	137
4. 기타	138
제5절 무역업	138
1. 개요	138
2. 수출업무 유의사항	139
3. 수입업무 유의사항	140
4. 해외지점 관리	140
제6절 방송서비스업	141
1. 개요	141
2. 영업활동 관련 유의사항	141
3. 콘텐츠/망 사용료 관련 유의사항	141
4. 유형자산 관리	142
5. 고객관리	142
제7절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142
1. 개요	142
2. 업무 프로세스(Process)별 유의사항	143

3. 기타	145
제5장 관리인의 허가신청에 대한 확인	146
제1절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	146
1. 개요	146
2.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종류	146
3. 허가신청의 방법	149
4.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50
5. 허가사항의 항목별 설명	151
6. 접대비 관련 허가신청 및 보고	168
제2절 감사의 확인사항	170
1. 기본 원칙	170
2.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에 대한 확인사항	170
제6장 관리인의 보고업무에 대한 확인	174
제1절 개요	174
1. 관리인의 보고업무 개관	174
2. 감사의 역할	174
제2절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175
1. 보고서의 종류	175
2. 보고서를 제출할 자	175
3. 보고서의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176
4. 보고서의 제출방법	176
5. 보고방법	177
제3절 관리인 작성의 각종 보고서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177
제4절 관리인 작성 각종 보고서 검토 시 유의사항	177
1. 월간보고서의 경우	177
2. 분기보고서의 경우	179

3.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의 경우	180
제5절 허위보고의 경우	181
제7장 감사의 범원에 대한 보고업무	182
제1절 개요	182
제2절 정기보고	182
1. 부임 후 감사보고서	182
2. 분기별 감사의견서	183
3. 감사실적보고서	188
제3절 수시보고	189
1. 개요	189
2. 수시보고 사유	189
제4절 보고방법	190
1. 원칙	190
2. 정기보고	190
3. 수시보고	190
제5절 전자소송 시스템의 이용방법	191
제8장 그 밖의 수행사항	193
제1절 관리인과의 면담	193
1.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구	193
2.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협조요청	193
3. 경영상의 주요 현안 사전 협의	193
4. 경영컨설턴트의 역할 유지	193
제2절 공장 및 관공서 등 방문	194
제9장 관리인 또는 회생회사의 부정·비리 및 회생절차상 의무 위반 사례	195

제10장 구조조정담당임원(CRO)	197
제1절 개요	197
제2절 CRO의 지위와 역할	197
1. CRO의 선임	197
2. CRO의 역할과 업무	198
3. CRO의 책임	199
부록 I. 각종 양식	201
[별지 1] 감사규정	203
[별지 2] 부임 후 감사보고서	210
[별지 3] 1/4분기 감사의견서	213
[별지 4] 상반기 감사의견서	219
[별지 5] 연간 감사의견서	225
[별지 6] 감사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예시)	231
[별지 7] 수시보고서(예시)	238
[별지 8] 수시보고서(예시)	241
[별지 9]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계약서(예시)	244
[별지 10]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윤리강령	247
[별지 11] 자금수지상황보고서(예시)	250
부록 II.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255
[회생실무준칙 제1호] 관리인 등의 선임·해임·감독 기준	257
[회생실무준칙 제4호]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267
[회생실무준칙 제5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준칙	272
[회생실무준칙 제6호]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	276
[회생실무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	277

[회생실무준칙 제9호] 자회사(子會社)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301
[회생실무준칙 제10호]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304
[회생실무준칙 제14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306

그림·표 차례

<그림 1> 회생절차 흐름도 13
<그림 2>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절차192
<그림 3> CRO 위촉 절차198
<표 1> 관리인이 유의할 사항(예시)39
<표 2> 조사위원 제1차 조사보고서 및 제2차 조사보고서의 보고내용 ..41
<표 3>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절차의 관계55
<표 4> 부인권의 성립요건과 수익자 선의·악의의 입증책임61
<표 5>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종류와 폐지사유79
<표 6> 관리인의 법원·관리위원회에 대한 허가신청업무148
<표 7> 인가 후 지출수반행위의 법원허가 필요 기준액153
<표 8> 접대비 예산편성 지침169
<표 9>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방법169
<표 10> 각종 보고서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176

제 1 편

회생절차의 이해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제1장 회생절차 일반

제2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제3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4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제5장 부인권

제6장 상계의 제한

제7장 회생계획 인가결정

제8장 회생계획의 수행·변경

제9장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제10장 간이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 일반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1. 회생절차의 목적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등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제1조, 제34조).¹⁾

2. 회생절차와 워크아웃·파산절차의 비교

회생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또는 관리인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 이하 관리인 및 법률상 관리인을 통틀어 ‘관리인’이라고 한다)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가 조정되는 등 절차 전반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고 법원의 관리·감독에 따라 진행된다.

회생절차는 ①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등 다수의 채권자들 주도로 사적인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워크아웃(work-out)’과 구별되고, ② 채무자의 사업을

1) 이 책에서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말하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준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을 말한다.

재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라는 점에서,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와 구별된다.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1. 개요

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이라는 집단적 채무조정을 통하여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회생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 확보, 회생계획을 통한 채무조정과 지배구조변경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건이 청산을 통한 퇴출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제성 판단을 위해 회생절차에서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여 양자를 비교한다.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관리인은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법원과 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2. 채무자의 재산 확보

가.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 필요성

채무자에게 재정적 파탄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채권자에게 알려지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등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하려 시도한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채권자가 보다 빠른 시기에 보다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채권자에게 유리하지만, 다른 채

권자와 사이에 채권회수 시기, 변제율 등에 차등을 발생시켜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침해하고, 회생·파산절차와 같은 다수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집단적 절차보다 절차비용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또한 채무자가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리의 신규 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채무자는 더욱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거나 계속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회생의 기회를 잃고 만다.

회생절차는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과 채무자의 재산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채무자의 변제행위, 재산처분행위, 신규 채무부담행위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나.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

(1) 회생절차 개시 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채납처분 등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법원의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금지된다(제44조, 제45조).

(2)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후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당연히 중지·금지된다(제58조). 또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를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제131조, 제132조).

다. 채무자 재산의 동결

(1) 회생절차 개시 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법원의 보전처분에 의하여 채무자의 ① 변제행위, ② 재산처분행위, ③ 어음할인, 융통어음발행, 신규대출

등 신규 채무부담행위, ④ 임직원 채용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43조). 채무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원자재 등 적극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채무자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여 부채 등 소극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후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관리인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채무를 변제하려면 소액채권이거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제132조).

법원은 관리인이 재산처분, 재산양수, 자금차입 등의 차재, 소송제기, 화해·중재계약, 권리포기, 공익채권 승인 등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신규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61조).

또한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업·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야 한다(제200조).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62조).

라.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확보를 위한 절차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이사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재판,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권 행사, 상계권의 행사 제한 등

이 있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지급정지 등의 위기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하고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제100조 내지 제113조).

이사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재판은 부실경영 등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액수를 회생절차 내에서 조사·확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절차이다. 기존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의 책임은 사임요구, 퇴직금채권의 포기, 민사소송제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물을 수도 있지만, 채무자에게는 신속한 재산회복이 필요하므로 회생절차에서 별도로 마련한 절차이다(제114조 내지 제117조).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권 행사는 채무자가 개시 전에 상대방과 사이에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개시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아직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관리인에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기존 거래관계의 유지가 채무자에게 불리할 경우 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해지함으로써 채무자를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다(제119조, 제121조).

상계권 행사의 제한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지급정지 등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등의 경우 상계를 금지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부당하게 조기에 회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채무자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사용한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미납하였어도 공급 상대방은 요금 미납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제122조),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등은 모두 채무자의 재산확보를 도와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회생계획을 통한 채무조정과 지배구조 변경

가. 회생계획에 의한 채무조정

회생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재정적 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의 감축, 면제 등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채무조정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제252조).

회생계획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방법에는 감축, 면제, 변제기 유예에 의한 분할변제 등이 있는데, 통상 채권의 일부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출자전환의 방법이 사용된다.

회생계획은 다수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나. 회생계획에 의한 지배구조 변경

채무자가 청산단계에 있다면 회사의 주주는 채권자가 변제받은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분배받을 권리를 보유하므로(상법 제538조), 공정·형평의 원칙상 회생절차에서 주주는 채권자보다 불리하게 권리가 변경되어야 한다(제217조).

채무자의 지배구조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 회생계획에는 주주의 권리변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제193조 제1항 제1호),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회생계획에서 채무변제 대신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출자전환의 방

법을 사용하면 채권자는 회생계획 인가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2/3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제205조 제4항).

이와 같이 기존 주주의 주식이 병합·소각되고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하면서 채무자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것이다.

다. 회생계획의 작성원리

회생계획에는 채권자·주주의 권리변경, 채무변제자금의 조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93조 제1항).

우선 회생계획의 채권자·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하여는 ① 공정·형평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공정·형평의 원칙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제217조, 제243조 제1항 제2호). 청산절차의 변제순위는 담보권자, 일반채권자, 주주의 순이므로 회생절차에서도 이러한 순위가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변제방법은 담보권자, 일반채권자 순으로 우선하고, 주주는 보다 불리한 주식의 병합·소각을 감수하여야 한다.

평등의 원칙은 회생계획의 조건이 담보권자 사이, 일반채권자 사이, 또는 주주 사이 등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제218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가 청산할 때 개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제243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자는 청산절차에서 배당받는 것보다 회생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회생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에 구속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회생계획은 수행 가능하여야 한다(제231조 제3호, 제243조 제1항 제2호).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은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과 관련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영업활동, 비영업용자산의 매각, 신규차입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고 회생계획기간이 종료될 때에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상태로 존속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인이 다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회생계획의 변제율을 높이거나 변제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 채무자가 그만큼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 회생계획은 수행 가능성이 없게 된다.

4.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가. 개요

채무자를 즉시 청산하여 보유재산을 환가·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가치의 총액(청산가치)이 채무자의 사업을 존속시켜 사업의 수익금이나 매각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가치의 총액(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분배라는 가치에 부합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반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된다(제286조 제2항).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회생계획을 통하여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액이 채권자에게 추가로 분배된다.

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의 산정방법

실무상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에 의하여 산정된다.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한다. 실무상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출된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실무상 청산가치는 청산채무상태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산정의 필요성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① 법원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고 폐지할 것인지, ② 법원이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것인지, ③ 회생계획안에서 향후 사업계획 및 변제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지, ④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하고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법원이 어떤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할 것인지 등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5.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한다.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개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관리인은 채무자·채권자·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전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이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재산관리처분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고(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된다(제78조).

관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막중하므로 법원은 관리인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관리인으로부터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등 다

양한 방법으로 관리인을 감독한다.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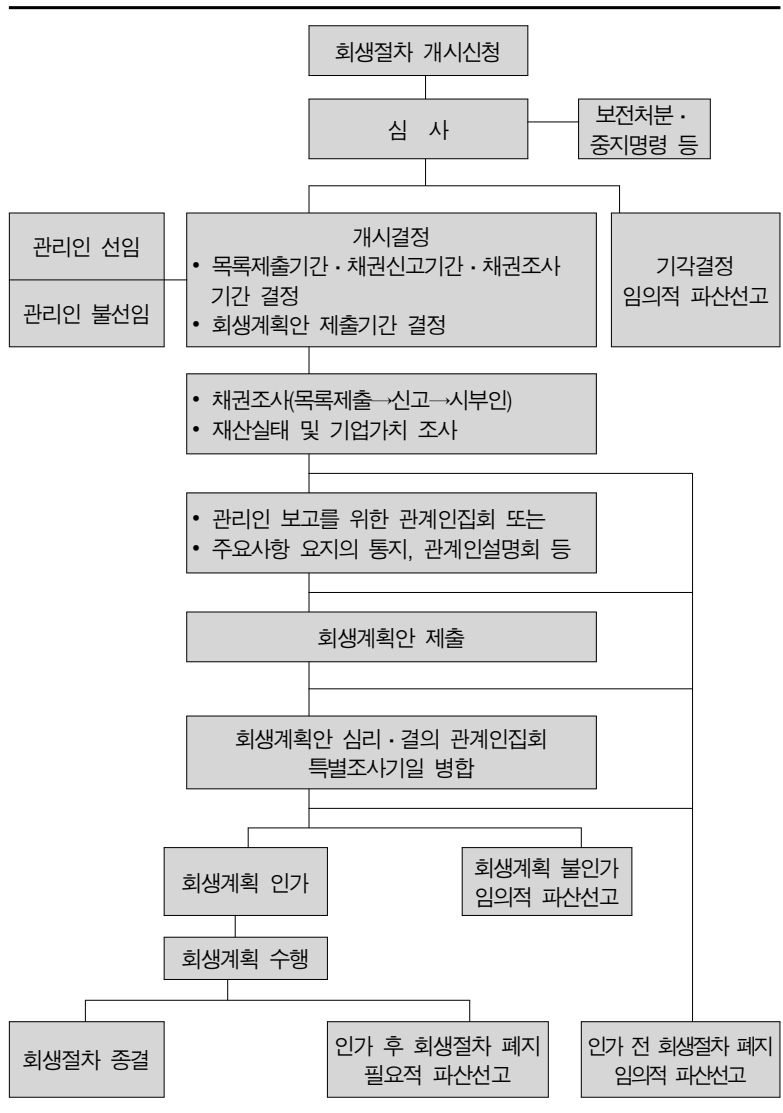
1. 회생절차의 흐름도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 폐지 또는 종결 등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종료되기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2. 회생절차의 개요

<그림 1>의 회생절차의 흐름도에 따라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회생절차 흐름도



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는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제2항).

나.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무분별한 재산처분을 막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이 있고(제43조),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행을 금지하는 제도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제44조, 제45조).

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제49조), 개시결정의 주문, 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위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제51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제131조, 제141조 제2항).

라.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등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

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확정의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실무상 채권조사는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의 내용과 액수 등을 기재하고 그 기재내용을 시인 또는 부인하는 내용의 시부인표를 채권조사기간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마. 채무자 재산의 조사·확보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 관리에 착수하고(제89조),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제90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91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87조 제3항).

이러한 재산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관리인은 그 결과에 기초하여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을 평가하여 채권조사기간에 그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을 시인하게 된다. 나아가 재산평가의 결과는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성, 수행 가능성 및 청산가치보장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한편 관리인은 채무자에 의한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100조), 채무자의 임원 등이 위법행위를 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 확보를 피하게 된다(제114조 이하).

바.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정하여

야 하고(제50조 제1항 제4호), 관리인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20조 제1항).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221조). 한편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제222조).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다(제193조). 회생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제243조).

사. 회생계획의 심리·결의·인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이하 '심리 집회'라 한다)를 소집한다(제224조).

관계인집회에서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이하 '결의 집회'라 한다)를 소집한다(제232조).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이상,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조 의결권의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가결되고, 청산형 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4/5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자조, 주주의 조의 가결 조건은 위와 같다(제237조).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결의를 하기 전에, 회생절차·회생계

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회생계획이 공정·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할 것, 청산가치보장을 준수할 것 등의 인가요건을 미리 검토하므로, 보통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집회는 같은 기일에 진행하고, 결의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그 집회 당일 인가결정을 하고 있다.

아.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제257조 제1항).

회생계획 수행의 핵심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이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변경, 임원의 변경, 자본의 변경 등이 있다.

자.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종결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제283조 제1항 본문).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83조 제1항 단서).

회생절차 종결은 회생계획의 성공적 종료를 의미하는 반면, 회생절차 폐지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를 계속할 경제성이 없어서 회생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와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로 구분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의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제288조).

제2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제1절 개요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채권자와 주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채권자는 다시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영업 또는 사업을 지속하면서 새로이 발생하는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자로 구분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따라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게 되는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채무자가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일반적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지만(제131조, 제141조 제2항),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된다(제180조).

한편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도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제2절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1. 회생채권의 의미

가. 개요

회생채권은 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²⁾

2) 회생채권은 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채권발생의 기본적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존재하면 되고, 개시 전에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여금채권에서 변제기가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여계약이 개시 전에 이미 체결되었고 대여행위가 있었다면 대여금채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정기금채권, 이자 없는 불확정기한부채권, 비금전채권, 외화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등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그 밖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제133조).

나.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인데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다.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시 후 관리인의 해제·해지권 행사로 생긴 것이나 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제121조 제1항).

그 외에도 어음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제123조),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지급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제124조), 상호계산 종료로 인한 상대방의 잔액청구권(제125조) 등은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임에도 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

2. 회생담보권의 의의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동기담보권·전세권

②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 ③ 회생절차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④ 회생절차 참가의 비용 등이다(제118조).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제141조 제1항 본문). 즉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몰상보증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제141조 제1항 단서).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제141조 제4항).

3.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차등 취급

회생계획에서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지분권자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제217조). 이러한 차등은 변제율, 변제 시기, 출자전환비율 등에서 회생담보권을 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지분권자의 조로 분류하여 조별로 결의하는 방법에 의한다(제236조 제1항). 다만 법원은 권리의 성질,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조의 분류를 다시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제236조 제3항).

제3절 공익채권

1. 공익채권의 의의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다.³⁾ 실무상 공익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즉 관리인이 개시 후 새로이 거래행위를 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채권이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각종 채권에 대하여도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일부 변제, 변제기 유예 등 제약이 따른다면 이러한 조건을 감수하고 채무자와 거래할 채권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거래가 가능하도록 고려한 것이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익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나

3) 공익채권은 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② 회생절차 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③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다만 회생절차 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 ④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⑤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⑥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⑦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⑧ 계속적 공급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⑨ 원천징수하는 조세(다만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⑩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⑪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⑫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⑬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에 활동에 필요한 비용, ⑭ 내지 ⑮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등이다(제179조).

씩 나열하면서도 그 외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었으므로 포괄적 규정의 해석에 따라 공익채권의 범위는 확장될 수 있다(제179조 제1항 제15호).

2.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임에도 형평의 원칙이나 사회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여 수시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제179조 제1항 제8호). 공급자가 채무자의 개시신청 전 요금미납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제122조 제1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위와 같은 채권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제179조 제1항 제12호).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부터 개시 전까지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채무자는 위와 같은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형성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임을 고려한 것이다.

3.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

가. 공익채권의 회생채권 신고

채권자가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신고하고 채권조사결과 관리인이 회생채권으로 시인한 경우, 공익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는지 문제 된다.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공익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동의하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나. 수급인의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상대방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던 중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되는지 문제 된다.

판례는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구 회사정리법)가 적용된 절차이고 현행 회생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같은 법 제208조 제7호에서 규정한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에 해당하게 되어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본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다. 이사, 감사 등의 보수채권

등기부상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사, 감사의 보수채권도 임금채권으로서 공익채권이 된다.

이사, 감사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제4절 희생채권·희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

1.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의 가부

희생채권·희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희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고(제131조, 제141조 제2항), 예외적으로 희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31조, 제132조, 제141조 제2항). 희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희생채권·희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는 중지된다(제58조). 희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고, 희생절차가 폐지결정 확정이나 종결결정으로 종료될 때까지 희생채권·희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하다(제

256조).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제180조 제1항, 제2항).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지도 않는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②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제180조 제3항).

2. 인가된 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미치고(제250조 제1항), 공익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제251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제252조).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면책·변경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의 면책, 변경이 기재되더라도 그 기재는 회생계획과 별도로 발생한 권리관계를 보고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한편 회생계획에 기재된 공익채권의 면책, 권리변경은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될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에는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공익채권이 다액일 경우 관리인은 공익채권자와 사이에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자금수급계획을 세움으로써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절 조세 등 채권

1.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희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한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 지방세가 대표적이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희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희생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같이 취급한다(이하 국세, 지방세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희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국세·지방세 등’이라고 한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희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하는데, 앞서 본 국세·지방세 등과는 다소 다르다.

이와 별개로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등은 징수편의를 위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지만 징수순위가 일반 희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고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 희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보면 된다.

2. 국세·지방세 등

가. 희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국세·지방세 등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희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희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하였으면 희생채권, 개시 후에 성립하였으면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희생채권, 공익채권의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세,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희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희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②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③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는 공익채권이 된다(제179조 제1항 제9호).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목록제출과 채권신고가 필요하며, 회생계획에 의하여 감면될 수 있고 신고 등의 누락으로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면 실권된다.

나. 회생절차에서의 특별한 취급

국세·지방세 등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회생절차에서 일반 회생채권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1) 체납처분 등의 중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이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하려면 발령 전에 징수권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제44조 제1항 제5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 인가가 있는 날까지,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③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중지되고, 필요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1년간 연장될 수 있다(제58조 제3항). 일반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연히 중지되는 점과 다르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인가일까지 중지되고,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에서 정한 유예기간까지만 중지된다.

(2) 채권조사·확정

일반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은 채권조사기간의 시부인, 채권조사확정 재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국세·지방세 등은 시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원래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확정이 이루어진다(제157조).

(3)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회생계획에서 국세·지방세 등에 대하여는 공정·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지방세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생담보권보다 우월하게 취급될 수 있다(제217조 제2항).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기 유예는 보통 10년의 기간을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을 뿐, 해당 채권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나(제195조), 국세·지방세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유예하거나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140조 제2항), 징수유예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40조 제3항).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국세·지방세 등은 조분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제191조 제2호, 제236조 제2항 단서).

(4) 기타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가 접수되면 징수권자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징수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 제3항).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개별적 변제금지 등에 있어서 일반 회생채권과 다르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은 신고누락되어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도 실권되지 않으며(제251조 단서),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제140조 제1항). 또한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조분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부여되지도 않는다(제191조 제3호, 제236조 제2항 단서).

제6절 주주

1. 회생절차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주주는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자본감소, 신주발행, 자본증가,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자본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관의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제55조),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당 부분 축소된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주주의 권한행사에 채무자의 비용지출이 수반된다면 사실상 관리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2. 회생절차에서 주주의 지위

가. 회생절차 참가 및 의결권 행사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을 변경할 경우,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

을 초과하는 때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46조).

주주가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50조 제1항).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므로 특히 문제 된다. 수시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신고한 주주와 의결권 행사 무렵의 주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그 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한다(제150조 제2항). 또한 당초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주식의 수가 적고 그 이후 주주변동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주주, 신고명의자와 달라진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제155조).

나. 주주의 권리변경

주주는 채무자가 청산절차에 들어갔다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갖는 자에 불과하므로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보다 열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제217조, 상법 제538조).

주주의 권리변경은 소각·병합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2/3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제205조 제4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에 대하여도 인정되므로(제254조), 주주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권되는 것은 아니다.

제7절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1. 개요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란 채무자 이외의 자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회생계획안에 창설적으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M&A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나 변경회생계획안에서 인수자가 신주대금납입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의 인수자가 이에 해당한다.

2. 회생계획안의 기재 및 결의 집회의 출석·진술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명시하고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하고,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이 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를 명시하고 그 채무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제196조).

또한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그 뜻을 진술하여야 한다(제233조).

M&A 절차가 진행되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또는 변경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되면 인수자가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는다.

제3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1절 법원

1. 관할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전속하여 담당한다(제3조 제1항). 정관의 본점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만 회생사건을 전속하여 관할한다(제3조 제8항).

회생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경합적으로 관할이 존재한다(제3조 제2항). 예를 들면 인천, 수원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2. 합의부의 구성과 역할

합의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사건별로 이 중 1명이 주심판사 역할을 한다)으로 구성되어 각종 결정·허가사무, 관계인집회의 지휘, 관리인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판장이 집회·심문 등을 지휘하나, 실무상 심문절차, 현장검증은 재판장에 의하여 수명법관으로 지정된 주심판사가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회생절차에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보통 '참여관'이라고 한다)은 재판에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등기·등록의 촉탁 업무를 수행하며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주주·지분권자표를 작성한다. 법원서기 또는 법원서기보(보통 '실무관'이라고 한다)는 법관, 법

원사무관등을 보조하여 문건접수, 기록조제, 우편송달업무 등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2절 관리위원회·관리위원

1. 개요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제16조). 관리위원은 법률, 회계, 경영, 경제 등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위촉된다. 관리위원회는 서울중앙·의정부·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등 회생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사건배당절차에 따라 당해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된 관리위원을 보통 주무 관리위원이라고 부른다.

2. 주요 역할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보전처분, 개시결정, 관리인·조사위원 선임, 회생절차 폐지결정 등 각종 절차에 대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주무 관리위원을 통하여 관리인의 채권목록 작성, 시부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집회자료 준비 등 관리인의 각종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그 외에 관리위원의 주된 업무는 관리인에 대한 각종 허가사무이다. 법원은 관리위원에게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제18조), 실무상 채무자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리위원의 허가로 전결되는 경우가 많다.

제3절 관리인

1. 개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회피하던 경향에서 탈피하여 재정적 파탄의 초기 단계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노하우를 살려 회생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관리인의 선임

가.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 제3자 관리인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하되,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대표자(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만 ①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의 이사 등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② 채권자협의회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제74조 제1항, 제2항).

실무상 대표자심문이나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기존 경영자의 자금유용, 재산은닉 등이 드러나 개시결정과 동시에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고,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등에 의해 기존 경영자의 자금유용, 재산은닉 등이 밝혀져 회생절차 진행 도중에 제3자가 관리인

으로 선임되기도 한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 제3자 관리인의 지위는 차이가 없다. 다만 제3자 관리인은 기존 경영자나 직원들이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반발하여 업무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보다 더 큰 포용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

채무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규칙 제51조가 정하는 자(재정적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의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 영업력 및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절차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기 회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등)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제74조 제3항, 제4항).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라는 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해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실무상 ‘법률상 관리인’으로 칭하고 있다.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채무자의 대표자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변경되면 그와 같이 변경된 대표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다. 임기·보수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경우 실무상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임이 허가되거나 해임되지 않는 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임기를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보통 2년의 임기를 새로이 정하되, 채무자의 결산기, 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간, 업무량,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한다.

보수는 동종업종의 보수실태, 기존의 보수체계와 채무자의 재정상태,

관리인의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실무상 종전 보수보다는 낮게 책정한다(제30조, 준칙 제1호 제5항).

법률상 관리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수결정을 하지 않는데, 법률상 관리인은 자신의 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비절감, 고통분담 등의 차원에서 정관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자진하여 보수를 삭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① 관리인이 그의 경영 수완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예정한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때, ② 관리인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당해 관리인의 최초 취임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된 때, ③ 관리인이 능동적으로 신규 자본을 물색·유입하거나 다른 우량 기업과 인수·합병을 이룩함으로써 채무자 회생에 현저한 기여를 한 때에 관리인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특별보상금의 액수는 채무자의 규모와 재정 상황, 기여 등을 종합하여 3억 원을 한도로 정하되, 이에 같음하여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 수 있다(제30조, 준칙 제1호 제5항).

라. 공동관리인·관리인대리

관리인이 여럿인 경우를 보통 공동관리인이라고 부르는데,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단독으로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하여야 한다(제75조 제1항). 공동관리인은 실무상 2명을 선임하는데 기존 경영자 1명과 제3자 관리인 1명을 선임한다.

사업장이 국내와 해외에 산재해 있고 채무자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대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관리인대리는 관리인 대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76조).

3. 관리인의 지위·권한

가. 관리인의 지위

관리인은 채무자의 기관이거나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이다. 관리인은 사익 추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회생절차 내 모든 채권자 및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관리인이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82조).

또한 관리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당연히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제56조).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제89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제257조).

하지만 관리인의 권한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관리인이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관리인과 채무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고(제61조 제2항),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도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제62조). 또한 실무상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차재 등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은 사전에 반드시 법

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1조 제1항).

다. 재산상태의 파악 및 조사보고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고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90조, 제91조).

또한 관리인은 지체 없이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②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과 그에 관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④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92조).

라. 소송행위의 당사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제78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그 소송의 원·피고가 되고(제59조 제1항, 제2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것은 회생절차 내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관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수계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그 소송의 원·피고가 된다.

마. 법원의 업무보조

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규칙 제8조).

관리인의 업무보조는 주로 송달·통지업무, 신고서 접수업무, 집회 시의 출석현황 확인업무 등이다.

4. 사업경영 측면에서 관리인의 업무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채무자의 조직 장악, 운영자금의 조달, 책임경영, 투명경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에게 유의사항, 관리지침 등을 고지하여 사업경영 측면에서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한다.

〈표 1〉 관리인이 유의할 사항(예시)

1.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니라 전체 이해관계인 집단을 관리 조정하여야 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주주나 회사의 임직원,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아니 되며 모든 이해관계인의 형평과 공정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전적으로 관리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자기의 경영 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힘써야 하고 그 경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법원은 채무자의 경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3.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 등에 의한 권한침해나 부당한 간섭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임원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서도 아니 됩니다.
4.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보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법률상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자의 영입이나 타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제4절 조사위원

1. 개요

조사위원은 실무상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결정으로 공인 회계사·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선임된다. 선임 당시로부터 최근 3년간 채무자의 외부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회계 법인은 실무상 조사위원에서 배제된다.

2. 주요 역할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실무상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한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제1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5일 전까지 제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차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실시되거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또한 조사위원은 그 외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를 명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시로 보고한다.

실무상 조사위원이 제1차 조사보고서와 제2차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조사결과 또는 의견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조사위원 제1차 조사보고서 및 제2차 조사보고서의 보고내용

구 분	조사결과 또는 의견
제1차 조사보고서	① 조사결과와 요약 및 조사위원의 의견 ② 채무자의 개요(조직·업무·재무 등의 현황) ③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④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⑤ 채무자의 재산상태 ⑥ 우발채무(보증채무)의 내역 ⑦ 부인대상 행위의 존부 및 범위 ⑧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산정 ⑨ 채무자 사업의 수익성 분석 및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산정 ⑩ 채무상환계획안 및 추정재무제표
제2차 조사보고서	①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여부 ㉠ 조사결과와 요약 ㉡ 청산배당액 ㉢ 변제액의 현재가치 ㉣ 청산배당액과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비교 ②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여부 ㉠ 조사결과와 요약 ㉡ 변제할 채무내역의 완전성 ㉢ 채무면제액 및 변제할 채무 ㉣ 변제자금의 조달 가능성

제5절 채권자협의회

1. 개요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실을 관리위원회가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소액채권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제 20조, 규칙 제34조). 실무상 큰 규모의 채무자는 6인 내지 10인, 작은 규모의 채무자는 4인 내지 5인의 채권자로 구성하되, 금융기관이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 담보채권

자, 주요 무담보채권자를 우선 포함시킨 다음 다액의 채권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채권자협의회는 구성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채권자를 지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으면 관리위원회가 대표채권자를 지정한다. 대표채권자는 채권자협의회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대표하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규칙 제35조).

2. 주요 역할

가.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제시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관리인·조사위원의 선임, 회생채권의 조기변제, 채무자의 감사선임, 영업·사업양도 등에 관한 매각주간사·실사법인·우선협상대상자 등의 선정, 회생절차 개시·폐지·종결 등 법규가 정한 사항이나 법원·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1조, 제50조, 제87조, 제132조, 제288조 등).

나. 자료의 제공 및 설명요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서류·결정서·감사보고서 등의 서류와 규칙상 인정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계획 폐지결정, 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대차대조표·조사보고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한다(제22조 제1항, 규칙 제39조).

또한 관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 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고, 채권자협의회가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22조 제2항, 제3항). 실무상 법원은 관리인이 분기보고서와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다. 채권자협의회 활동비용의 채무자 부담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21조 제3항). 이러한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취급한다(제179조 제1항 제13호).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법무법인·회계사·회계법인 그 밖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비용 및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협의회 또는 변호사 등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규칙 제42조), 그 외에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채권자협회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규칙 제43조).

라. 재산 및 영업상태 등에 대한 실사청구

채권자협의회는 ①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 실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제4호, 제259조).

마. 회생절차 종결 후 채무자의 감독

회생절차의 종결로 채권자협의회는 소멸한다.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사이에 회생절차 종결 후의 감독에 관하여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채권자들이 협의체의 형태로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할 수 있다.

제6절 인가 후 감사와 인가 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회생회사의 감사와 인가 전 구조조정담당임원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한다.

제4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제1절 개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제49조 제1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이사 심문,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고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①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제42조)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출기간, ②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의 신고기간, ③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④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50조).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조사위원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고를 명한다. 또한 법원은 관리인에 대하여 법원·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하고,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고를 명한다.

제2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1. 재산관리처분권 등의 관리인 귀속

가. 업무수행권·재산관리처분권의 이전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제56조).

나. 관리인의 행위와 채무자 행위의 구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수행권·재산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관리인의 행위와 채무자의 행위는 엄격히 구분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다(제64조). 부동산,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무효이고, 다만 등기권리자가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의 본등기는 유효하다(제66조).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유효하다(제67조).

회생절차 개시의 공고 이후에는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제68조).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의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있다.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119조 본문).

‘쌍무계약’은 쌍방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

채무자와 그 상대방 모두가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채무자 또는 상대방 중 한쪽이라도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해제·해지와 이행의 선택권 행사 시기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해제·해지와 이행 사이의 선택권을 보유한다. 이는 대가관계에 있는 미이행상태의 쌍방의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면서도 관리인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제·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상대방은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인에 대하여 선택권의 행사를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이 해제·해지권을 포기하고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제119조 제2항). 법원은 위 30일의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제3항).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19조 제1항 단서). 이는 관리인이 해제·해지권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는데 회생계

확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상대방이 이를 신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 선택권 행사의 효과

관리인이 해제·해지권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121조). 즉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원상회복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된다.

반면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179조 제1항 제7호). 물론 관리인도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상대방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관리인이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24조 제4항).

또한 단체협약에 대하여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적용이 배제된다(제119조 제4항).

3. 계속적 공급계약(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

전기·수도·가스 공급계약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제122조 제1항). 그 대신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된다(제179조 제1항 제8호).

예를 들어 채무자가 2015. 8. 1.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2015. 9.

1.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2015. 8. 1. 이전에 발생한 전기요금은 회생채권이고, 2015. 8. 1.부터 2015. 9. 1. 전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기요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공익채권으로 취급한다.

관리인이 2015. 8. 1. 이전에 발생한 전기요금을 조기변제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제131조, 제132조), 2015. 8. 1.부터 2015. 9. 1.까지 발생한 전기요금은 공익채권이므로 관리인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지출은 법원·관리위원의 허가사항인 것이 실무이지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전기요금 등은 월간보고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보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4. 그 밖에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된 사항

가. 도산해제·해지조항

도산해제·해지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이 발생한 것으로 정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의 발생을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을 말한다. 예를 들면, 리스 이용자의 파산·회생절차 신청 시 리스계약에서 리스회사가 최고 없이 통지만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리스 이용자는 리스 물건을 즉시 리스회사에 반환함과 동시에 규정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리스회사가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서 잔존 리스료 전액의 일괄 변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이다.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실무는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도산해제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해제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

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나. 리스회사의 해지권 행사

리스회사가 리스 이용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금지되는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리스회사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법정해지권이 발생하였거나 리스계약상의 약정해지권이 발생하였다면, 보전처분 발령 이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도 리스회사는 이미 발생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후에 리스이용자인 채무자가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해지할 수 없다는 견해는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금지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리스회사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②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는 보전처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5. 기존 강제집행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가.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취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강제집행 등'이라고 한다)를 할 수 없고, 이미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는 당연히 중지된다(제58조 제1항, 제2항).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체납처분의 중지는 특별히 취급한다(제58조 제3항).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는 강제집행 등이 개시 당시 종료하지 않았을 때 의미를 갖는다. 개시 당시 이미 종료한 강제집행 등은 절차를 마친 것이므로 중지될 대상이 없게 된다. 강제집행의 종료 시기는 유체동산·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완료를 신고하였을 때, 전부명령의 경우는 그 명령이 확정된 때이다.

회생절차 개시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채납처분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58조 제5항). 개시 당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중지의 의미가 없었다면 법원의 취소결정도 의미가 없게 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절차가 중지·취소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대표이사,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취소되지 아니한다.

나. 중지된 강제집행 등 절차의 속행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 국세·지방세에 기한 채납처분 등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관리인과 국세·지방세 등의 징수권자에게만 신청권이 있고 일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제58조 제5항).

6.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 개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관계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즉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중단된 절차를 누가, 언제 수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이 필요한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기존 소송절차가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 소송절차와 회생절차 내의 간이·신속한 채권조사확정절차인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기간 내에 관리인 등이 행하는 시부인과 채권조사확정재판 등과의 관계가 문제 된다. 개시 당시 소송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개시 당시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도 문제 된다.

나. 개시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와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소송절차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어야 하므로, 이사회·주주총회 등의 무효·취소의 소 등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하지만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권한은 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무관한 소송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것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무관한 것에 따라 달리 취급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이 개시 당시 계속 중이었다면 즉시 수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이·신속한 절차인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거치고 그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수계절차가 진행된다. 여기에서 기존 소송절차와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의 관계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다. 참조.

한편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 예를 들어 공익채권, 환취권 등에 관한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

절차 없이 이를 즉시 수계할 수 있다(제59조 제2항).

다. 기존 소송절차와 채권조사확정절차와의 관계

(1) 개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된 경우 또는 개시 당시 이미 종국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하면 실권된다. 따라서 기존 소송절차가 있었다라도 반드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채권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송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그에 대한 처리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그대로 확정된다. 따라서 개시 당시 계속되었던 소송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다.

한편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의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가 필요한지, ② 소송절차의 수계는 이의제기자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대상 채권자가 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개시 당시 회생채권자가 원고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원고로서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회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이다.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채권에 대해

여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 이의가 제기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중단되었던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70조 제2항). 즉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 소송절차의 수계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자가 원고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같이 회생채권자가 피고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같은 청구취지로 반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인 경우

예를 들면, 회생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종국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진행 중이라거나 항소심·상고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서, 즉 채심, 청구이의의 소, 상소로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만일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한다(제174조 제1항, 제2항). 제1심 판결 선고 후 상소기간 만료일 사이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라면,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즉시 상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한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상소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상소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이의주장의 방법으로 하는 소송제기 또는 수계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74조 제3항). 채권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제기 또는 수계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은 신고된 대로 확정된다. 소송제기 또는 수계가 되면 그 소송절차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역할을 한다.

즉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중국판결이 있는 경우, 위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한 후 그 이의자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제기나 수계신청이라는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이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이의대상 회생채권자 등이 수계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이의자에게 소송제기 또는 수계신청의 부담을 지운 이유는 집행권원 또는 중국판결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라. 채권자취소소송의 처리

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제113조, 제59조 제2항).

채권자취소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자와 수익자이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지만,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등 전체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권자를 수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표 3〉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절차의 관계

소송절차의 구분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개시 당시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채무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 -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관리인이 수계할 수 없음
개시 당시 재산 관련 소송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	관리인 등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하려는 경우	집행권원 중국판결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절차 중단 (제59조 제1항) - 관리인 등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표 등으로 이의제기한 후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제기 또는 소송절차 수계하는 방법으로 이의주장 (제174조) - 소제기 또는 수계된 소송절차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역할
			집행권원 중국판결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절차 중단 (제59조 제1항) - 관리인 등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표 등으로 이의제기 (제161조, 제164조) - 이의대상 채권자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절차 수계신청 (제172조) - 수계된 소송절차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역할
		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절차 중단 (제59조 제1항) - 채권은 회생절차 내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 - 기존 소송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음 	
	공익채권·환취권에 관한 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절차 중단 (제59조 제1항) -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즉시 수계 가능 (제113조, 제59조 제2항)
개시 당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절차 중단 (제113조 제1항) -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즉시 수계 가능 (제113조, 제59조 제2항)

7. 주주총회·이사회 권한의 제한

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주주총회·이사회의 권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아니라면 주주총회는 중요한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사항인 자본감소, 신주·사채의 발행, 자본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정관변경 등에 대하여 결의할 권한을 가지고(상법 제329조의2, 제340조의2, 제360조의3, 제361조, 제374조 등), 이사·감사의 선임·해임권을 가진다(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409조, 제415조).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아니라면 이사회는 중요한 업무집행 사항인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금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에 대하여 결의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93조).

나. 회생절차 개시 후의 주주총회·이사회의 권한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됨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이사회의 권한은 상당 부분 제한된다.

(1) 주주총회 권한의 제한

주주총회의 권한 중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제62조),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목적물·대가·상대방 그 밖의 사항 등에 따라서 한다(제200조).

자본감소, 신주·사채발행, 자본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모두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가능하다(제55조 제1항). 정관변경은 회생계획에 정관변경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에는 회생계

획에 의하여 가능하고 법원의 허가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회생절차와 관계없는 영업목적의 변경, 본점의 이전, 공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제55조 제2항).

이사·감사의 선임·해임권은 회생계획 인가 시까지는 그대로 주주총회가 보유하지만, 회생계획 인가 시부터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선정될 자와 그 선임 등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제203조 제1항). 또한 채무자의 이사·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대표이사에 의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할 수 없다(제203조 제2항). 감사는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임기를 정하여 선임한다(제203조 제4항).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260조).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 일단 회생계획의 내용이 되면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그 수행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2) 이사회 권한의 제한

이사의 권한 중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금의 차입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제260조).

8. 공유관계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 채무자와 그 타인 사이에 그 재산권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69조 제1항). 이 경

우에 다른 공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69조 제2항).

9. 환취권

회생절차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0조).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소유권인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점유권이나 사용대차·임대차 계약 종료로 원인으로 하는 목적물반환청구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실무상 관리인이 환취권을 승인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장 부인권

제1절 개요

채무자가 재정적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에게 호의적인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들로서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일수록 채무자와 결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거나 담보를 확보해 두려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많아진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를 보통 ‘사해행위’라고 한다)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와 같은 행위(이를 보통 ‘편파변제’라고 한다)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 또는 개별 채권자의 전략적, 이기적 행동을 무효화함으로써 회생의 발판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채권자취소권과 취지를 같이 하는 제도이지만, 부인권은 행사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대상행위, 요건, 행사의 방법 등이 채권자취소권보다 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 등은 채권자 일반에 대한 담보역할을 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변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인 대상 행위가 된다.

회생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실을 관리인에게 알리거나 주심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부인권의 종류

부인권의 유형은 ①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고의부인'(제100조 제1항 제1호), ②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 등(이하 '지급의 정지 등'으로 부른다)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위기부인'(제100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③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무상부인'(제100조 제1항 제4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기부인은 다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본지행위부인'과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비본지행위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채무자의 행위로 이익을 받는 자를 수익자라고 하는데, 고의부인, 위기부인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행위 당시 수익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즉, 선의인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익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다(제10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각 단서). 무상부인의 경우는 행위의 무상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일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여 보호되는 규정이 따로 없다.

수익자가 임원,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고, 본지위기부인의 위기시기를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1년 이내'(이와 달리 통상의 경우라면 60일 이내)로, 무상부인의 위기시기를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1년 이내'(이와 달리 통상의 경우라면 6월 이내)로 규정하여 부인권을 확대하고 있다(제101조).

부인권의 성립요건과 수익자 선의·악의의 입증책임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부인권의 성립요건과 수익자 선의·악의의 입증책임

구분	근거규정	성립요건	수익자 선의·악의 입증책임
고의 부인	제100조 제1항 제1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수익자가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면 부인권 불성립
위 기 부 인	본 지 부 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관리인이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부인권 성립(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악의 추정)
	비 본 지 부 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써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1년 이내)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평등을 해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면 부인권 불성립 (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악의 추정)
무상 부인	제100조 제1항 제4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1년 이내)	수익자의 선의·악의 불문하고 부인권 성립

제3절 부인권 행사

1. 행사방법

부권은 관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한다(제105조 제1항). 부인의 청구는 간이하게 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약식절차인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여 정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제107조). 부인의 소보다는 부인의 청구가 인지대 등에서 유리하고 간이·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부권 행사의 상대방은 부인의 대상행위가 되는 채무자 행위의 상대방, 즉 수익자가 일반적이지만, ①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② 전득자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제외), ③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로부터 지위를 넘겨받은 전득자도 부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제110조).

한편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취소소송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된다(제113조 제1항). 이 경우 관리인이 채권자 등 전체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제113조 제2항).

2. 유의사항

채권조사기간 내에 관리인 또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나중에 관리인이 부권을 행사하여 확정된 채권의 내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그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였다면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저당권설정행위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됨을 이유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만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채권의 내용은 그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고 나중에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판례는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등 참조).

3. 행사의 시기적 제한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행사할 수 없다(제112조).

또한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다(제111조).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1. 원상회복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제108조 제1항).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무상부인의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제108조 제2항).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부인권이 성립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2. 상대방의 지위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②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③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④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과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08조 제3항).

또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 즉 상대방이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을 이행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 또한 원상회복되고 상대방은 원상회복된 채권을 부인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추후보완신고할 수 있다(제109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원상회복시켜야지만 그 후에 채권자 자신의 채권을 회복할 수 있고, 회복한 채권의 추후보완신고는 일반

적인 경우와 달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편파변제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권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후에도 편파변제로 지급받은 금원을 관리인에게 상환하고 자신의 채권을 원상회복하여 추후보완신고할 수 있다.

제6장 상계의 제한

제1절 개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2조 내지 제499조). 수동채권, 즉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상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회생채권자가 100만 원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5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50만 원에 대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면, 회생채권자는 수동채권, 즉 자신이 부담하는 5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계권 행사로 쌍방 대등액인 50만 원의 채무가 소멸한다.

그런데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모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변제받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관리인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다.

제2절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관리인이 채무자의 채권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1조, 제131조).

수동채권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라면 보통 상계를 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하므로, 관리인이 먼저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다.

제3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1. 상계권 행사의 시기상 제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 가능하다(제144조 제1항). 이는 채무자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쌍방의 채권 액수가 신고기간까지 정해지도록 하여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관리인을 상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부당한 상계권 행사의 금지

가. 위기상태 이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채무부담으로 수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①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② 지급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다만 ㉠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 회생절차 개시 시점 및 파산선고 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제외)에는 상계하지 못한다(제145조 제1호, 제2호).

즉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위기상태 이후에 채무자와 거래하여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동채권을 발생시킨 경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자신들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기상태 이후 발생한 수동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회생채권자가 100만 원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위기상태 이후 회생채권자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경우, 회생채권자는 100만 원의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10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이는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을 미리 변제받는 결과를 방지하고 채무자가 수동채권을 회수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위기상태 이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신규취득하여 자동채권으로 사용하는 경우

①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회생회사)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회생회사)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다만 ㉠ 그 취득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 회생절차 개시 시점 및 파산선고 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제외)에는 상계하지 못한다(제145조 제3호, 제4호).

즉 채무자(회생회사)의 위기상태 이후에 채무자(회생회사)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양수하는 방법 등으로 신규취득한 경우, 채무자(회생회사)의 채무자는 신규취득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갑이 채무자(회생회사)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이 채무자(회생회사)의

위기상태 이후 제3자로부터 액면 100만 원의 회생채권을 10만 원에 열가로 취득한 경우, 갑이 액면 100만 원의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채무자(회생회사)에 대한 100만 원의 채무와 상계하지 못한다. 이는 채무자(회생회사)의 채무자가 열가로 회생채권을 취득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회생회사)가 가지는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7장 회생계획 인가결정

제1절 개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이나 그 기일에서 바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42조 제1항). 실무상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치기 전에 법원이 미리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감안하여 사전 검토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한다.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중 주로 문제 되는 것은 ①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③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④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각 채권자 동의시는 예외) 등이다(제243조 제1항).

회생계획의 가결요건은 ①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②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예외적으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는 4/5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③ 주주의 조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이다(제237조). 위 각 조의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46조).

제2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1. 효력의 발생시기와 범위

가.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제246조).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인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다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인가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인가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미친다(제250조 제1항).

하지만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②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제250조 제2항). 예를 들면,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위하여 연대보증하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공익채권자, 환취권자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자가 변제기 유예에 동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인가결정의 효력에 따라 공익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재는 공익채권자와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있었음을 보고하는 의미를 가짐에 그친다.

2. 면책 및 담보권의 소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채무자의 재산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되지 않는다(제251조).

담보권 말소는 법원의 직권 말소촉탁에 의한다(제24조 제2항). 실무상으로는 관리인이 법원에 담보권 말소허가신청을 하고, 말소허가를 받은 다음 다시 법원에 말소촉탁신청을 하는 방법을 취한다. 회생계획에 담보권 존속규정을 두는 경우는 담보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권리의 변경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제252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효과, 기한유예의 효과, 출자전환의 효과 등이 발생한다.

주주에 대하여는 주식의 소각·병합 등 자본감소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주주의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거나 변경된다(제264조 제1항).

4.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당연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256조 제1항).

이와 달리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채납처분은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실무상 회생계획에 징수유예 등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중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5. 회생채권자표 등 기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야 하고(제249조), 그 기재는 인가결정이 확정되는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55조 제1항).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 종결 후에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제3절 회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절차

1. 회생계획 확정본의 제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실무상 관리인은 회생계획 확정본 6부를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즉시항고 기간(공고 후 14일 이내)에 즉시항고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된다(제13조 제2항, 제245조 제1항).

2. 각종 등기촉탁신청

회생계획에서 정관의 변경, 자본 변동의 효력발생시기를 인가결정일 무렵으로 정한 경우 관리인은 조속히 정관의 변경등기나 자본의 변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등기촉탁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에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 인가로 기존 이사·대표이사의 해임절차와 신규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감사의 선임절차가 진행된다. 관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선임 및 해임등기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직후 최초로 선임된 감사는 관리인이 위와 같은 각종 등기촉탁신청을 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회생계획의 수행·변경

제1절 개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제257조 제1항). 관리인의 회생계획 수행업무는 주로 ① 사업계획의 수행, ②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③ 회생채권 등의 변제, ④ 필요한 경우 M&A 추진 등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회생계획 인가 직후 정관 변경등기, 자본 변경등기, 임원 선임·해임등기 등의 후속조치를 관리인이 수행하는 것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포함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은 법원, 관리위원회, 법원선임 감사, 외부감사기관, 채권자협의회 등을 통하여 감독된다.

한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변경된 회생계획안의 인가절차가 필요하다(제282조 제2항). 이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심리·결의·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앞서 설명한 회생계획 인가절차와 다르지 않다. 다만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는 변경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282조 제4항).

실무상 인가 후 M&A가 성사되어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일괄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하려고 할 때에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감사로서는 인가 후 회생계획 수행 결과 회생계획 수행이 무리라는 것이 밝혀져 채무변제계획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회생계획 변경을 검토할 것을 관리인에게 조언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회생계획의 수행

1. 사업계획의 수행

관리인은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영업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등 각종 항목별로 회생계획의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영업실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감사하고, 관리인에게 그 달성을 촉구하거나 재판부에 달성(예측) 여부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임금인상과 관련하여서는 관리인이 ① 최근 3년간 회생계획상의 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이익 달성 정도, ② 최근 5년간 직급별 임금인상률, ③ 과거 상여금 지급률, ④ 인상 전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등의 자료를 보고하기도 한다. 감사로서는 임금인상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따로 검토하여 재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관리인은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자산매각대금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자산 매각 시 향후 자산의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 있는지, 현재의 자산매각대금의 이자수입은 얼마인지, 자금수지계획상 매각이 늦어지더라도 변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시기에는 매각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감사는 관리인이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기간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매각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을 독려하여야 한다.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실무상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에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기일이 연말로 계획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는 해당 연도 말에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액수를 파악한 후, 그 변제를 위해 월별 자금수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연도의 변제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 하고, 관련 사항을 재판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3절 회생계획의 변경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란 회생계획 인가 시 당시 그러한 사정이 예상되었다면 당연히 현재와는 다른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라는 사태의 출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가 후 경제상황의 급변, 법령의 개폐와 같은 일반적인 사정변경, 합병계획의 상대방 회사에 대한 합병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예정대로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 관련 기업의 부도, 주력 공장의 소실, 종업원의 장기 파업 등이 해당할 것이다.

‘변경할 필요’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회생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회생계획을 변경하면 그러한 상태를 회피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종전 회생계획의 인가는 처음부터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제로 한 것이므로, 단순히 경영부진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생계획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회생계획 변경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중진의 회생계획 인가절차처럼 회생계획안 제출·심리·결의·인가를 거쳐야 한다(제282조 제2항).

제9장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제1절 회생절차 종결결정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83조).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 기업과 같은 자본구성과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는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때를 의미한다.

제2절 회생절차 폐지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로부터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와 회생절차 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고, 각 폐지사유는 <표 5>와 같다.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때, 회생계획안이 법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되더라도 심리·결의에 부칠 것이 못되는 때,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때 등이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도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으나(제287조),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

인가 전 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임의적이지만(제6조 제2항), 인가 후의 폐지는 파산선고가 필요적이므로, 법원은 파산의 원인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표 5〉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종류와 폐지사유

구 분	근거규정	폐지사유
인가 전 폐지	제286조 제1항	①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되지 못한 때 ②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 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③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을 때에 그 서면결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제286조 제2항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제287조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
인가 후 폐지	제288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

제3절 종결·폐지의 효과

1.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가. 효력의 발생시기

회생절차 종결결정은 공고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효력발생과 동시에 확정된다(제13조).

나. 관리인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

회생절차 종결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돌아간다.

관리인이 당사자로서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당연 중단되고 채무자가 이를 수계한다. 다만 부인권의 행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권한이므로 회

생절차 종결에 따른 관리인의 임무종료로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는 종료되고 채무자가 수계할 수 없다.

다. 상법 등에 따른 주주총회·이사회의 권한 행사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채무자의 자본감소, 신주·사채 발행, 자본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조직변경, 해산,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 등이 상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는 회생계획에 의하야만 가능한 것과 다르다.

또한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이사·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는 이사·대표이사의 선임이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하야야 하는 것과 다르다.

라.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의 해소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금지되는 것과 다르다.

2. 회생절차 폐지의 효과

가. 효력의 발생시기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확정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제기가 가능하고(제290조),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폐지결정의 확정이 지지된 상태에서는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관리인의 지위도 유지된다.

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효과

회생절차 폐지확정으로 회생절차는 종료하므로, 관리인의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의 해소 등의 효력

은 대부분 회생절차 종결의 효력과 같다.

회생절차 폐지 후에 건립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제6조 제6항). 또한 파산선고의 효력에 따라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제348조 제1항).

제10장 간이회생절차

제1절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지난 2014. 12. 30. 공포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였다(제293조의2 내지 제293조의8). 종래 재건형 도산절차는 대규모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정리절차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회사정리절차를 기본으로 하는 회생절차로 일원화되고 화의절차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위와 같은 비판을 수용하여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제2절 간이회생절차의 내용

1.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간이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로서,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는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제293조의3). 따라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간이회생절차의 특칙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된다.

2.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서(제293조의2 제2호),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금액은 30억 원이다(시행령 제15조의3).

절차적 측면에서 간이회생절차가 회생절차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를 규정한 점이다.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제293조의7 제2항), 이 경우 관리인도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행하면 된다(제293조의7 제3항). 회생계획안 가결요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가결요건을 모두 유지하면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의결권 총액의 1/2 및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였다.

제 2 편

회생절차의 감사와 직무수행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제1장 회생회사 감사제도 개관
- 제2장 감사 선임 직후 조치 및 확인사항
- 제3장 일상 점검사항
- 제4장 업종별 유의사항
- 제5장 관리인의 허가신청에 대한 확인
- 제6장 관리인의 보고업무에 대한 확인
- 제7장 감사의 법원에 대한 보고업무
- 제8장 그 밖의 수행사항
- 제9장 관리인 또는 회생회사의 부정·비리 및 회생절차상 의무 위반 사례
- 제10장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1장 회생회사 감사제도 개관

제1절 기업회생절차의 의미와 투명경영의 필요성

1. 기업회생절차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기업회생절차는 일시적으로 재정적 파탄에 빠졌지만 시장에서 생존할 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생시킴으로써 기업의 건전성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적인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기업회생절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생존 여부를 넘어 국익에 관련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 투명경영의 필요성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의 재조정이 필수적이고, 대부분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일부 면제나 출자전환 등 채권자들의 희생과 양보 위에 진행되기 때문에 회생회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채권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제도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일부 기업의 부정과 비리는 개별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기업회생절차의 전체적인 정당성과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재정적 파탄 원인의 제거라는 측면에서도 투명경영이 절실하다.

제2절 회생회사 감사제도의 의미와 역할

1. 감사의 역할과 위상

회생절차에서 감사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채권자, 주주 등 전체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전 방위적 감시자의 역할
- (2) 기업구성원(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무사안일, 사적 이익 추구, 부정과 비리에 대한 교정자의 역할
- (3) 회생회사의 건전상태에 대한 상시 관찰자·진단자, 감시자의 역할

2. 법원의 회생회사에 대한 감독업무의 실효성 확보 기능

회생절차의 기본적 전제 중 하나가 채무자의 재산 사용에 대한 법원의 감독에 의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사기나 낭비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이고, 이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장치가 감사제도이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감사를 통해 회생계획의 적정한 수행과 투명경영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감사는 회생회사 현장에서 법원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회사정리법 시절부터 이른바 ‘실질감사 제도’를 시행하여 왔는데, 이는 말 그대로 회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인 감시자의 역할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감사가 재판부의 눈과 귀가 되어 재판부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는 회생회사의 현황과 내막을 살펴본 후, 감사의 입을 통하여 회생회사의 실정을 재판부에게 직접 전달 필요가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시행에 따른 감사 역할의 중요성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사정리법과는 달리 이른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영자에게 계속 경영권을 맡김으로 인해 종전 관행의 답습, 기업이익의 사외 유출, 비리의 은폐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협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권자들의 소극적, 방관적 태도 때문에 그 역할이 미미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견제하는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다.

회생회사가 재정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열악함에도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몫을 줄여서 감사의 보수로 지출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4.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 필요

회생회사가 잘 운영되어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회생계획의 성공적 수행)과 그 과정에서 준법경영·투명경영의 원칙이 지켜져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회생절차의 가장 중요한 2대 목표이다.

회생회사의 감사는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감사는 통상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선임되므로,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절차, 회생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사유, 관리인의 경영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과 사전허가·각종 보고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회생사건실무’ (상)·(하) 책자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발간한 ‘관리인 직무편람’ 등의 책자를 참고하도록 한다.

제3절 회생회사 감사의 법적 지위

1. 감사의 선임

제203조 제4항은 상법상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회생회사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생회사의 감사를 채권자협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직접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생회사의 감사로서 제20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는 법원이 감사를 선임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보게 된다(제263조 제4항). 따라서 회생회사의 감사는 대표이사나 이사처럼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후임 감사 선임에 의하여 비로소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는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회생실무준칙 제4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일독할 필요가 있다.

2. 감사의 임기 및 보수

가. 임기

감사의 임기는 법원이 정하며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263조 제3항, 제5항).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감사의 임기를 다른 임원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통상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선임된 날부터 길어도 3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 보수

감사는 회생절차를 위한 기관의 일종이므로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법원은 감사를 선임할 때에 감사가 지급받을 보수를 결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경우 통상 감사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리인의 보수 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다른 업체의 감사 보수실태, 채무자의 규모, 종전 감사의 보수액, 신임 감사의 종전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데, 회생회사가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보다는 낮게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감사들의 보수수준을 업종별, 채무자의 규모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감사를 새로 선임할 때

에 위 자료를 참고로 하여 감사들의 보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3. 감사의 의무

가. 조사·보고 의무

감사는 상법 제412조, 제413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외에 법원으로 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나. 선관주의 의무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해태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임직원의 비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감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법 제414조).

다. 경영침해 금지

감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관리인의 직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생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회생회사의 장부, 공람서류 기타 감사를 위하여 제공된 문서와 자료는 신속히 열람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라. 비밀준수 의무

감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겸직금지 의무

회생회사의 감사는 회생회사 및 자회사의 관리인, 관리인대리,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4. 감사의 사임 및 해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의 사임이나 해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감사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기관인 이상 사임에 관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법원에 의하여 해임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감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또 법원은 감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감사능력이 부족한 때,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감사의 해임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제13조).

5. 공동감사

회생회사가 중소기업체인 경우로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여럿의 채무자에 관하여 동일한 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감사의 보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일주일 중 3일은 A 업체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근무일은 B 업체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구체적인 근무일수 배분은 주심판사와 미리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4절 감사로서의 기본적 근무자세

회생회사의 감사로 일하게 되는 것이 제2의 일터라는 의미도 있지만 공익을 위한 봉사자라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일부 회생회사의 감사의 경우 회생회사의 감사직을 단순히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퇴직하고 법정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회생회사에서 직위를 다시 얻는 방편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비록 정상 기업에 비해 보수가 낮고 예전에 근무하였던 기업에 비해

근무환경이 좋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심껏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은 회생회사의 감사제도 운영과정에서 실무상 제기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인데, 향후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 출·퇴근 등 근무기강

일부 회생회사의 경우 감사가 출·퇴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여 회생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보수가 아깝다는 불만이 제기된 적도 있다.

나. 관리인과의 마찰

감사는 관리인의 경영과 회생계획 수행활동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므로 관리인과 사이에 업무상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실제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감사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은 불가피하나, 이러한 마찰이 발생한 경우라도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주심판사에게 적절한 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감사가 정당한 권한을 넘어서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한 마찰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감사에게 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관리인에게 이를 요구하거나, 이로 인해 관리인과의 마찰이 염려된다면 주심판사에게 건의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제공을 하게 하도록 요청한다.

다. 직원들과의 인화

내부 직원들의 조직적 저항 내지 협조거부로 직무수행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점령군 같은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태도는 곤란하며, 지나친 의욕으로 불필요한 불화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반대로 회생회사의 임직원과의 지나친 일체감으로 감사의 본분을 망각한 사례도 있었다. 회생회사의 내부관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객관성을 상실하고 회생회사의 임직원에 편에 서서 주관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라. 감사 권한의 오남용

일부 회생회사의 경우, ① 감사가 직접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행위, ② 감사가 자신이 법원이 선임한 감사임을 자랑하면서 직원들에게 다소 권위적 모습을 보인 행위, ③ 감사가 장부 반환을 즉시하지 아니하여 회사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행위, ④ 관리인의 비자금 조성 등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관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거래를 한 행위 등이 문제 된 적이 있다. 모두 감사 권한을 오·남용한 사례인데, 준법경영은 관리인뿐만 아니라 감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사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에 주저하지 않되, 그 정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감사의 형식적인 직무수행

감사가 형식적인 직무수행으로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8350 판결), 이는 회생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사가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출받는 것을 방치한 한보철강의 전직 감사들에게 은행의 손해액 중 5%인 154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바도 있다.

제5절 업무수행 요령

회생회사의 감사는 회생회사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계장부 기타 회생회사의 내부 서류를 열람하고 영업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회생회사의 감사가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① 회생회사는 감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인이 결재하는 서류를 모두 그 결재 전 또는 결재 후 지체 없이 감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②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회계 장부 기타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관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회생실무준칙 제4호 제9항 (가)목].

감사로 부임한 이후, 관리인이 그 여건이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심판사에게 그 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회생실무준칙 제4호에서는 감사가 관리인이 결재하는 모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인과 협의하여 공람의 대상을 관리인이 결재하는 서류에 한정하지 않고 임원이 결재하는 서류나 특정 사항에 관한 서류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급적 후술하는 감사규정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제6절 중점 감사사항

회생회사의 감사는 엄정하고 객관성 있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회생실무준칙 제4호 제9항 (나)목].

- ① 법원의 허가 없는 자금의 조성 및 지출 여부

- ② 회계계정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 ③ 부당한 수입 감소 또는 지출 증가가 있는지 여부
- ④ 채무자 조직의 능률성
- ⑤ 채무자 내부에 파벌 또는 이익집단,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의 존부
- ⑥ 노동생산성의 저하, 근로 분위기의 해이 기타 채무자 운영에 있어 부정적 요인의 존부
- ⑦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제9호(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요령) 제2항 소정의 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상법 제412조의5 참조)
- ⑧ 관리인이 조사를 요구한 사항

회생회사의 감사가 행하여야 하는 감사사항이 위 ①~⑧에 국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제2장 감사 선임 직후 조치 및 확인사항

1. 합리적·상시적 감사 시스템 구축

가. 상정 가능한 방안 예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임금 및 복지 삭감, 사기 저하 등으로 탈법행위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는데, 위기 징후의 조기 발견, 사후 교정이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부실 징후의 발견 및 Monitoring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은 그 예이다.

- ① 업무분장과 순환보직(자산의 관리, 기록, 승인업무 분리)
- ② 투명하고 합리적인 승인절차
- ③ 거래증빙서류와 장부의 문서화
- ④ 자산이나 서류 등에 대한 접근·사용 통제(특히 회계업무처리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IT 사용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내부 통제 필요)
- ⑤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제도의 활용

특히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할 전담 직원이 없거나 업무능력이 미숙하여 회계사에게 기장업무를 일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가 회계처리의 도우미 역할을 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내부(자체) 감사규정 제정

회생회사의 감사로 부임하게 되면 관리인과 협의하여 가급적 회생회사의 자체적인 '감사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감사업무를 표준화하고 직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행동기준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감사의 직위가 유명무실하여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다가 법원 선임 감사를 맞이하는 생소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감사직무규정을 통해 감사의 역할과 직무범위 등을 명확하게 인식시

킬 필요가 있다.

[별지 1]은 감사직무규정의 한 예인데, 이를 개별 회생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다. 회사의 규모와 내부 상황에 따른 단력적 대처 필요

회생회사는 규모가 수천 명에 이르는 대형회사부터 가족회사와 유사한 소규모 기업까지 다양하므로, 실정에 맞게 감사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직원 숫자가 3~4명밖에 되지 않고 매출 규모도 작은 소규모 회사에 대해 회계업무 전담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거나 감사 관련 전산시스템을 완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2. 현금 및 예금의 관리상태 점검

감사로 선임된 후 회생회사의 현금 및 예금의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되, 현금전표발행을 누락하여 장부와 실제 보유 현금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에 유의한다.

- ① 회계 및 경영에 관한 ERP상으로 거래은행별 잔액 확인
- ② 현금보유액은 ERP상 현금출납장 잔액과 일치 여부 확인
- ③ 기타: 은행별 입·출금통장, 정기예금 및 적금통장, 은행발행 예금 잔액증명서로 확인

3. 관리인 인장 관리상태 점검

관리인은 선임과 동시에 관리인 인장을 만들고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한다. 통상 관리인 인장은 법인인장 및 사용인장(금융기관 및 일반 상거래용)으로 나뉜다.

감사로 선임된 후 관리인 인장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관리인 인장이 함부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인 인장에 대한 관리책임자에 대한 각서를 징구할 수도 있다.

4. 회생계획 및 이행실태 점검

회생회사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계획과 법원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각종 소송절차 내역 확인

회생계획 및 조사보고서, 관리인이나 임직원과의 면담, 서류 검토 등을 통해 회생회사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소송절차의 내역을 확인한다. 특히, 관리인이 부인권과 관련된 소송을 성실하게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관리인이나 임직원과의 면담, 각종 서류 검토 등을 통해 부권인의 행사 대상인 행위가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한다.

6. 회생회사의 부실원인 및 현 상태 파악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회생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파악한다. 또 현재의 매출 및 손익 현황을 포함한 영업상황, 재정상태 등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여 부실의 원인이 잔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7. 회생계획 인가 후 허가신청사항 확인

회생계획에서 정관의 변경, 자본 변동의 효력발생시기를 인가결정일 무렵으로 정한 경우 관리인은 조속히 정관의 변경이나 자본의 변동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등기축탁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한다.

또 회생계획에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 인가로 기존 이사·대표이사의 해임절차와 신규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감사의 선임절차가 진행된다. 관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의 선임 및 해임 등기축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최초로 선임된 감사의 경우에는 관리인

이 아래 사항들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쳐 관련 등기축탁신청을 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① 주식 병합에 따른 자본감소
- ②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 ③ 정관변경
- ④ 임원의 해임 및 선임

제3장 일상 점검사항

제1절 회계 관련 점검사항

1. 주요 점검사항 개관

회생회사의 회계관리와 관련하여 감사가 일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계장부(일계표, 자금일보, 경리일보, 입·출금전표, 세금계산서, 자금수지표, 지출결의서, 원인행위 승인품의서 등)나 법원에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가 실제로 발생한 수입·지출 내역, 영업실적을 그 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확인
- 입금·출금 내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감독
- 법원 허가를 받은 지출 항목에 대한 실제 지출 여부 및 변동 여부 확인
- 부실한 회계처리 억제: 장부와 실물의 주기적 비교·점검, 회계기록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취약 요소 수시 점검(대손상각 관리, 입·출금 관리, 채고 관리, 거래처 관리 등)
-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수시 시재 감사: 실제 보유액과 현금출납장 등의 일치 여부 확인
- 법원에 신고한 예금계좌 외의 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확인
- 미수채권 및 채고자산(상품성이 떨어지는 장기 채고자산 처분 권고) 관리상태 점검, 체계적인 관리방안 모색
- 월간보고서 중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이 심하거나 이례적인 항목이 있다면 확인 필요
 - 만약 매출 및 입금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특정 항목의 지출

- 이 전월보다 갑자기 증가한 경우처럼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 파악
- 자금 지출 내역 중 부적절한 것이 있는지 여부, 공익채권이 지나
치게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 접대비나 업무추진비 등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자금 시재와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잔고
증명서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필요
- 회계의 투명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예금계좌 일원화 또는 최소화를 통한 자금집행 감독의 효율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새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통해서만 회사자금의 입·출금이 가능, 입·출금이 빈번하고 지점
이나 해외지사가 다수여서 단일 계좌의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회
사의 경우에는 자금관리계좌를 최소화하도록 하여 자금집행의 투
명성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 회생회사가 업무현황을
보고할 때 정기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도록 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인된 은행계좌 잔고확인서를 제출하
도록 하여 자금 시재 파악. 필요할 경우 예금성 자산에 대한 조
회를 실시하여 회사자금이 적정하게 관리,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
- 회계처리내용과 현장상황의 주기적인 대사
 - 주기적으로 매출채권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거래처 조회, 매입한
원재료의 실제 입고 내역 검토, 고용된 인원에 대한 파악, 실물
유형자산의 실재 여부 파악 등을 통해 회계처리내용과 현장상황
을 비교·조사하여 회계처리내용만을 점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오류 방지

2. 자금 입·출금 관련 점검사항

가. 전 영업일자까지의 거래 은행별 잔고 점검

(1) 점검사항⁴⁾

- 거래 은행별 입·출금 현황 출력 또는 확인
- 거래처별 납품대금 수령 여부 확인: 입금된 금액은 최소 유지금액 제외하고 모 계좌(집금계좌)로 이체 처리함
- 납품대금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통상 같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외상매출금이 '-'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도 많게 입금된 것을 의미함
- 외상매출금(미수금) 거래처 원장(계정별 거래처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장부)을 출력 또는 확인하여 월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거래처 원장의 외상매출금(미수금) 증가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또는 외상매출금(미수금) 감소금액과 예금의 회수내역이 일치하는지 비교 확인: 잔액이 남아 있으면 외상매출금(미수금)이 있으므로 원인을 점검(간혹 계산오류에 의한 잔액이 있을 수 있음)
- 계정별 거래처 잔액명세서 또는 미수금명세표를 출력 또는 확인하여 거래처별 미수금 명세 점검
 - 전기이월: 전년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미수금
 - 당기차변: 금년도 미수금
 - 당기대변: 전년도 미수금 포함 총 회수금
- 입·출금에 대한 전표발행을 점검하는데, 전표발행은 통상 다음과 같고 전표발행이 되어야 당해 계정으로 자동적으로 입력됨

4) 후술하는 ERP 시스템 중 경리회계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회사마다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대동소이함.

- 일반 입력: 법인경비 등을 지출
- 매입, 매출입력: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매입, 매출

(2) 점검 효과

매일 은행별 입·출금명세를 출력하여 점검함으로써 외상매출채권(공사미수금 포함)을 파악하여 관심을 갖고 조기에 미수금을 회수하지는 취지이다. 납품(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전표발행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외상매출채권(공사미수금 포함)의 발생액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정확한 매출채권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매출채권이 회수되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대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분할 입금되었거나 입금이 지연된 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나. 입·출금 거래 관련 전표 및 지출결의서(신청서) 점검

- 전 영업일까지의 입·출금 거래명세 조회표를 출력, 확인
- 지출결의서 점검 및 사전결재 원칙
 - ① 지출내용 확인, ② 지출항목에 따른 지급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 ③ 회사의 CASH FLOW상 지급시기의 적정성 여부, ④ 거래관계상 결제시기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 지출처에 입금된 것이 합당하게 지급(처리)되었는지를 확인. 지출결의서에 승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출신청서에 지출처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3자 또는 개인 명의로 입금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최종 수취인이 지출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
- 원자재 구매대금은 통상 월말에 일괄 지급하는데 구매 시 받은 거래명세표 건당 금액이 요·허가금액(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⁵⁾이내라고 하더라도 월말에 일괄

5) 부임 후 관리인에게 요구하여 법원에서 작성한 관련 결정문을 통해 액수를 확인한다.

지급하는 금액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법원(관리위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 유의

- 원자재 대금을 월 구매예상액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수주 형태에 따라 원자재가 변동이 심하여 예측하기 어렵고, 제조업은 가능함
- 원자재 구매는 비교 입찰이 원칙(관리위원회에서는 3개 이상의 회사를 권고하고 있음)이고, 금액이 큰 경우는 공개입찰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다. 매달 지급되는 용역대가 등 관련 계약의 법원허가 점검

매달 지급금액이 요·허가금액 이내라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요·허가금액에 해당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임대차, 증여, 교환, 소비임대차, 도급, 고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원가분석을 위해 회계법인과 업무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월 지급금액이 요·허가금액 이내라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볼 때 요·허가금액에 해당하면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업무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정식으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되는 수수료 금액이 요·허가금액을 초과하면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3. 회계계정 관련 점검사항

가. 자주 사용되는 회계처리 내용

(1) 재료비

- 원재료비: 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재료비
 - 부재료비: 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원재료비 이외의 부가적인 재료비
- ⇒ 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2) 노무비

-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임직원 등의 급여, 임금, 상여금, 연월차 수당 및 잡급 등

(3) 외주가공비: 재화를 가공할 목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주는 비용

(4) 경비

- 복리후생비: 일반식대, 차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생수대금, 야유회경비, 경조비,⁶⁾ 생일선물비, 기념행사비, 서클지원금, 표창 및 시상금, 피복비, 구내식당운영비 등
- 교육훈련비: 강사료, 연수원운영비, 사외위탁교육비, 해외연수비 등
- 여비교통비: 해외출장비, 국내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 도서인쇄비: 정기 구독물, 신문대, 전문서적 구입비, 고무인 및 명판대, 서식인쇄비, 복사비 등
- 통신비: 전화요금, 팩스 전송료, 인터넷 사용료 등
- 차량유지비: 유류대, 자동차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금, 주차 및 통행료 등(자동차 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 가능)
- 소모품비: 각종 위생용 소모품, 철물 및 전기용품, 불펜 등의 소모성 비품의 구입비 등
- 지급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지게차 임차료, 중기임차료 등
- 지급수수료: 기장수수료, 각종 증명발급, 홈페이지 유지비, 보안시스템 유지수수료,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용역수수료, 경장기술료, 설계비, 환경정비, 어음수령비 등
- 세금과 공과(금): 재산세, 종합토지세, 환경개선부담금,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업소세, 인지대, 협회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등

6) 거래처 관련 경조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 수선비: 공구기구 수선, 기계장치 수선, 건축물 수선, 건물 수선, 비품 수선
- 전력비: 한전제공, 자가발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수도광열비: 상수도, 하수도료, 난방비, 가스료 등
-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비, 건축물 감가비, 공구기구 감가비, 기계장치 감가비, 자동차 감가비 등
- 보험료: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사부담금, 화재, 해상, 동산 보험료 등(자동차 보험료는 보험료 또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해도 무방함)
- 접대비: 거래선 접대, 선물접대, 거래선 관련 경조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광고선전비: 신문광고, TV광고, 달력제작, 라디오광고,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비
- 운반비: 택배요금, 킷서비스 요금, 자재 운반비, 증장비 운반비, 상·하차비 등
- 회의비: 주춧음료, 기념품 성격의 선물대, 회의실 차대, 회의실 소모품비, 관리자 회의비 등
- 판매촉진비(판매부대비용):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
- 판매장려금: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사전약정이 있어야 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정액장려금은 접대비임. 특정거래처에만 국한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볼 수 있음)

나. 201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항목

- (1)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2015. 1. 1. 시행)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이 간소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상시 종업원수 기준 및 자본금 기준을 폐지하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과 평

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2)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발급의무는 2015. 7. 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하고, 가산세는 2016. 1. 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면세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였고, 전자계산서 미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지연전송의 경우 공급가액의 0.5%(단 2016. 12. 31. 이전 공급분은 0.1%), 미전송의 경우 1%(단 2016. 12. 31. 이전 공급분 0.3%)를 적용한다.

- (3)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가 1,800만 원이었으나, 이를 2,4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다만 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1,200만 원) 및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접대비 한도금액에는 변경이 없이 종전의 기준대로 적용된다.

- (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2014. 10. 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종전에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2014. 10.~2015. 12. 중 취득한 설비자산을 대상으로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제지원 확대(2015.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적용대상에 영화관 운영업, 신재

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14. 12. 31.에서 2017. 12. 31.로 연장하였다.

(6)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 시 추가과세 1년 유예(2016. 1. 1. 이후 시행으로 유예됨)

법인 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법인세율에 10%를 가산하는 추가과세를 중소기업의 경우 2014년부터 과세하는 것을 2015. 1. 1. 이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유예하였으나 이를 다시 2016. 1. 1. 이후 과세하는 것으로 유예하였다.

(7)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특례에 따라 가산이자 이자율을 종전의 1일 1만분의 3(연 10.95%)에서 국세환급금 이자율(연 2.5%)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8)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금융회사 등의 정기에금이자율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이 종전 2.9%에서 2.5%로 하향 조정되었다.

다. 분식회계의 유형 및 개요

회생회사의 경우 종전부터 분식회계가 이루어져 왔을 가능성이 높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회계에 대한 감사 시 분식회계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아래는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식회계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1)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실제보다 양호하게 왜곡하려는 분식(호전분식)

(가) 순자산울 과대표시하는 방법(자산의 과대계상 또는 부채의 과소계상)

1) 기말재고자산 과대계상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 -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 매출액 -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 당기원재료비 = 기초원재료 + 당기매입원재료 - 기말원재료

기말원재료나 기말재공품을 과대하게 표시하면 당기제품제조원가가 과소표시되어 매출총이익이 과대표시되고, 또한 기말제품재고액을 과대표시하면 매출총이익이 과대표시된다. 이와 같이 기말원재료,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매출총이익을 과대표시한다.

기말재고자산은 단가 × 수량이므로 원가계산과정을 통하여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를 조작하거나 재고수불부상 수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한다. 제조원가명세서 분석 및 재고수불부 점검과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2) 개발비 과대계상

개발과 관련된 지출 중에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계정 처리하여 일정기간 동안 상각 처리하지만,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상개발비 항목으로 당기 비용 처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많은 IT 업종 또는 신제품개발 관련 지출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 또는 증자를 위하여 당기에 경상개발비로 처리할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3)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과소계상

퇴직금은 인원수, 근속연수, 평균급여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특정부서의 인원이 없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근속연수를 조작하기도 하며, 평균급여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직금 추계액을 줄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4) 미지급 비용의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

기업회계기준에서 비용은 실제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인식되므로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계상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주의가 요구된다.

(내) 순이익을 과대표시하는 방법(매출의 과대계상 또는 비용의 과소계상)

1) 가공매출계상(매출액 부풀리기)

기업이 일정수준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산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거래처와 매출채권채무확인서, 거래명세서상 상대방의 인수확인, 재고수불부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2) 선수금의 매출계상

선수금이란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으로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제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 제품 인도 전에 매출로 인식하면 부채가 과소계상되고, 매출이 과대계상되어 부채비율 및 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표시된다.

3)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대손상각비와 연결되므로,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는 것은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를 적게 인식하여 이익을 과대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매출채권의 거래처 현황, 과거 대손율 분석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4) 유형자산에 대한 미상각 또는 과소상각

감가상각을 적게 하거나, 미상각하는 것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과소계상되어 기업이익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분식회계 유형이다. 이는 감가상각 방법 및 전기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내) 계정과목을 조정하는 방법

이익과 관계없는 분식회계의 유형으로 ① 비유동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거나(예컨대,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 ②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함으로써(예컨대,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순자산이나 이익을 조작하지 않고도 유동비율, 당좌비율 등을 양호한 것처럼 할 수 있다.

(2)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실제보다 나쁜 것처럼 왜곡하려는 분식 중소 규모의 기업에서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거나, 대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납품가격 인하압력을 피하기 위한 경우도 많다. 또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짜 증빙으로 비용지출이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거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매출 누락하는 경우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수입 및 지출 관련 점검사항

가. 낭비성이 없는지 점검

- 퇴임 임원에게 리스자동차가 계속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이 경우 즉시 반납조치를 해야 하고 중도해지수수료가 부담이 크므로 할 수 있다면 타인에게 승계를 하면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음)
- 공사 현장 또는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무전기를 반납하지 않고 월 사용수수료만 지급하는지를 점검
- 활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재에 대해 창고에 방치 여부를 확인
- 재고관리에 대한 ERP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전산으로 확인이 되는 사항이나, 구매하고자 하는 자재에 관한 공사현장별 재고유무를 파악하지 않고 구매신청을 하는지 여부를 점검
- 원가분석 없이 적자공사를 지속적으로 하는지 점검⁷⁾

7) 공사금액에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기타경비를 빼면 손익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요달성 최저 매출액은 총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관관비)를 원가율(1-이익률)로 나누면 산출된다. 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적자이므로 원인분석과 함께 지속 여부 결정 또는 공사단가 인상을 요청해야 한다.

- 증빙 없이 관리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경비사용에 대한 지급 여부 점검
 - 법인경비에 대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득세와 중복된 손비처리 가능성이 높고, 법인세의 손비처리 불인정으로 인한 법인세 납세부담 또한 증가하므로 법인카드(신용카드는 회생기업으로서 발급받기 어려우니 체크카드로 대체 발급)⁸⁾를 발급함이 타당함.
- 가지급금 발생 여부 확인

나. 부가세 환급금이 회사 계좌에 입금되는지 확인

부가세 환급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부가세는 1/4 및 3/4분기에 환급받을 것이 있으면 차기 납부금액에서 공제하고, 2/4 및 4/4분기의 경우 환급할 것이 있으면 회사 계좌에 입금시켜 준다.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인정(대손세액 공제)되는 것은 상사채권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하거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때이다. 예컨대, 일반외상매출채권의 경우 2014. 4. 29. 공급받은 자가 파산하면 3년 후(2017. 4. 29.) 2017. 7.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이 기간에도 회생회사의 회수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내용증명 발송, 추심의뢰 등)해야 한다. 부도어음은 6개월이 지난 차기 반기에 신청 가능하다. 한편 대손 확정 전에 폐업을 하면 환급이 불가하며,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가능하다.

다. 금융기관의 회생회사 계좌 지급정지 해제조치

회생회사 계좌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당한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운영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회생회사는 거래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동 거래은행에 손실을 끼쳐 지급정지 해제요

8) 회생기업으로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법인체크카드는 가 능하니 경영의 투명성 정착을 위해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또 법인카드는 현금인출이 되지 않아야 하므로 신청 시 공용카드로 신청되어야 한다(지정인 카드로 신청하면 현금인출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가능하므로 못하도록 하기 위함).

청을 강력히 하지 못한 채 자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유선으로 해제 요청하는 것보다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문과 제256조의 내용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지급정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회신 요청을 하면 대부분 바로 해제해 준다. 관리인 명의로 발송해도 문제는 없지만 법원에서 선임된 감사가 감사업무 수행 중 발견되어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감사명의로 발송해도 효과적일 수 있다.

제2절 현금흐름(Cash-Flow) 관련 점검사항

1. 현금흐름(Cash-Flow) 관련 개괄적인 점검내용

가. 자금수입이 예상되는 금액 파악

(1) ERP상 미수금(외상매출채권)

ERP는 전표발행이 되는 것만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 ERP상 미수금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분에 한해 관리가 되고 있다.⁹⁾ 따라서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나 거래처가 기성을 미루고 있는 경우(기성이 되어야 세금계산서가 발행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미수금에 대한 현장별 별도 관리(통상 엑셀로 관리)가 필요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부서 및 현장도 관리하고 있다. 매출거래처가 미수금(외상매출채권)을 하자보수나 클레임비용에 충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상적인 기간 내에 회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부가세 환급 내용 점검

부가세는 1/4 및 3/4분기에 환급받을 것이 있으면 차기 납부금액에서 공제하고, 2/4 및 4/4분기의 경우 환급할 것이 있으면 회사계좌에 입금

9)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은 ERP 시스템에서 관리가 안 되므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시켜주므로 세무서에 제출된 계좌가 회사 것인지 확인한다.

(3) 기타

그 밖에 자산의 매각 및 부동산 임대 등으로 인한 수입을 확인한다.

나. 자금지출이 예상되는 금액 파악

(1) ERP상 미지급금

위에서 살펴본 미수금과 마찬가지로 ERP상 미지급금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만 관리되고 있으며, 주로 자재대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엑셀 등으로 별도로 관리하여 동 금액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2) 외주가공비

제조업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므로 대조가 가능하나, 건설업의 경우 통상 현장노무비가 주를 이루고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소득원천징수내역, 일용직 신고현황을 보면 그 금액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3) 기타

그 밖에 직원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가세, 식대 등 법인 경비, 자산의 매입 및 부동산 임차 등으로 인한 지출 등을 확인한다.

다. 자금의 수입 대비 지출의 비교 및 대책 강구

수입과 비교하여 지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신용도 높은 대기업의 전자어음 할인은 가능)은 어려우므로 부득이 자재대 지급이나 직원의 급여를 순연시킬 수밖에 없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관리인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미수금(외상매출채권)의 점검

(ERP상) 거래처별 원장(대 과목)을 조회(출력)하면 거래 업체별 미수금과 총액을 알 수 있다. 미수금 중에는 대손처리대상이 되는 악성 미수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별도로 관리하고, 일반적인 미수금에 대한 계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거래처별 원장(대 과목)에 있는 거래업체명을 클릭하면 거래업체별 미수금 명세(거래처 원장), 매출액, 품목명(공사 명으로 대체), 입금일자를 알 수 있다.

미수금(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을 출력 또는 확인하여 월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거래처 원장의 미수금(외상매출금) 증가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미수금(외상매출금) 감소 금액과 회수내역이 일치하는지 비교확인하고 상이한 경우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업체의 규모에 따라 공사대금 입금시기가 다양한데, 대기업은 통상 월 1회 입금시켜주는 경우와 2회 입금시켜주는 경우 2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7월 말에 입금시켜주고, 후자의 경우 월 중 1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같은 달 말에 입금시켜주며, 월 중 15일 이후에 발행되었으면 다음 달 15일에 입금시켜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중견업체 및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금상황에 따라 2~3개월이 늦을 수도 있다. 납품업체가 원청사의 하청업체인 경우 원청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1~2개월 후에 지급해주기도 한다.

미수금에 대한 확인은 월 1회가 아니라 수시로 ERP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미수금이 많은 경우는 그 사유를 파악해야 하고 정상적인 경우보다 늦은 경우는 전화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상사한테 보고하여 조치하게 해야 한다. 상기 업체에 확인하기 전에 회생회사 측의 착오는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ERP에 관리되고 있는 미수금 외에 앞에서 언급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미수금에 대한 금액을 파악한다.

3. 부가세 환급 내용 점검

앞에 언급한 “1. 현금흐름(CASH FLOW) 관련 개괄적인 점검내용” 참조

4. 미지급(외상매입대금)의 점검

(ERP 시스템을 통해) 거래처별 원장(대 과목)을 조회(출력)하면 거래처별 미지급금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미지급금 차변은 대금지급내역이고 대변이 바로 미지급금 내역이다. 외상매입금이나 외주가공비 지급현황을 파악하려면 (수납 지급관리의) 지급내역확인을 보면 가능하다(수입지출 상세현황의 지출명세서도 가능하나 이는 실제 지급되었으나 전표발행이 안 된 것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지급내역확인이 더 정확함).

원자재는 필요 시 구매하지만 대금 지급은 통상 월말에 일괄 지급하며, 회사의 CASH FLOW가 좋지 않은 경우 지연될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지급금은 통상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직원의 체불된 급여 등도 이에 해당된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미지급금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5. 기타

가. 각종 법인경비 등 파악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가세, 식대 등 법인경비 및 자산의 매입 및 부동산 임차 등으로 인한 지출 등을 파악한다.

나. 급여지급 파악

임직원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임직원 급여는 정해진 일자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지연될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우선순위는 현장 노무자, 직원 그리고 임원 순으로 하도록 관리인에게 권유한다.

다. 월별 자금집행계획 점검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집행 가능성을 점검한다. 가용 시재현황 파악은 ‘은행별 계좌 잔액 + 현금출납장 잔액’으로 점검하고, 자금집행계획은 ‘수입금액 + 지출금액 + 구체적 내역’으로 확인한다. 향후 3개월까지의 예상 자금유입액과 예상 자금지출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예상자금수지표를 작성하면 언제 자금이 부족한지, 외상매출금(미수금)의 조기 회수를 독려해야 하는지, 주요 자금집행의 예상시기를 판단하여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 자금차입 가능성 및 방안 점검

자금차입 가능성 및 방안을 점검한다. 전체적으로 미수금보다 미지급금이 더 많으면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차입을 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에 의한 차입은 어려운 상태이다.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전자어음(B2B)에 대해서는 어음할인이 가능하나, 그 이외는 현금 등 담보제공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제3절 회생계획 수행에 대한 점검과 독려

1. 영업실적 점검

매출액·영업이익·자금시재 등이 회생계획과 부합하는지, 미달한다면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매출액만큼이나 회생계획상의 매출원가율, 판관비율 달성 여부가 중요하다. 실무상 관리인들이 매출액 달성에 매몰된 나머지 저가로 수주하거나 판매하여 매출액은 회생계획상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간 채무변제계획을 미리 강구하여 자금수지 등을 점검하고, 변제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보고하여 향후 조치에 대해 협의하도록 한다.

그 밖에 비용절약, 원가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 미회수채권의 회수를 독려한다.

2. 부동산 등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처분) 점검

회생계획에서 부동산 등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미리 계획을 세워 진행하도록 독려한다. 부동산경기가 침체국면이면 특히 단기간 내에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매각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무상 관리인은 공장 등의 처분을 미루거나 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하기를 희망하여 매각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회생담보권과 연계되어 있어 매각이 제때 되어야만 변제가 가능하다.

부동산 등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은 공매가 원칙이나, 사정상 곤란하면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도 가능하다.

또한 부외자산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견 시에는 법원에 즉각 보고하고 회사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의 매각 시에는 대금이 회사로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절 관리인에 대한 경영상 조언

회생회사의 감사는 관리인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관리인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회사의 경영에 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수주상의 자격 제한[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정부발주공사 PQ 결격, 보증서 발급 제한(건설공제조합, 각종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기피) 등으로 규모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한정] 등 회생절차 진입에 따른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한 조언 등이 그것이다.

다만 감사는 회생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관리인의 직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므로(회생실무준칙 제4호 제13항),

경영행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자제하여야 한다.

결국 관리인의 경영행위와 관련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에게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관리인의 경영판단을 존중하되 감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그 결정 과정에 무엇인가 왜곡이 있다거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감사 스스로 재판부에 찾아와서 그 문제점이나 의심되는 점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한다.

제5절 접대비 편성 및 지출 관련

1. 접대비 관련 실무상 문제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되는 접대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한데, 종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가. 예산편성의 문제점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전체 접대비 한도를 감안한 예산 설정 관리가 미흡하거나, 사용인별(임원별·부서별), 비목별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았다.

나. 접대비 이외의 계정과목과의 혼동

기부금,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등과 구별하여야 함에도 혼동 관리하는 회사가 많았다.

다. 접대비 사용방법의 문제점

법인카드, 개인카드, 현금 등 통일이 되지 않고 있었다.

라. 관리의 문제점

회사 내에서도 사전승인이나 사후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

리시스템이 없는 곳이 많았다. 또 법원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도 분기보고 시 회사 전체 실적만을 개략적으로 보고해왔다.

2. 개선방안

감사는 회생회사의 접대비 사용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접대비 예산편성 허가

각 회생회사는 매 회계연도 초마다 전년도의 접대비 예산 집행실적을 보고하고 신년의 접대비 예산을 편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년 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
- 원칙적으로 사용인별(임원별·부서별), 비목별로 예산을 편성
- 예외적으로 위와 같이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

나. 접대비 계정항목의 구별

회생회사는 접대비와 임원이 사용한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기부금 등의 항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접대비 사용방법

접대비 사용방법은 법인카드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을 취할 경우 적절한 사전 내지 사후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1만 원 이하의 금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라.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

법인카드 사용실적은 회생회사의 감사(감사 부재 시는 관리인)가 감독하고, 회사는 법원에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매 분기마다 보고서

제출 시 임원별 사용실적을 따로 항을 만들어 보고한다. 접대비와 구별되는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기부금 등은 따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마. 한도 내 운용 및 적정 사용 여부 확인

감사는 접대비가 그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지는 물론, 그 사용내역이 적정한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사용내역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절 그 밖의 점검사항

1. 현금 시재 검사

월 1회 원칙으로 하고, 현금 인출액이 많으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사고예방 차원에서 좋다. 현금출납장을 출력하여 보유 시재액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현금으로 지급된 전표를 입력시키지 않으면 시재보유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출금전표 중 계좌 입금분은 통상적으로 ERP에 등록하면 바로 입금처리 가능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거래처와 발행되지 않는 경우(영세업체)를 구분해서 입력시켜야 한다. 법인체크카드 사용 시 바로 결제 통장에서 차감되므로 ERP상 지급거래내역 조회하고 온라인 금융조회 등을 조회하여 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시재액이 틀리는 경우는 전산입력 누락이 대부분이다. 부정기적인 시재 검사를 통해 담당자의 사고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표누락을 조기에 방지가 가능하다.

2. 정기에·적금 등 현금자산 확인

ERP 시스템에 거래은행의 예금을 링크시키면 ERP를 통해 거래 은행

별 예금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ERP 시스템이 없으면 예금통장, 정기예금증서 및 은행별 예금 잔액증명서로 확인한다. 금융관리 보고서를 통해 수시 입·출금, 정기예금, CMA 등 증권계좌 및 대출금의 금융거래명세표의 조회가 가능하다.

3. 받을 어음, 유가증권 B/S 잔액과 실물대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은 아직도 어음실물을 발행하나 대기업인 경우 전자어음(B2B)을 발행하므로 이를 확인한다.

4. 재고, 입·출고 및 외주관리 상태 점검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고 있는지, 장기 악성재고가 증가하고 있는지, 원자재 및 제품의 입·출고 사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주물량의 입고와 정확한 자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 ① 입·출고내역, 출하지시서와 출고대장 확인
- ② 품목별 재고현황 점검, 재고수불부, 재고원장과 실물점검
- ③ 품목별 적정재고 보유 여부 확인
- ④ 외주가공업체와 입·출고내역 상호 점검
- ⑤ 입고 거래명세표 매입처송장 비교, 확인

5. 자재대금 지급 시 법원 허가 여부 및 관련 미지급금에서 지급되는지 확인

가. 문제점

자재대금은 통상 월말에 일괄 지급하므로 그중에 법원 허가를 받은 건과 받지 않은 건이 혼합되어 있는데, 당초 허가된 금액과 그에 기한 실제 지출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물론 그 지출금액이 언제 허가된 금액인지 확인이 어렵다.

허가받은 금액이 부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엑셀로 별도로 관리하

고, 해당 내역이 관리인이 제출하는 월간보고서의 ‘허가금액 이상 지출내역’의 비고란에 허가일자, 허가번호 및 지급금액 등으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미지급금으로 계정처리 되는 시점

자재구매 시 공급업체는 자재와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발송하고, 발주업체로부터 자재를 이상 없이 수령했다는 확인을 한다. 이에 공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고 발주업체는 동 계산서를 받고 미지급금으로 계정처리 한다.

다.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시점

세금계산서는 서류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전자 세금계산서 두 종류가 있는데,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금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도 시행으로 당월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즉시 전송되므로 빠른 경우는 당일도 가능하고 모두 익월 10일에 발행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류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하루 늦게 오거나 아니면 월말에 일괄 발행하는 회사도 있다.

라. 법원의 허가 여부 및 관련 구매에 대한 지급 확인방안

미지급금으로 계정처리되는 시점은, 법원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바로 처리 가능하나, 법원 허가를 요하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시점이다. 법원 허가를 요하는 경우는 계정 처리하는 전표 여백에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건별 기준으로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여러 건의 합계금액이 허가를 요하는 금액이 되면 일괄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이미 계정 처리된 미지급금계정에 추가로 승인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결국, 월말에 일괄 지급함에 따라 승인번호를 득하게 되어 승인번호로 관리하면 된다. 거래처별 미지급금 명세(거래처원장)를 첨부, 확인한다.

제4장 업종별 유의사항

제1절 건설업

1. 건설사가 분식회계를 많이 하는 이유

건설업은 이익률 및 부채비율에 따라 도급순위가 달라진다. 즉,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나타나면 이익률이 줄어들고, 차입을 많이 하면 부채비율이 높아지므로 도급순위 하락은 물론, 공사 수주에 문제가 있게 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체 신용등급이 좋아야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설사 금융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되므로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분식을 한다.

2. 분식회계 방법

가. 주요 방법

주로 재고와 작업진행률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재고면에서는 없는 재고를 있는 것처럼 하거나, 재고가 있어도 1t당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하여 실재고액보다 많게 처리한다.

그리고 작업진행률과 관련해서는 주로 공사원가가 많게 투입된 것을 적게 투입된 것으로 처리한다. 즉, 공사원가가 1억 원이 투입된 것을 8천만 원으로 투입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은 통상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건설사의 경우 가지급금이 많다.

또 그러한 가지급금은 회수를 해야 하는데 원재료를 구매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원재료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하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래서 연말에 개인한테 사채를 빌리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채는 부외채무이므로 회계상 나타나

지 않기 때문이다.

나. 분식회계 후 통상적 처리

전년도 결산서류는 이미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바로 잡기 위해 소명이나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세금 문제 등으로 복잡하여 통상 하지 않는다. 전년도 분식회계 처리한 것을 금년도 1월 1일자로 원상 복구시켜 놓고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다. 비자금 조성에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

- (1) 현장별 공사원가명세표를 제시받아 다음의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현장별 공사원가명세표 중 경리부가 작성한 것은 허위로 조작된 것이 많으므로 반드시 현장소장 또는 공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공사가 종결되면 현장소장이 작성하는 공사완료 후 정산보고서를 보고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 (2) 재료비를 실제 구매한 것보다 많이 구입한 것으로 처리한다. 재료를 구매할 때는 거래명세표와 함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근거 없는 수치이므로 그 금액만큼 비자금으로 볼 수 있다.
현장별로 공사원가명세표를 점검하여 제출된 명세표상에 재료를 구매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대부분 여기에서 상이한 점이 발견되고 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알게 된다. 공급업체 앞 세금계산서를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급업체 앞으로 2천만 원은 법인계좌로 지급하고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금유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ERP상 입·출금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3천만 원을 공급업체 법인계좌에 입금시켜주고 동 업체에 가서 부가세 관련 + α 를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면 거의 알 수 없다.
- (3) 노무비는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상 금액과 일용 및 현장직원급여

의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현장별로 노무비 명세표를 청구하여 점검한다. 일용직 노무비를 실제 근무 인원수 대비 과대 청구하기도 한다.

통장지급이 아닌 현금지급은 자금유용의 형태이다. 노무비 지급대장에 10명이 한 것을 20명이 한 것으로 노무비를 올려서 청구하여 자금유용을 한다. 즉, 20명에 대한 노무비가 2천만 원인데 10명분 노무비 1천만 원은 정상적으로 계좌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확실한 자금유용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실행소장(공사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고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별도로 고용하고 있는 노무자들을 데리고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완수하는 소장)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노무자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노무비를 실행소장이 본인의 이익금을 감안해서 실행소장 책임 아래 지급한다.¹⁰⁾ 실행소장 앞 일괄 지급해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행소장과 합의하여 실행소장으로부터 과다 지급해준 금액에서 관련 세금을 보상해 주고 현금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개선안으로 실행소장이 신청한대로 노무자들의 개개인의 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도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을 개개인 앞 통장 입금을 권하고 있다.

공사장별 기성고 확인 및 노무비 지급이 필요하다. 현장소장이 작성한 기성금청구서에 의한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서에는 공사명, 계약금액(부가세 별도), 전회기성금액, 금회기성금액, 기성 누계액, 기성 후 잔액,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이 기재된 것을 확인

10) 실행소장과 실행물에 관한 계약을 맺은 회사는 실행소장 및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를 실행소장 앞 일괄 지급해 주는 경우가 많다.

후 지급한다. 실행소장의 경우 기성 누계액 범위 내에서 청구하도록 지도한다.

4대 보험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각자 부담액이 있고,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100% 부담하므로 일용직에 대한 인원수가 많을수록 부담액이 더 늘어나게 되어 인원수를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전년도 일용직 인원으로 금년에 선납하고, 다음 해에 정산한다. 일용직도 4대 보험, 갑근세 및 산재보험 납부대상이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 1.55% 중 사업주는 0.90%, 근로자는 0.65%를 납부하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및 고용보험 가입을 선택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대표자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비대상이다.

- (4) 외주가공비는 외주공사계약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세금계산서라도 있어야 한다. 지급처가 아닌 제3자 앞으로의 지급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즉, 공사업체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현금처리 시는 자금유용이라 볼 수 있다.

- (5) 장비임차수수료에 대한 단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먼저 장비임차 계약서를 점검하여 임차단가를 조작(정상가격 이상으로 계약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법)하여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한다. 즉, 건설 관련 장비를 임차하는데 단가를 실제 해당 월 1백만 원인데 2백만 원으로 계약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일부는 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상대방의 세금 관련 부분만큼 현금으로 보상해 주고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받아와 비자금을 조성한다.

아니면 전액을 지급처 계좌로 입금해 주고 사전에 합의된 대로 납부할 관련 세금을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와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다.

- (6) 시행사로부터 수주한 도급공사의 경우 분양대금 관리는 신탁회사

명의로 관리되지만 시공사는 수익자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시행사의 자금 입출금 관리계좌를 확인하고 분양대금이 관리계좌로 입금되고 있는지, 사업경비는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고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기타 점검 사항

가. 개정·변경된 건설 관련 법률과 입찰기준 준수 여부 점검

건설업은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 벌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로 인해 회생계획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개정·변경된 건설 관련 법률과 입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1)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2) 공공기관 발주처 입찰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적격심사 세부 기준 등

나. 건별 수주 과정 및 수주 심의시스템 점검

회생절차 신청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저가 수주로 인한 손실 발생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별 수주 과정 및 전반적인 수주 심의 시스템을 점검한다.

제2절 제조업

1. 개요

① 고객의 요구(Needs)에 맞는 상품을, ② 가장 좋은 품질로, 가장 싸게 만들어, ③ 될 수 있는 한 높은 가격으로 많이 팔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제조업은 상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의 효율적인 구매관리, 제조원가 및 제품재고관리, 매출액 및 매출채권 관리를 핵심기능으로 볼 수 있다. 감사업무 수행의 경우도 이러한 기능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자재 구매관리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자재 구매거래처의 다각화 점검-구매교섭력 강화
- ② 구매거래처 선정의 적정성 점검-복수 견적 징구
- ③ 구매단가 및 대금지급조건의 적정성 점검-정기적 시장조사 및 가격협상, 형식적인 복수견적도 많으므로 견적서의 구매단가의 적정성을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검토
- ④ 생산계획에 부합되게 구매되고 있는가-적기 및 적정량
- ⑤ 원자재 입고 시 검수기능의 적합성-반품 및 단가할인 등 조치
- ⑥ 재고의 진부화 여부 점검-유효기간 경과 또는 부패, 부식 등
- ⑦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의 일치 여부 점검-정기적 재고실사

3. 제조원가 및 제품재고 관리

가. 제조원가 점검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조원가 명세서 징구
- ② 원자재 재고수불부 점검

- ③ 생산수율(원 단위), 부산물, 폐기물, IA율 검토
- ④ 부산물 매각 시 매각거래처의 선정기준 검토
- ⑤ 폐기물의 현금화 가능성 여부 확인-예를 들면 PCB 제조 업종 등의 경우 폐기물에 구리 등이 포함되어 현금화 가능

나. 제품 재고수불부 점검

재고자산 취득원가 결정방법을 검토한다. 이에는 선입 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이 있다.

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적정성 검토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얻을 수 없다면, B/S상에 재고자산가액이 많아도 의미가 없다. 재고자산의 순실현재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실현재치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고, 순실현재치와 취득원가의 차이를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장부상 재고와 실재고의 일치 여부 점검

정기적으로 재고를 실시하고, 장부상 재고와 실재고와의 차이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 처리한다.

마. 적정재고관리(과대재고 여부 검토)

재고자산 회전율로 평가(동종업계 평균)한다.

바. 생산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 점검

최근 제조 부문을 외주화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하도급사 선정, 제품 검수, 대금지급 조건 등 내역을 점검하여야 하고, 대금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매출액 및 매출채권 관리

가. 가공매출 또는 매출누락 여부 점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제품출고 후 거래처에서 인수한 시점에(점유이전) 인식하여야 함에도 제품출고 없이 매출액 계상하거나, 밀어내기 매출 후 반품(매출환입) 처리하는 경우와 제품 출고하고도 매출액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품재고수불부, 거래처와의 채권채무확인서, 인수증 및 매출채권 거래처원장과 대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점검

매출채권의 발생 시점 및 미회수기간, 매출채권 거래처 현황, 직전년도 대손율 등을 참조한다.

다. 부실채권 예방 시스템(여신한도 관리) 점검

담보관리 및 신용판매 기준 등을 점검한다.

라. 부실채권 회수 시스템 점검

부실채권 발생, 회수진행(법적조치 포함), 회수결과 등을 점검한다.

5. 기타 회계 관련

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적정성 검토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연도별 퇴직급여충당금의 변동내역(기초, 증가, 감소, 기말)
- ②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내역
- ③ 개인별 퇴직연금 등 외부유보금 내역
- ④ 개인별 지급한 퇴직금 및 외부유보금 내역
- ⑤ 퇴직급여충당금의 원가배분 적정성 검토

나. 감가상각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으로 감가상각비의 계산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다. 재활용 부담금 또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미지급 설정 여부 점검

PET병, 유리병, 금속캔 등 포장재 사용사업자가 출고수량 기준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기에 비용인식 및 미지급계정 처리하여야 하는 데 경영실적이 나쁜 경우, 차기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한다.

제3절 해운 및 항공운송업**1. 개요**

운송업은 영업거래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됨에 따라 해외거래처 및 해외지사와 본사 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국내외 공동사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수익분배의 적정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혹은 항공기) 구매 및 처분 등과 관련된 부분, 수리비의 적정한 지급 문제와 이에 대한 회계처리 부분, 리스계약에 대한 부분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다수의 거래가 외화로 처리됨에 따라 외환 관련 거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2. 영업활동 관련 유의사항**가. 일반**

운송 영업 특성상 방대한 개별 데이터가 발생되므로 매출발생 시 관리부서와 영업부서 간의 상호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송 시점과 영업부서의 매출 보고 시점 간 시간차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영업활동 전반에 걸친 시

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운업체의 해외 Agent를 통한 영업활동

- ① Agent 담당 해외지사 및 거래처와의 자금거래 확인
- ② 관련 거래의 거래조건/거래가격의 적정성 및 승인과정에서의 적절한 승인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확인
- ③ 주요 Agent와 회사 담당자 간의 부정발생 가능성 조사
- ④ 해외영업 담당부서와 관리부서와의 상호확인절차 유무 확인
- ⑤ 관련 회계처리(수익인식 시점 등)의 적정성 확인

다. 영업활동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 ① 공동사업자와의 계약조건 및 수익분배 조건 등의 객관성 확인
- ② 계약서의 수익분배 조건과 실제 회계처리(실적처리)사항의 일치 여부 확인
- ③ 장기간 공동 진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회사 담당자 간의 부정발생 가능성 조사

라. 항공운수업체의 경우

영업활동 경로의 다양함에 따른 시스템상 검증절차를 실시하고, 다양한 부대수익에 대하여 오류 및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확인절차 등의 제도적 장치 여부를 확인한다.

3. 투자활동 관련 유의사항

가. 선박(혹은 항공기) 등의 구매 관련

- ① 신규 구매에 대한 사전계획의 타당성 여부 확인
-향후 영업 전망, 용선계약 현황 등을 고려한 구매의 적정성
- ②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매 의사결정 절차 및 적절한 승인절차 여부 확인
- ③ 리스기준(금융리스 vs 운용리스) 적용의 적정성 여부

나. 선박(혹은 항공기) 등의 구매자금 조달 관련

- ① 구매자금 조달 관련 거래처 선정의 객관적인 절차 및 승인 여부 확인
- ② 구매자금 조달 관련 계약조건/계약기간 등에 대한 검토
- ③ 해외 조달의 경우 외환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다. 선박(혹은 항공기) 등의 유지 및 처분 관련

- ① 수리비(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 ② 처분 거래처 선정의 객관적인 절차 확인
- ③ 처분자산의 적절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자료 보유 여부 확인

라. 용선계약 관련

- ① 장기 영업계획과 용선계약 현황과의 비교 확인
- ② 용선계약 거래처 선정과 관련된 업무 절차 및 승인 여부 확인
- ③ 용선계약상의 거래조건(기간, 가격 및 기타 제반조건 등)에 대한 검토

4. 기타

가. 유류비

- ① 구매처 선정에 관한 객관적인 절차 및 승인절차와 복수 구매처 선정을 통한 가격 등 최적 거래조건 충족 여부 확인
- ② 구매처 담당자와 회사 담당자 사이의 부정발생 가능성 조사
- ③ 유류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과 관련 파생상품 계약조건 등에 대한 검토

나. 금리 변동 관리

- ① 선박 등의 도입과 관련한 외화차입금의 연동금리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검토

- ② 이자율 스왑계약 등의 조건 등에 대한 검토
- ③ 금리 변동 시 낮은 금리로의 신규차입 등 대응방안 마련 여부 확인

다. 환율 변동 관리

- ① 외화부채와 외화자산 규모에 대한 상시 관리 기능 여부 확인
- ② 총자산, 부채에서 외화자산,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상시 관리 기능 여부 확인
- ③ 환율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환율변동 시 대응 방안 마련 여부 확인

제4절 유통업

1. 개요

유통업은 다수의 상품이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구입되고 판매되므로 상품 재고관리가 중요하고, 거래형태가 다양하여 회사가 직접 구매하여 재고부담을 하면서 판매하는 방식과 단순히 매장을 임대하여 주고 매달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있다. 회사의 구매 및 자금 능력에 따라서 전자의 방식이 선호되기도 하고, 후자의 경우는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선호되나 후자의 경우 입점 업체의 선정이 중요하다.

또한 유통업은 판매점 확보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기도 하므로 부동산 구입 및 임대차 등에 수반되는 거래가 중요한 관리 사안의 하나이다.

2. 영업활동 관련 유의사항

가. 구매업무

- ① 구매처 선정기준의 타당성 검토

- ② 계속 구매 시 계속 구매하는 사유 파악 및 정기적인 가격협상의 적정성 검토
- ③ 구매단가에 대한 정기적인 시장조사 기능 여부 검토
- ④ 구매대금 지급조건의 수립 및 준수 정도 확인

나. 판매업무

- ① 판매계획의 적정성(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고려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② 판매조직의 비효율성 여부 및 지점 폐쇄/신설 여부 검토
- ③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 ④ 판매 시 할인 Rebate에 대한 명확한 방침 수립 여부 확인

다. 입점 업체

- ① 입점 업체 선정기준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조사
- ② 입점 업체 실적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기능 검토
- ③ 입점 업체의 실적 데이터의 장기적인 관리 여부 확인
- ④ 입점 업체 계약 시 입점수수료의 적정성 검토 및 대금 회수기준 검토

라. 재고/물류

- ① 재고에 대한 입고, 출고에 대한 관리사항 검토
- ② 정기적인 재고 실사
- ③ 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분석
- ④ 물류의 조직체계(창고, 출고, 배송 등) 검토

3. 투자활동 관련 유의사항

- ① 신규 입점 및 폐점에 대한 타당성 검토(지리적, 인구통계적, 상품구 매력 등 고려)와 신규 입점 시 매장의 직접매입 혹은 임차 등의 방식에 대한 검토

- ② 매입 가격 혹은 입차 조건에 대한 검토
- ③ 입차 매장 선정에 대한 객관적 절차 및 검토 기준 마련 여부 검토
- ④ 부동산 관련 담당 직원의 부정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여부

4. 기타

- ① 유통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일반 제조업체 등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과 상이한 소매재고법(매입원가를 판매가격으로 나눈 원가율을 기말재고 판매가에 곱하여 기말재고 장부가액을 산정)을 사용
- ② 특정 매장의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부담 책임이 입점업체에게 있으므로 매출이 총액이 아닌 수수료 비율만큼 인식
- ③ 관측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및 포인트 등에 대하여는 공정 가액을 산출하여 상품권선수금 및 고객적립충당부채 등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포인트의 유효기간 등에 따른 소멸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여부를 확인
- ④ 백화점 매출의 경우 현금매출도 발생하므로 현금판매금액의 입금 여부를 확인

제5절 무역업

1. 개요

무역업은 수출입 업무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구분된다.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의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및 해외에서 구입하여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로 거래 형태가 구분되나 수출입 업무가 기본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해외 업무를 위하여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점에서 자금거래가 발생하므로 해외 지점의 자금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

2. 수출업무 유의사항

- ① 수출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 또는 매뉴얼 검토
- ② 수출업무 관련 계약서 검토
- ③ 수출업무 Flow-Chart 작성하여 내부통제 여부 및 절차의 타당성 확인
- ④ Selling Offer의 조건 검토
 - Offer의 각 조건들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 ⑤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 검토
- ⑥ 매매계약서와 L/C와의 대조 확인
- ⑦ Local L/C의 발행 타당성
 - 특정 하청업체에 편중되어 있는지의 여부 점검
 - 특정 제품에 국한되어 있는지의 여부 점검
 - 부정 개입여지에 대한 점검
- ⑧ 수출 물품 가격결정 과정을 조사하여 Buyer와의 이해관계자가 없는지 조사
- ⑨ L/C 조건변경이나 취소의 절차를 확인하고 전결권자 승인 여부 확인
- ⑩ 환위험에 대한 관리방안과 적절한 절차 설정 여부에 대한 검토
- ⑪ 보세장치장 관리실태 조사
- ⑫ 통관사 선정과정의 절차상 하자 여부와 통관 관련 비용의 정확한 산출 근거 등에 대한 확인
- ⑬ 운송계약서상의 운임의 산정기준의 적절함에 대한 확인(타 업체와의 비교)
- ⑭ 해상보험계약자의 선정과정에 대한 검토(타 업체와의 비교)
- ⑮ 수출 관련 클레임 현황 징구하여 책임소재 및 조치 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인

3. 수입업무 유의사항

- ① 신용장 개설 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으로 인한 자금수지 영향 검토
- ② 상품 수입결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 검토
- ③ 수입상품의 실제 판매 실적을 검토하여 과다 채고 여부 확인
- ④ 수입가격, 수입조건의 최적 기준에 대한 확인, 그 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
- ⑤ 수입계약 체결 시 불리한 조건 발생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
- ⑥ 수입절차의 하자로 인한 클레임 제기 여부 확인
- ⑦ 수입승인 사항의 변경에 대한 전결권자의 승인 여부 확인
- ⑧ 신용장 개설부터 수입 통관까지의 절차에 대한 확인
 - 신용장 개설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신용장 조건 변경이 전결권자의 승인 여부와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
 - 선적서류와 신용장 품목 List의 상호 상이 유무
 - 통관이 적시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 ⑨ 수입 부대비용이 적법한 계산절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 ⑩ 수입관세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 확인
- ⑪ 수입물품 하자 또는 매매계약 위반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시 적시에 클레임을 제기하였는가와 사후 조치 검토
- ⑫ 클레임 발생 시 손실명세서의 적정한 계산 방식과 전결권자 승인 여부
- ⑬ 수입물품 클레임 발생분 중 미결 사항에 대한 원인 규명

4. 해외지점 관리

- ① 해외 Buyer 거래 시 특정 업체 치중 여부
- ② 해외 Buyer 거래조건 및 가격조건의 적합성 조사

- ③ 해외 Buyer 중 내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여부 조사
- ④ 해외 지점 거래 계좌에 대한 조사
- ⑤ 해외에서 자금 조달 시 관련 거래조건 검토
- ⑥ 해외 근무자의 순환 근무 방식 도입 여부

제6절 방송서비스업

1. 개요

지역 방송사의 주요 매출은 가입자로부터 받는 가입료 및 월 사용료, 광고수익, 인터넷 수익으로 구분되고, 주로 가입자 수가 매출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회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무리한 조건 및 부실 가입자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방송사는 콘텐츠 공급자로부터 콘텐츠를 구입하므로 콘텐츠 구입 관련 절차를 관심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 외에 컨버트 등의 유형자산이 사용자에게 지급되어 있거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영업활동 관련 유의사항

- ① 가입자를 위한 상품별 계약조건 확인
- ② 가입자 유치 시점에서의 고객 신용도 확인절차 여부 확인
- ③ 가입료/월 사용료 책정 및 할인 정책에 대한 검토
- ④ 사용료 미납 가입자에 대한 관리방안과 채권회수 방안 검토
- ⑤ 가공 가입자 존재 여부 파악

3. 콘텐츠/망 사용료 관련 유의사항

- ① 콘텐츠 구매 및 망사용 예산과 실적을 비교하여 비정상적인 항목 검토

- ② 콘텐츠 구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검토 여부 파악
- ③ 콘텐츠 구매 계약/망 사용료 계약 조건 등에 대한 검토 여부 및 절차 준수 파악
- ④ 대금 지급절차에 대한 확인

4. 유형자산 관리

- ① 컨버트 등 구매 관련 절차의 적정성 및 구매업체 선정 관련 객관적 절차 확인
- ② 컨버트 재고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회사 보유분 및 가입자 보유분)
- ③ 컨버트 등의 고장 발생 시 처리 방안 및 수리비 지출에 대한 방침 여부 검토

5. 고객관리

- ① A/S 정책에 대한 검토
- ② A/S 접수의 시스템적 관리 여부 검토
- ③ A/S 관련 비용에 대한 지출 적정성 검토
- ④ 각종 A/S 접수 건에 대한 사후 처리결과 확인

제7절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1. 개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은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IT 서비스 시장에서 솔루션 공급사업, 컨설팅/시스템 통합(SI),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수요처(고객)의 사업발주에 대응하는 고객맞춤 수주형 사업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제품 또한 고객별(프로젝트별)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T 서비스시장은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그 외 금융

시장, 서비스시장(통신, 의료 등), 제조시장, SOC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수주는 공공부문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외 금융부문, 서비스부문, 제조부문 등도 입찰 수주가 대부분이며, 그 외 기간 단위의 서비스 공급계약 등을 통해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제공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품에 직접 대응되는 원재료 등이 없고,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업무 프로세스(Process)별 유의사항

가. 수주 및 매출 관련 유의사항

① 일반사항

- 수주는 대규모 프로젝트별로 입찰 및 기간 단위의 서비스 공급 계약을 통해 이루어짐
- 용역제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프로젝트 관리가 중요함

② 프로젝트 관리

- 입찰 시 입찰공고내역, 입찰조건, 제안서, 실행예산서 등 검토
-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대금지급조건, 보증서 발급 조건 등 검토
- 용역수행 시 용역 진척도 관리(용역착수 시점부터 검수확인 시 까지), 계약조건 또는 용역진척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회수 검토

③ 기타 사항

-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프로젝트 계약 시 선급금 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 보증서를 받

급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 회생회사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이에 회생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 계약자를 타 법인으로 하여 계약을 진행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나. 원가(비용) 관련 유의사항

- ① 일반사항: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사업의 특성상 타 제조업과 같이 생산설비나 시설을 통해 단순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인력을 투입하여 최종산출물이 납품되므로, 인건비가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로열티 등의 사용료, 기타 전문가에 대한 용역수수료 등의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함
- ② 로열티 등의 사용료, 기타 전문가에 대한 용역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검토
 -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해외의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및 공급업체로부터 국내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유통시킬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관련 계약서, 해외송금자료, 원천징수세 신고내역 등을 대사하여 로열티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특허권 사용대가, 특정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 지적재산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연구비용 등의 사용료 소득, 기타 전문가에 대한 용역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검토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
- ③ 발주처 직원 등에 대한 과도한 접대비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비지출 내역에 대한 검토 필요
 -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산업이고, 발주처가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발주처 직원에 대한 접대비가 과다

하게 계상될 유인이 큼

- 특히, 발주처 직원에 대한 해외 교육비 지원 명목 등으로 해외 관광여행목적 등의 접대비 지급사례가 많으므로, 경비지출내역에 대한 검토 필요

3. 기타

연구개발비용 관련: 업종특성상 회사 내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개발 인력을 다수 보유하면서, 타 업종에 비해 연구개발비용을 많이 지출함

- 개발비 계상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계상요건 및 세법상 연구 개발비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 국고보조금 사용금액의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활동을 많이 수행하므로 개발 프로젝트별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금 사용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였는지 검토

제5장 관리인의 허가신청에 대한 확인

제1절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

1. 개요

법원은 통상 개시결정과 함께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다. 감사로서는 관리인이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허가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개별 회생회사별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원이 작성한 결정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2.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종류

가.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명한다. 보전처분 결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보전처분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전처분 결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전처분 결정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허용된 금액 이상의 채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전처분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모두 재판부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일정한 행위가 관리위원의 위임사항에 해당하는 개시결정 후 허가사항과 구별된다.

나. 개시결정 이후인 경우

(1) 허가를 요하는 행위에 관한 결정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제61조 제1항). 또한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61조 제2항).

실무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표 6>과 같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정하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들은 대체로 채무자의 중요 결정사항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지출이 수반되는 법률행위 등이다.

대규모 회사에 있어서는 허가를 요하는 행위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즈음하여 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위하여 허가 대상의 각 항목별로 한도 금액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한 후 허가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2) 재판부 허가사항, 관리위원 위임사항의 구별

법원은 위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 중에서 채무자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허가사무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18조). 실무상 위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를 주무 관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정하면서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결정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은데, 개시결정 당시 발령되는 허가사무의 위임결정문을 보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실무상 관리위원에게 위임되지 않은 허가사항에 관한 허가신청서도 주무 관리위원의 확인을 거치고 있다.

〈표 6〉 관리인의 법원·관리위원회에 대한 허가신청업무

구분	허가대상 행위의 표시	재판부 허가사항	관리위원회 위임사항
가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	
나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금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
다	금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		○
	제3자의 영업의 양수	○	
라	항목당 금 ()원 이상의 금원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원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지출은 제외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	
마	금 ()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
바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채	○	
사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 및 발행행위		○
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자	소송행위 다만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		○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	○	
차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	
카	권리의 포기	○	
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	
파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하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	
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너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 허가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인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허가사항의 2개 항목 이상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어느 항에 따른 허가사항인지를 특정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하나라도 허가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여부, 재판부 허가사항인지, 관리위원 위임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부 또는 관리위원에게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허가신청의 방법**가. 사전 허가신청의 원칙**

재판부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 및 허가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의할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행위의 경우 가급적 그 기한의 1주일 전에, 늦어도 3일 전에는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질상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보고를 함이 바람직하다. 이는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에서 주로 문제 되는데, 항소제기 기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과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그 기한으로부터 가급적 1주일 전에, 늦어도 3일 전에는 허가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특히 희생채권 조기변제(제132조)나 신규자금 차입(제179조 제1항 제5호)과 같이 허가 이전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이 허가대상 행위에 관하여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자제출 허가신청의 원칙

(1) 개요

2014. 4. 28. 회생파산 전자소송이 시행되면서 허가는 관리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허가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한 다음 허가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리인이 대면 또는 전화에 의하여 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항상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허가결재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허가받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2) 구체적 방식

허가신청의 방식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허가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취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류를 시정한 허가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한다.

만약 당초 허가받은 사항과 달리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관리인은 월간보고서에 기재된 ‘허가사항 지출내역’에서 주(註)를 달아 그 원인을 상세히 기재하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그 차액을 향후 지출할 예정이라면 이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감사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4.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가.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법원의 허가대상 행위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행한 행위는 무효로 된다(제61조 제3항 본문).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나. 관리인의 책임

만약 위와 같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였을 경

우에는 관리인의 해임사유가 될 수 있고(제83조 제2항 제2호), 관리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제648조 제1항).

5. 허가사항의 항목별 설명

가. 부동산·자동차 등 등기·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1) 설명

재판부 허가사항이다.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용익물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임대를 하는 등의 모든 처분행위를 말한다.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아닌 재산’의 처분행위의 경우에는 시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허가사항에 해당함에 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의 처분행위는 그 시가에 상관없이 모두 허가사항에 해당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실제 발생했던 허가 위반 사례로, 관리인이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시도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계좌로 받았다가, 계좌 개설은행의 지급거절로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법원의 허가사항 위반으로서 관리인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실무상 회생계획에서 자산을 매각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매각예정자산이 반드시 회생계획에서 예정된 시기나 가격으로 매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의 자금수지계획, 향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규모가 큰 부동산의 매각은 거래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공매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규모가 작은 부동산이나 개인 주택은 수

의계약도 가능하다. 회생절차 개시 직후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정매매가격의 파악을 위해 재감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공매 또는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고, 실제 매각 추진 후 계약 단계에서도 매수인의 선정, 매각가격, 대금수령 및 채권변제에 대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에 주의한다. 공매절차에서 유찰된 경우에도 재공매를 통해 매각을 할 계획이라면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 주식과 같이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 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미리 허가받은 매도금액에 구애되어 매각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업무용 자산 중 아파트 5세대 공개 매각
- 아파트 공개 매각 실시 결과보고 및 재공개 매각
- 부동산 일반 매각 및 회생담보권 변제(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자 있는 경우)
- 노후 렌터카 매각
- 차량 폐차
- 아파트 임차보증금 회수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고 회생계획인가 이후 토지잔대금(정산금)을 납부한 다음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회사 앞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주는 경우
- 해저통신국 유희 공간 임대차계약 체결(임대)
- 회사 소유 상가의 임대

나.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일정가액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

(1) 설명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 만 원¹¹⁾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이 일정한 시가 이상이면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그 시가와 상관없이 허가가 불필요하다. 다만 허가가 불필요하였던 처분행위에 관하여도 매월(월간보고서)마다 그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통상적인 가격으로 ()만 원 이상의 의류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반품 받은 의류를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거나, 의류 제조용 기계 설비를 처분하는 경우는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준 금액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실무상 채무자의 금원지출을 수반하는 행위 중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회생실무준칙 제6호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을 제정하여 실무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이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아래 <표 7>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7> 인가 후 지출수반행위의 법원허가 필요 기준액

연간 매출액(원)	기준액(원)
100억 이하	5,000,000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10,000,000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20,000,000
1,000억 초과 ~ 5,000억 이하	30,000,000
5,000억 초과	50,000,000

(2)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해진 공사현장 기자재, 컴퓨터 등의 매각
- 건설회사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현금 또는 예금의 담보 제공

다. 재산 양수 관련

(1) 금 ()만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단 제3자의 영업의 양수는 제외)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실무상 기준금액은 채무자의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자재 구매
- 분리막 구입
- 장비 구매
- 채권의 양수

(2) 제3자의 영업의 양수

재판부 허가사항이다. 영업양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임을 고려한 것이다.

라. 금원지출 관련

(1) 항목당 ()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지출(회생채권·회생담보권 변제 제외)

(가) 설명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를 제외하고는, 항목당 기준금액 이상의 금원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 위임사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금액을 정하는 방법은 제3항 재산양수 관련의 설명과 같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액수를 묻지 않고 재판부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회생채권·회생담

보권을 변제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금지출에 관한 허가사항의 대부분을 관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으면서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만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 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세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지출은 허가가 불필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리인은 매월(월간보고서)마다 그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의사항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항목당 기준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를 분할하여 항목당 지출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것처럼 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금원 지출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하여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금원지출 허가신청서에는 세금계산서(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또는 대금청구서로 대체)를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 원자재 구매 및 대금 지급
- 리스료 납부
- 개발 금형비 대금 지급
- 통신회선 사용료 지급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

(가) 설명

회생계획의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그 액수를 묻지 않고 모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유의사항

실무상 관리인들이 채권자들의 독촉에 못 이겨 회생계획 인가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생채권을 변제하거나 공익채권 변제허가만을 받은 후 회생채권을 공익채권과 함께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이를 변제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미리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제132조).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전 변제는 금액을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그 허가를 할 때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변제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인들이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이미 회생계획에 그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바, 주의를 요한다.

변제자금이 부족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의를 요한다. 회생계획에는 변제자금이 부족할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체로는 회생담보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재원으로 회생채권을 안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 따라

12) 회생계획에는 변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회생담보권을 우선 변제한 후 남은 자금으로 회생채권을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전체에 대하여 안분하여 변제한 사례가 실제 발생한 적이 있었다.

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의 내역,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의 연체이자의 적용 여부, 미변제 사유 및 향후의 대책 등을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정액 이하의 소액 상거래 채권을 모두 변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과 같이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않고서는 건설회사인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재해보상금과 같이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상거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들을 공급하는 해외업체라서 회생채권의 미변제를 이유로 거래가 중단되면 단기간 안에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 조세 회생채권 인가 전 조기 변제
- 소액 회생채권 인가 전 조기 변제
- 전대차계약 재계약 및 회생채권 변제
- 회생채권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변제

마. ()만 원을 초과하는 중여·매매·임대차 등 계약의 체결·의무 부담행위

(1) 설명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기준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는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임차를 가리키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위 가.항에 정해진 재판부 허가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상 채무자의 영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예컨

대, 해운회사의 선박임차 또는 용선계약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재판부, 관리위원과 협의를 거쳐 재판부 허가사항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2)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본사 사무실 임차계약 체결(임차)
- 창고 임차계약 체결(임차)
- 선불시스템 서버장비 관련 유지보수 업무 위임계약 체결(위임)
- IDC 보안 서비스 업무 위임계약 체결(위임)
- 서울-부산 간 인터넷 백본망 용량증설을 위한 장비구매계약 체결(매매)
- 수도권 기지국 회선 21개소 구축공사계약 체결(도급)
- 퇴직자 충원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고용)
- 정비고 신축공사계약 체결(도급)
- 차량 위수탁계약 체결
-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바.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제

(1) 설명

재판부 허가사항이다. 채무자의 기존 재산으로는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운영자금 등을 차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자금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유의사항

신규자금을 차입하거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제는 재판부 허가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아 자금을 빌려야 한다.

실무상 허가 없이 관리인, 대표이사 개인이나 그 밖의 채무자 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허가 없이 차재를 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인 제3자 등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그것이 차재에 해당하는지, 매매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어음할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 관리위원에게 문의하여 허가대상 행위인지를 구별하도록 한다.

(3)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른 회사에서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는 행위
- 친척 또는 친구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행위

사.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발행행위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어음·수표계좌를 설정하고, 어음·수표 용지를 수령하는 행위, 어음·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라는 특성상 실무상 어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

(1) 설명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2)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생절차 개시 전에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회생절차 개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건이 불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자. 소송행위

(1) 설명

실무상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법원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미수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하되, 다만 매 3개월(분기보고서)마다 그 가압류·가처분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압류·가처분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허가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은 재판부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 제기
- 사용료 청구의 소 제기
- 렌터카 사용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
- 소송 상대방과 화해
- 임의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3) 유의사항

관리인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감사는 항상 회생회사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인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소의 제기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각종 소를 제기하는 것과 그 소송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모

두 사전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소송대리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성공보수약정을 포함하는데, 그 성공보수금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과 구두로 협의를 한 후, 법원에 미리 성공보수금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대리인의 선임 허가신청-성공보수금 과다를 이유로 한 불·허가-성공보수금 약정을 수정한 소송대리인 선임 재허가신청’이라는 불필요한 절차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 조정에 대한 권고를 받은 경우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로부터 조정에 대한 권고를 받은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의 판단에 비추어 그 조정 내용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조정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관리인은 조정을 권유한 담당 재판부에 대하여 다음 기일까지 그 조정 내용에 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오겠다고 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 그에 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수용 여부를 정하겠다고 진술하여야 한다.

(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은 재판부 허가사항입에 주의하여야 한다.

먼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그 결정 내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의기간 안에 이의포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의기간을 경과시켜 버린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 이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이의를 하여야 한다.

결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으면 이에 대해 이

의를 하든, 이의를 하지 않든 그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해진 이의기간이 2주인 경우 적어도 이의기간 만료 1주 전에는 재판부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실무상 이의기간 경과 직전에 서야 비로소 허가신청을 함으로써 재판부에게 판단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신속하게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라) 상소제기

관리인이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소를 제기하거나, 혹은 재판부의 허가 없이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상소의 제기 여부 결정 역시 재판부 허가사항이므로, 상소제기기간의 말일로부터 최소한 1주일 전에 재판부에 항소제기 여부의 결정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차. 인사 및 보수결정

(1) 과장급 이상(임원 제외)의 인사 및 보수결정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직원 승진 인사
- 승진, 호봉승급
-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2)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가) 설명

재판부 허가사항이다.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에는 비등기임원의 경우도 포함한다. 임원의 인사 중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은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 후에 하는 사항이다.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제203조 제5항). 따라서 채무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사와 대표이사의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무상 회생계획에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무렵 법원과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재신임 여부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관리인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선임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수의 변동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실무상 관리인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감사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확인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미리 관련 업무를 진행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나)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임원 해임 및 선임 인사
- 기술본부장 보직 인사
- 영업본부장 사임으로 인하여 상무이사인 영업본부장 신규 선임
- 임원 퇴직금 지급

카. 권리의 포기

(1) 유의사항

채관부 허가사항이다. 채무자의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관리인이 소송 절차 외에서도 합의를 통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경우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체된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되 기한을 나누어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연체된 채권을 일시에 변제받기로 하되 당초 원리금 중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기로 하는 경우 등은 모두 권리의 포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미리 채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송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 임의조정, 강제조정 등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 채무자 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강제조정한 경우
- 피고가 명의대여자 책임을 강하게 다투고 있어 이의신청 시 100% 승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강제조정을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상고하여도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상고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처로부터 8억 원을 받지 못하여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였으며, 이에 매출처는 균등분할상환계획과 함께 이미 발생한 이자의 면제를 요청함에 따라, 매출처의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채권 원금 8억 원을 분할하여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자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경우

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재판부 허가사항이다.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에 담보물의 범위 및 가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가 추후 채권자의 담보권에 관한 증빙서류 추가 확인 및 추가감정 등을 통해 담보물 가치를 확정된 후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에 채권 증빙서류 부족 등을 이유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가 채권 증빙서류를 추가로 확인하여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파.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재판부의 허가사항이다.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리스 조건 변경 재계약

하.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재판부의 허가사항이다.

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재판부의 허가사항이다. 희망퇴직의 경우를 포함한다.

너. 감자·신주발행·합병 등

재판부 허가사항이다.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조직변경이나 계속,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행위이다(제55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지사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도 시행할 수 없는바, 이를 허가사항으로 규정 한 취지는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 감소
-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및 자본금 변경
- 회생계획 인가 후 전환사채 주식청구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 회생계획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2)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자의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주로 회생계획이 인가된 직후에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지며, 구조조정이나 사업부문의 변동 등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경우

도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한 필요도 없이 퇴직하였거나 퇴직할 임원이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남아 채무자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지 주의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3)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개요

신규투자, 관청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이나 벌금의 납부 등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허가사무는 관리위원에게 위임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허가사항들이 관리위원 허가사항으로 신청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임금교섭행위

관리인의 임금교섭행위는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임금의 지급수준은 채무자의 수익성과 자금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종전 실무례를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종업원들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합의한 뒤 법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회생 실무준칙 제10호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에서는 관리인이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근로자 측과 합의를 할 때에도 합의예정안을 법원에 사전 보고하고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계획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에는 인건비의 지급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에서 예

정한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한, 원칙적으로 임금의 인상은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인건비의 지급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에 유의한다.

통상적으로 임금인상을 허가신청할 경우에는 ① 최근 3년간 회생계획상의 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이익 달성 정도, ② 최근 5년간 직급별 임금인상률, ③ 과거 상여금 지급률(단체협약 내용 및 실제지급률), ④ 인상 전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생채권자 등 목록 변경·정정
- 회사 본점 이전
- 단체협약 변경서 체결
- 취업규칙 개정
- 임금 협약 체결 연봉제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위한 외부감사계약 체결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
- 일본 합작 법인 설립

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재판부 허가사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규모 회사에 있어서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즈음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자금 지출이 수반되면서 단순 반복되는 허가대상 행위를 특정하고, 각 허가대상 행위별로 한도 금액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한 후 허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1)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대상 행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임직원 급여, 연차수당 및 퇴직정산금 대금 지급
- 하도급·용역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 원자재구입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기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급
- 공사수급계약(신규, 변경) 체결 및 보증서 등 제공 행위
- 아파트 분양 및 분양권 전매계약 동의
- 발주처 사업비 인출 동의

(2) 제외 대상 행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는 재판부 허가사항으로 포괄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유의사항

포괄허가대상 행위는 CRO 또는 감사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하고, CRO 또는 감사의 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또한 포괄허가에 의하여 지출한 자금내역 및 체결한 계약서는 다음 달 월간보고서에 포괄허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이행내역을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접대비 관련 허가신청 및 보고

가. 접대비 예산 편성 허가신청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초마다 전년도 접대비 예산 집행실적을 보고하고 신년의 접대비 예산을 편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대비 예산 편성지침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접대비 예산편성 지침

-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 원칙적으로 사용인별(임원별·부서별), 비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 예외적으로 위와 같이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나. 접대비 관리 및 사용방법

관리인은 접대비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임원이 사용한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기부금 등)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접대비 사용방법은 법인카드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을 취할 경우 적절한 사전 내지 사후 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1만 원 이하의 금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다.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

접대비 사용실적은 채무자의 감사(감사가 없는 회생회사는 관리인)가 확인하고, 관리인은 법원에 그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접대비 사용 실적 보고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9〉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방법

- 매분기 보고서 제출 시 임원별·부서별 사용실적은 따로 항을 만들어 보고한다.
- 접대비와 구별되는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기부금 등은 따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제2절 감사의 확인사항

1. 기본 원칙

가. 허가대상 행위 여부 확인

관리인의 행위 중 법원 허가대상임에도 허가 없이 수행하는 것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한다. 특히 관리인이 과실로 법원 허가 없이 행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사는 법원 허가대상 행위의 종류를 숙지하고 있다가 관리인이 행하는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다.

또 상소제기 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등 시기적 제한이 있는 관리인의 행위는 그 시기에 임박해서야 비로소 허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 허가신청을 하도록 조언한다.

나. 허가신청 내용의 적정성 확인

관리인이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감사는 미리 해당 허가신청서를 확인하여 그 허가신청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 내용이 적정하지 않으면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적하거나, 혹은 주심판사에게 미리 문제점을 보고하여 재판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 허가 후 조치사항 확인

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행위를 그 허가 내용대로 실행하였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자금 지출에 관한 허가에 있어서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도록 한다.

2.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에 대한 확인사항

아래는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 사항이다. 감사는 관리인이 작성한 허가신청서가 아래의 작성요령에 맞추어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가. 급여지급 허가신청

급여지급에 대한 허가사항은 보전처분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재판부 허가사항, 개시결정 후에는 관리위원 위임사항에 속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임원(비등기 임원 포함)의 급여는 일단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이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형식적으로는 임원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지급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허가신청서에 ① 급여지급 대상기간과 지급예정일이 명시되었는지 여부, ②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인원수 및 금액(총급여액, 공제액, 실지급액)의 기재 및 전월과 금월의 비교를 통한 급여액의 차이 요인 설명 여부, ③ 급여지급 전후의 채무자의 자금보유액 등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직원 채용 허가신청

직원 채용에 대한 허가사항은 보전처분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재판부 허가사항, 개시결정 후에는 관리위원 위임사항에 속한다. 관리인이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의 신규채용은 최소화함이 타당하나, 회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니, 감사로서는 이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허가신청서에 신규채용 예정 직원의 성명, 근무예정부서, 직급, 담당업무, 연봉 등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력서와 급여수준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퇴사 직원 없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이나 조사보고서상의 인건비 한도 내인지를 소명하여야 한다.

다.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

원자재 구입 허가사항 역시 보전처분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재판부 허가사항, 개시결정 후에는 관리위원 위임사항에 속한다.

감사는 ① 비교견적에 의한 구매대상 업체 선정 여부, ② 수의계약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사유(독과점 품목, 발주처에서 대상 업체 지정, 구매조건 유리 등) 기재 여부, ③ 구입대상 자재비용의 발생 시기 또는 기간 명시 여부, ④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지급청구서, 각종 계약서 등) 첨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라.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제는 재판부 허가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아 자금을 빌려야 한다. 또한 차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를 거쳐 법원이 허가하여야 한다(제179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2호). 따라서 감사는 관리인이 그러한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도록 한다.

허가신청서에 ① 차입금액, 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안)과 이해관계인 의견조회를 위한 공익채권자 명부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마.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허가신청 사항

통상 회생계획에는 회생계획 인가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관 변경, 임원 퇴임 및 신규임원 선임,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회생계획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후 50일 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주식의 감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을 신속히 마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으면, 즉시 위 사항들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는 모두 재판부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바. 접대비 예산 편성 허가신청

①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한 한도 내에서 예산 편성 여부, ② 임원 또는 부서별, 비목별 예산 편성 여부, ③ 위와 같이 편성 않은 경우 법원

에 대해 그 사유를 소명했는지 여부, ④ 접대비와 구별되는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등은 구분하여 보고했는지 여부, ⑤ 접대비 사용은 법인카드(체크카드도 가능)를 원칙으로 하되, 1만 원 이하의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영수증 등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6장 관리인의 보고업무에 대한 확인

제1절 개요

1. 관리인의 보고업무 개관

관리인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93조). 실무상 법원과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회생계획 수행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경영실태와 회생계획 수행상황을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업무, 재산상황 및 그 동향에 대한 구두 설명이나 서면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또 실무상 관리인은 위와 같이 법원이 보고할 사항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도 스스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 예로는 회생채권의 소멸이나 변동에 관한 보고,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사임 보고(사임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의 결과 보고 등이 있다. 종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사항에 대한 결과나 회생계획 수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실무상 회생계획 수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관리인에게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할 보고서의 내용과 제출요령은 회생실무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에 상술되어 있다. 또 회생실무준칙 제9호 ‘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에서는 채무자의 자회사 현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감사의 역할

감사는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

서를 미리 열람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관리인이 작성하는 분기보고서에 대해서는 그 열람은 물론이고, 감사 역시 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 ① 보고서의 종류: 회생실무준칙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 ② 제출시기: 회생실무준칙에서 규정한 시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
- ③ 기재사항: 회생실무준칙에 따라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기재된 사항에 오류나 허위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제2절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1. 보고서의 종류

관리인이 법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로는 ① 월간보고서, ② 분기보고서, ③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의 3가지 종류가 있다. 분기보고서 중 2/4분기보고서는 제목을 ‘반기보고서’로 붙인다. 또 4/4분기보고서는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단 매 분기 말의 월간보고서(3, 6, 9, 12월의 월간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분기의 표시는 채무자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1, 2, 3월이 1/4분기가, 3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4, 5, 6월이 1/4분기가, 6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7, 8, 9월이 1/4분기가, 9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10, 11, 12월이 1/4분기가 된다.

2. 보고서를 제출할 자

월간·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 포함)는 보전처분 이후 단계의 채무자가 제출하고,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는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한하

여 제출한다. 다만 보전처분 이후 단계의 채무자가 개시결정을 받지 않은 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가 아니라 4/4분기보고서를 제출하되, 그 내용은 1/4분기, 3/4분기보고서의 작성요령에 따른다.

3. 보고서의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각종 보고서의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표 10〉 각종 보고서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구 분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제출횟수	매월 1회	분기별 1회 (4/4분기 제외)	매년 1회
제출기한	익월 20일까지	▷ 1/4, 3/4분기 -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4분기 -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생계획이 인가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 수행상태, 영업상황, 경영실태, 자금사정, 관리인의 업무수행 성실도 등을 종합하여 월간보고서를 격월간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1/4분기 및 3/4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4. 보고서의 제출방법

보고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해당 파일을 주심판사와 관리위원회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

5. 보고방법

보고의 방법은 각종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상 정기적인 보고의 경우 미리 주심판사와 관리인이 그 보고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곤 한다.

제3절 관리인 작성의 각종 보고서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각종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은 회생실무준칙 제8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관리인은 이를 반드시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는 관리인이 작성한 보고서가 위 준칙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 관리인 작성 각종 보고서 검토 시 유의사항

관리인이 각종 보고서별로 누락하거나, 흔히 잘못 작성하기 쉬운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감사는 관리인이 작성하는 각종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미리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1. 월간보고서의 경우

가. 입금실적과 자금수입의 구분

‘매출실적과 입금실적’에 있는 ‘입금실적’은 매출액 중 입금된 금액을 기재하고, ‘자금수지표’에 있는 ‘수입’은 영업외 수익 등을 포함한 전체 자금수입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똑같은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금수지표’에서는 수입내역을 매출채권 회수금액과 영업 외 수

익으로 인한 수입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매출실적과 입금실적’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자금수지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의한다. 실무상 관리인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일으키는 부분에 해당한다.

다.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은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및 ‘자금수지표’에 반영하지 않고(다만 자금수지표에 주석으로 별도 표기한다), 실제로 입금된 경우에 비로소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중 ‘입금실적’에, ‘자금수지표’ 중 ‘수입금액’에 반영한다.

라. 12월 월간보고서의 사업계획서 및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이행 상황표

12월 월간보고서에 ‘사업계획서’와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이행상황표’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즉, 회계연도 마지막 달의 월간보고서에는 신 회계연도의 월별 매출목표 및 자금수지계획과 분기별 손익목표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회생계획상 당해 연도 변제분에 대한 이행상황을 기재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이행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허가사항 이행 여부 기재

월간보고서에는 당월 허가사항내역 및 허가금액의 당월 지출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허가 시점과 지출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당해 월간보고서만으로는 당초 허가된 금액과 그에 기한 실제 지출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물론 그 지출금액이 언제 허가된 금액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인은 월간보고서에 기재된 ‘허가사항 지출내역’에서, ① 그

〈표〉 우측 말미에 ‘비고’란을 두어 그곳에 당해 지출금액에 관한 ‘허가일자, 문서번호, 허가내용, 허가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② 당초 허가된 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註)를 달아 그 원인을 상세히 기재하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그 차액을 향후 지출할 예정이라면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종전에 제출된 월간보고서와의 불일치

월간보고서 중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자금수지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이 차례로 모두 기재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 실무상 종전에 제출된 월간보고서와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자금수지표’의 기재사항이 다르게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제출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 회생계획과 실적의 비교

인가 후 회사의 경우 매출, 입금, 이월잔액 등 항목에서 자체 목표가 아닌 회생계획 대비 달성 정도를 표시하여,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분기보고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분기보고서의 경우

가. 손익계산서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손익계산서에도 ‘회생계획’ 및 ‘회생계획 대비 달성률’을 누락하는 경우가 잦은바,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판매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기재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회생계획 수행상황 등

실적과 회생계획상의 예정치 사이에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註)를 달아 그 사유를 기재하고, 대차대조표의 각 항목 중 전기에

비하여 큰 변동이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도 각기 주(註)를 달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다. 접대비 사용현황

분기보고서에는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되는 접대비 한도액), 실제 지출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월간보고서와 차이점

월간보고서와는 달리, 분기보고서에는 주요 부문(품목)별 매출실적표, 주요 부문(품목)별 생산실적표,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및 수출대금결제현황표(수출부문이 있는 경우), 수주실적표(건설, 조선 등 주문생산 부문이 있는 경우), 분기 대차대조표, 분기 손익계산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현황표, 공익채권현황표, 접대비 사용현황표, 사업현장명세표(건설업자의 경우)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마. 회계감사기관의 반기검토의견서

반기보고서에는 회계감사기관의 반기검토의견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연간보고서를 가결산 결과에 따라 작성하였다면 연간보고서에 가결산 수치임을 적절히 표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결산보고서와 함께 가결산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연간보고서의 수치와 달라진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의 경우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역시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연간보고서를 가결산 결과에 따라 작성하였다면 연간보고서에 가결산 수치임을 적절히 표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결산보고서와 함께 가결산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연간보고서의 수치와 달라진 부분을 명시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애초부터 가급적 회계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절차의 번잡을 덜 수 있음에 주의한다.

제5절 허위보고의 경우

실무상 관리인이 법원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 발생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었다.

- 법원의 허가 없이 이미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마치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새롭게 회생채권 변제허가신청을 제출한 경우
-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실제 사용 명목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변제한 후, 법원에는 변제허가내용에 따라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고한 경우

이러한 관리인의 허위보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제648조 제2항), 관리인의 해임사유에도 해당한다(제83조 제2항 제2호, 제4호).

감사로서는 관리인이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만약 관리인의 허위보고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업무 해태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관리인의 허위보고를 감사가 묵인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7장 감사의 법원에 대한 보고업무

제1절 개요

회생회사의 감사는 법원에 대하여 감사 업무수행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회생실무준칙 제4호 참조).

회생회사의 감사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보고는 그 시기의 특정 여부에 따라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나뉘고, 그 보고방법에 따라 대면보고와 서면보고로 나뉜다. 실무상 감사는 법원이 보고할 사항으로 미리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스스로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감사가 법원에 대하여 할 보고의 내용 등은 회생실무준칙 제4호 ‘감사의 선입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에 상술되어 있다.

제2절 정기보고

보고의 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① 부임 후 감사보고서, ② 분기별 감사의견서, ③ 감사실적보고서 등이 있다. 각각의 경우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부임 후 감사보고서

가. 보고요령

- 제출시기: 부임 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전자적 제출 후 해당 파일을 주심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
- 주요 기재사항: 회사 조직 및 인원 현황, 관리인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영업자금 관련 사항, 회사의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 등

나. 기재례

[별지 2를 참조하되,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회사실정에 맞는 내용과 형식의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한다.

2. 분기별 감사의견서

가. 개요

감사는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분기별 보고서에, 이와는 별도로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감사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회생실무준칙 제4호 제10항 (나)목].

- ① 채무자의 업무처리 과정에 상법 제413조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의 명기
- ② 회계 및 자금관계 보고내용의 적부
- ③ 당해 분기 감사실적의 개요
- ④ 자회사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특이사항

나.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1/4, 3/4분기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각 분기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4분기를 포함한 반기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반기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4/4분기를 포함한 당해 연도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제출방법: 관리인이 제출하는 분기, 반기 및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와 별도로 제출

다. 주요 기재사항

- (1) 채무자의 개요
 - 설립 연월일, 본점 및 공장 소재지

- 관리인의 성명 및 선임일자
- 회생절차 진행경과(신청일, 개시결정일, 인가일)
- 외부회계감사 관련 사항
- 임직원 현황(직급별, 전분기 대비 증감)

(2) 상법 제413조¹³⁾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생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명기한다.

‘법령 위반’이란 상법 위반뿐만 아니라 기타의 법령, 예컨대 행정법규의 위반도 포함한다. 또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란 형식적으로는 법령이나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위반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인의 업무처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3) 회계 및 자금관계 보고내용의 적부

(4) 당해 분기 감사실적의 개요

감사의견서에는 일상감사, 중점감사 등으로 나누어 시행개요 및 시행결과와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가) 일상감사

1) 개요

채무자 회사에서 작성된 각종 장부(전표, 자금수지일보, 현금출납장 등) 및 품의서, 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 대내외 모든 문서를 관리인 결재 전(또는 결재 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필요시 대면보고 요청, 자료징구, 현장 점검한다.

13) 상법 제413조(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시행결과 및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 현장조치
- 비효율, 불합리한 사항: 개선권고
- 부당·위법위규사항: 법원에 대한 수사보고 및 법원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시정조치, 징계 등 의법 조치)

(나) 중점감사(회생실무준칙 제4호 제9항 (나)목 참조)

1) 개요

회생실무준칙 제4호에서 요구하는 중점감사사항 및 법원 지시사항에 대하여 자료징구, 대면보고 요청,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감사를 말한다.

- 회생실무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점감사사항
 - 법원의 허가 없는 자금조성과 지출 여부
 - 회계계정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 부당한 수입 감소 또는 지출증가가 있는지 여부
 - 채무자 조직의 능률성
 - 채무자 내부에 파벌 또는 이익집단,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의 존부
 - 노동생산성 저하, 근로분위기의 해이, 기타 채무자 운영에 있어 부정적 요인의 존부
 - 자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이 조사를 요구한 사항

2) 시행결과

- 회계 및 자금관계
 - 법원의 허가 없는 자금조성과 지출 여부
 - 회계계정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 부당한 수입 감소 또는 지출증가가 있는지 여부
- 채무자 조직관리
 - 채무자 조직의 능률성

-채무자 내부에 파벌 또는 이익집단,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의 존부

-노동생산성의 저하, 근로분위기의 해이 기타 채무자 운영에 있어 부정적 요인의 존부

3) 조치사항

- 현장조치사항
- 개선권고사항
- 법원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5) 당해 분기(반기, 연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채무자 회사의 객관적인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뜻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B/S, P/L, Cash-flow 등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수익성(매출원가율·판관비율·영업이익률),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유동성(유동비율), 활동성(매출채권 회전율·재고자산회전율) 등 재무비율 분석
- 회생계획(조사보고서), 전분기 또는 산업평균과 비교 평가함

(6) 자회사에 관한 사항

자회사가 있는 경우, 상호 간 영업거래, 자금거래, 보증관계 등 자회사와의 관계 등을 점검한다.

(7) 기타 특이사항

-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 기재한다.

- 주요 현안

회생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또는 경영개선과제 등을 제언한다.

라. 작성 시 유의사항

감사의견서 작성 시 다음의 점들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감사 스스로의 감사결과 기재

월간보고서 등 관리인이 한 보고의 단순한 반복보다 회사의 현황 파악에 유용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이 스스로 회계감사나 현장감사를 한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관리인이 작성한 보고서상의 자금수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이를 자신의 감사의견서라고 제출하는 등 매우 부실하게 형식적으로만 제출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2) 회생계획 대비 비교분석

회생계획과 대비한 수행 정도를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즉, 회생회사가 회생계획상의 추정손익, 추정자금수지, 변제계획을 명실상부하게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특히 ‘회생계획’과 ‘실제 실적’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한다. 그 밖에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자금(재원)의 확보(자금수지 +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 보고한다.

(3) 일목요연한 보고

장황하면서 알맹이가 없는 보고서는 지양하고, 회사의 현황, 경영상태와 영업실적, 향후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요점이나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보고한다.

특히, 연 4회의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전기의 것을 단순히 반복할 필요는 없고, 변경사항이나 새로운 사항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인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 관련 시장 동향, 영업부진의 원인과 대책 등을 기재하는 것도 좋다.

(4) 회사 현황과 향후 전략의 표시

회사의 영업현황(매출, 손익, 자금현황)에 대한 자체분석, 향후 영업전망, 만회대책 등을 기재한다.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동향과 해당 채무자의 영업현황(매출구조, 손익구조, 수출비중의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아가 채무자가 잔여 회생계획상의 손익, 자금수지, 변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예컨대, 매출증대, 손익개선, 매출 또는 손익 구조의 개편, 조직정비, 노사화합, 시설투자, 기타 회생계획 완수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각종 장단기 혁신계획(Innovation)과 이를 위한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마. 기재례

[별지 3, 4, 5]를 참조하되,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회사실정에 맞는 내용과 형식의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3. 감사실적보고서

가. 보고요령

- 제출시기: 임기 만료 1개월 전
- 제출방법: 전자적 제출 후 해당 파일을 주심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
- 주요 기재사항: 회생회사 재직 시 이루어 놓은 성과 및 실적, 개선조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재판부에 보고한 대면보고 및 수시보고 횟수, 감사적발 건수 및 개선사항 건수 등을 상세히 기재

나. 기재례

[별지 6]을 참조하되,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회사실정에 맞는 내용과 형식의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수시보고

1. 개요

보고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① 법원 지시사항에 대한 조사보고(하명사항 조사보고) ② 회생실무준칙에서 정하는 특이사항이나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다.

2. 수시보고 사유

가. 법원 지시사항

법원(주심판사, 관리위원)이 구두나 공문으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명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나. 회생실무준칙상 특이사항

아래의 상황들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하여 보고한다.

- 이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이 관련된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
- 채무자 내부의 특이한 사정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
- 채무자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아니한 사항
- 급속을 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통상적인 체계를 거쳐서 보고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수시보고는 법원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사항이나 회생실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지 않고, 감사가 회생계획에 정한 사업의 운영과 채무변제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조직 내부나 영업활동에 개선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자금의 유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통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수시 점검하면서 특

이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주심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이에 해당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임직원 비리
- 노사갈등
- M&A의 추진 필요성, 인수희망자의 동향
- 회생계획 수행에 장애가 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태 발생

라. 기재례

[별지 7, 8을 참조하되,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수시감사결과에 맞는 내용과 형식의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제4절 보고방법

1. 원칙

감사의 범위에 대한 보고방법에는 대면보고와 서면보고가 있다. 원칙적으로 3개월에 최소 1회씩 정기적으로 대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대면보고라고 하더라도 통상 보고서는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보고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보고횟수 및 방식은 감사 선임 시 주심판사와 협의하여 정하면 된다.

2. 정기보고

정기보고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심판사와 협의하여 전화나 이메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3. 수시보고

수시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이 발견된 경우, 일단 유선으로 주심판사에게 관련 사항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일정을 정하여 대면보고를 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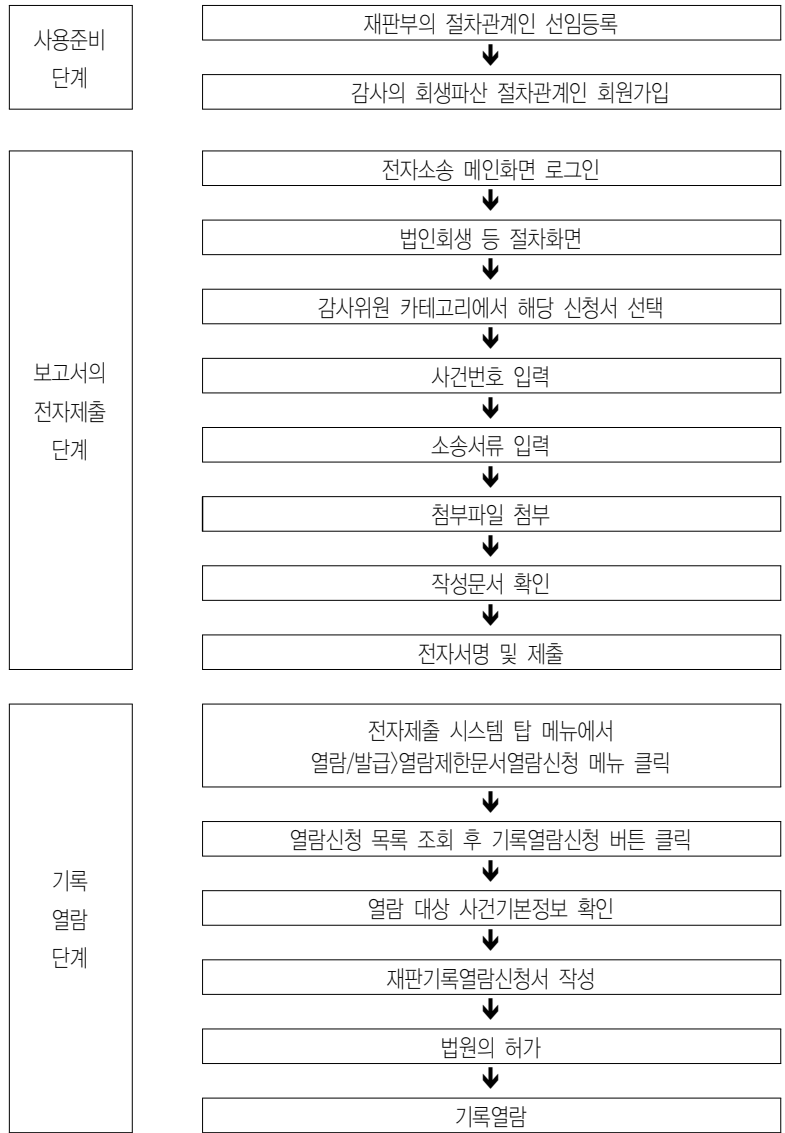
록 한다.

제5절 전자소송 시스템의 이용방법

2014. 4. 28. 회생파산 전자소송이 시행되면서, 위 시행일 이후 접수 되는 사건의 감사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절차관계인으로 가입·등록한 후 보고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 전자기록 전체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전자소송 시스템의 이용방법을 숙지해두어야 한다.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절차는 <그림 2>와 같고,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의 “처음 오셨나요” → 메뉴얼/동영상 → 회생·파산 전자소송을 참조하면 된다.

〈그림 2〉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절차



제8장 그 밖의 수행사항

제1절 관리인과의 면담

1.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구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고 관리인의 범원 대면보고 시 허위로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월 1회 정도가 적절하며 이를 토대로 감사의견서를 작성한다.

2.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협조요청

① 관리인의 업무용이 아닌 사적 법인카드 사용의 금지, ②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가지급금 등 불법적인 자금 인출 금지, ③ 관리인 포함 임직원에 대한 증빙 없는 법인경비 지급 금지 등을 요청한다.

3. 경영상의 주요 현안 사전 협의

관리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알려주고, 매출증대만큼 중요한 것이 비용절감추진인 만큼 사용하지 않고 보험료와 자동차세 비용만 발생하는 자동차의 매각, 사용하지 않고 적재상태로 있는 자재나 컨테이너 매각 등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다.

4. 경영컨설턴트의 역할 유지

관리인이 업무적으로 지원 요청 시 방향 제시 정도만 제공해 주는 선에 그쳐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화를 걸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등 직접적으로 나서면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제2절 공장 및 관공서 등 방문

공사현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자재나 매달 수수료를 내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채 캐비닛에 넣어둔 무전기 등을 발견하여 매각 또는 해지조치를 해야 할 대상을 알게 된다. 그리고 고정비(숙소 및 사무실 임차료, 식대, 소모품비, 고정 일용직 및 계약직 노동자 등)에 대해 예산 낭비성이 없는지 점검하고 더 나아가 채고, 입·출고, 외주관리 등을 점검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관할 관공서를 방문하여 주민의 민원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제9장 관리인 또는 회생회사의 부정·비리 및 회생절차상 의무 위반 사례

중소기업의 기존 경영자 관리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여전히 개인 기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의 관여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의 사례들은 회생회사의 관리인 또는 회생회사의 부정·비리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모은 것인데, 향후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관리팀 차장이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항목에서 실제 지출액 중 일 부만 월간보고서에 기재하고 약 7,000만 원을 횡령/개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현금출납장에 접대비로 기재 한 후 관리인의 결제 없이 회사가 보관 중이던 현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례
-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조정으로 소송절차를 종결하고 조정으로 수령한 돈을 유용한 사례
- 관리인이 정상적 거래관계인 것처럼 허위의 지출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여 법원 허가를 받은 후 허가서와 달리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가 검찰에 고발된 사례
- 하도급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전직 직원이 운영하는 회사를 내정 하고 입찰담합을 묵인하는 대신 대가를 수수한 사례 ⇒ 구매팀 직 원 등 이권에 결부된 부서의 비리 여지 차단 필요
- 관리인이 거래처에 대한 무통장입금 내역을 허위 기재하거나 진성 어음 대신 유통어음으로 결제하고 현금 또는 진성어음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
- 친분관계를 통해 계속 거래처를 유지할 욕심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특정 채권을 임의 변제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생채

권을 공익채권과 함께 변제하는 경우

- 관리인과의 친소관계를 따져 회생채권을 이중으로 시인하여 변제대상금액을 증가시킨 경우
- 전·현직 직원들이 별개 가공회사를 설립하여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회생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재판매하여 차익을 남긴 사례
- 입금액, 지출액을 누락한 경우, 지출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소액 거래로 분산, 위장하는 사례
- 법원의 허가 없이 영업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례
- 관리인 등 임직원들이 비자금의 조성, 사용한 사례
- 관계회사(자회사)를 통해 매출/입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익의 유출이 우려된 사례
- 납품비리 같은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병폐가 의심되는 사례
- 접대비 사용지침에 맞게 접대비를 사용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구비하지 않은 사례

제10장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1절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견제장치의 하나로 2011. 9.부터 인가 전 회생회사의 자금지출 감독을 통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생회사로 하여금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 이하 CRO라 한다)을 위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CRO는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법원의 면접 실시 후 위촉되고, 채무자의 자금수지를 감독하거나 구조조정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회생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 감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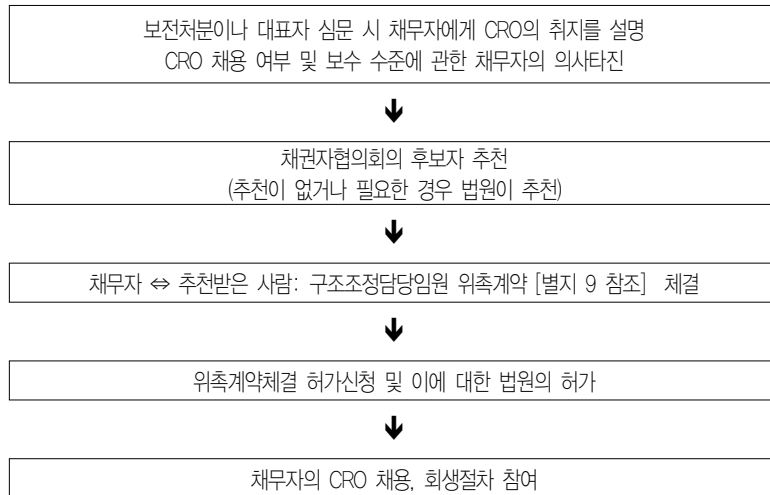
제2절 CRO의 지위와 역할

1. CRO의 선임

CRO는 통상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걸쳐 채용된다. CRO 후보자는 법정 관리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채권자협의회의로부터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추천이 없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이 관리인·감사 유경험자 중 적임자를 추천)을 받아 법원이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CRO 후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회사와 CRO 후보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CRO 지위에서 회생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CRO의 보수와 임기는 위촉계약에 따라 정해지는데, 보통 보수의 경우 회생회사의 규모와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고, 임기는 회생계획 인가 후 감사 선임일 전까지 또는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림 3〉 CRO 위촉 결과



2. CRO의 역할과 업무

가. CRO의 역할

CRO는 채무자가 처한 상황, 채권자협회의 요청 등에 의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실무상 CRO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당시부터 회생계획 인가 시까지(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① 회생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② 자금수지를 점검하여 이를 법원과 채권자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③ 채권자협회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CRO는 ④ 부인권 행사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⑤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나. CRO의 업무

(1) 자금수지 점검 보고

CRO는 회생회사의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자금수지상황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기재례는 [별지 11]을 참조하되,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회생회사의 실정에 맞는 내용과 형식의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2) 회생절차 수행과정에서의 자문 역할

-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언
- 조사위원보고서 검토 및 그에 따른 관리인 보고서 검토 및 자문
-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사전 검토 및 조언
- 월간보고서, 채무자 현황보고서, 관리인 보고서 등 작성요령 지도
- 주요 현안에 대한 법원 보고
- 채권자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3. CRO의 책임

CRO와 회생회사의 관계는 위임으로서 업무내용, 임기, 보수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위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보충적으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현행 위촉계약서는 CRO에게 [별지 10 구조조정담당임원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회생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담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CRO가 수임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CRO가 한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부 록 I

각종 양식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별지 1] 감사규정

감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회사의 감사업무 수행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책임경영과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
2.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3. 법원에서 감사에게 명령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4. 관리인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5.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감사시기에 의하여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 ① 정기감사는 감사가 수립한 연간 계획에 의거, 업무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특별감사는 법원이 감사를 명령하거나 관리인이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③ 일상감사는 회사의 제반 결재서류에 대한 공람을 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 또는 후에 따라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로 구분한다.

제4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와 실지감사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로부터 감사업무에 필요한 문서, 장부,

증빙서류 등을 징구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 부서 현지에 출장하여 집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조(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 서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물품 및 서류 등의 열람 및 봉인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6.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는 엄정하고 객관성 있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감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관리인의 직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사는 감사의 수행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감사를 위하여 제공된 문건은 열람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지원)

①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적·물적 시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요원으로 2명 이내의 직원

을 둘 수 있다.

제8조(감사인의 자격)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직원으로서 감사가 인정하는 자라야 한다.

제9조(감사인의 신분보장 및 독립성)

-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관리인이 감사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인은 감사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아닌 자를 감사요원으로 지정하여 특정 부분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감사요원은 감사인의 권한책임 등 감사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감사방법

제10조(업무감사와 회계감사)

- ① 업무감사는 회사의 제반 업무가 관계 법령, 제 규정 및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1. 회사규정, 예규 등의 제정, 개폐
 2. 노동생산성의 저하, 근로분위기 해이 기타 회사 운영에 부정적 요인의 존부
 3. 회사 내부에 파벌 또는 이익집단,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의 존부

4. 매입 및 매출업무의 투명성
5. 적정 재고자산평가의 적정성
6. 거래업체 선정, 계약의 정당성 및 관리
7. 미수채권 관리 철저 및 적정 충당금 산정
8. 자금집행의 적정성
9. 기타 관련 법령, 제 규정 위배사항의 유무
10. 관리인이 조사를 요구한 사항

② 회계감사는 회계에 관련한 부정행위 유무를 확인하고 회계전표나 회계장부 또는 기록이 회계원칙에 준거하여 작성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며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확인을 철저히 실시한다.

1. 법원의 허가 없는 자금의 조성 및 지출 여부
2. 회계계정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3. 부당한 수입 감소 또는 지출 증가가 있는지 여부

제11조(특별감사) 법원이 감사에게 명령하거나 관리인이 감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2조(일상감사)

-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감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〇〇〇원 이상의 지출사항
 2. 정관 규정 및 약관의 제정 및 개폐
 3. 종합경영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4. 부동산 및 일정금액 이상의 동산의 증감 및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설정
 5. 결산 및 잉여금 처분
 6. 신주 및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사항
 8. 회사기구 개편
 9. 중요한 차입금, 대여금 및 결손처분
 10. M&A에 관련된 사항

11. 신규사업 및 투자 관련된 사항
 12. 국내의 출자에 관한 사항
 13. 중요한 계약과 해약
 14. 법원 정기 보고서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15. 기타 법원이 명령하거나 관리인과 협의된 사항
- ② 위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 감사를 한다. 또한 관리인이 결재하는 서류를 모두 결재 후 지체 없이 공람한다.

제13조(구조조정에 대한 점검) 감사는 이 회사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1. 수익성 구조 개선사항 점검 및 관리인에 대한 건의
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개선 추진사항 점검
나. 신규 사업 추진 시 수익성 판단에 대한 점검
2. 각종 예산(경비예산, 실행예산 포함) 책정의 적정성 검토
3. 적정인원에 대한 검토
4. 자금수지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
5.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성 검토

제3장 감사실시

제14조(감사통보)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기간 전에 피감사인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 감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감사실시 세부계획)

-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부서 및 업무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 문건 등을 검토, 분석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제16조(감사시간) 감사는 피감사부서의 정상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

칙으로 하고 피감사부서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한다.

제17조(피감사인의 개선안 제출 등) 감사 도중 피감사인으로부터 회사정책과 업무개선에 관한 정당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사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결과와 처리

제18조(관리인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 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 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이에 관하여 감사는 징계 양형 및 변상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4.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

제19조(이의제기)

- ① 관리인은 감사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감사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거나 회사에 특별히 현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감사보고

제21조(법원에 대한 감사보고) 법원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항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회생실무준칙 제4호) 제9항, 제10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법원에 직접 보고한다.

제22조(수시보고) 감사는 제21조에서 규정한 보고 이외에도 법원이 회사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이를 법원에 보고한다.

제23조(긴급보고) 감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법령 또는 회사규정에 위반하여 중대한 손실 또는 문제를 발생케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24조(감사록의 작성)

-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결과를 기재하고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25조(보칙)

- ① 본 감사 규정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회생실무준칙 제4호)에 위배될 때에는 위 회생실무준칙이 우선한다.
-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회사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제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단, 본 규정이 다른 규정과 상충될 경우에는 본 규정이 우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원 허가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2] 부임 후 감사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 2014회합○○ 회생 주식회사 ○○
2015. ○. ○○. 회생계획 인가결정

부임 후 감사보고서

2015. ○. ○.

회생회사 주식회사 ○○
감 사 ○○○

부임 후 감사보고서

1. 채무자의 개요

- 가. 설립 연월일, 본점 및 공장소재지
- 나. 관리인 성명 및 선임일자
- 다. 회생절차 진행경과
- 라. 외부회계감사 관련 사항
- 마. 임직원 현황

2. 부임 후 감사사항

가. 회생계획 이행 상황

- (1)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회생계획 제○장)
 - 주주의 권리변경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에 대하여 2015. ○. ○○.자로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법원허가를 받는 대로 회사등기부에 등기할 예정임.
- (2) 정관의 변경(회생계획 제○장)
 - 정관변경에 대하여 2015. ○. ○○.자로 법원허가를 받았음.
 - 현재 법원에 허가신청 중인 임원 해임 및 선임에 대한 허가를 받는 대로 일괄하여 등기할 예정임.
- (3) 임원의 해임 및 선임(회생계획안 ○장)
 - 임원의 해임 및 선임에 대하여 2015. ○. ○○.자로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법원허가를 받는 대로 등기할 예정임.

나. 현금 및 시재검사

(1) 검사일시

(2) 검사결과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	비고
현금			000,000	
어음				
예금	○○은행	010000-00-000000	000,000,000	
	새마을금고	1000-00-000000-0	000,000,000	
	○○저축은행	0110000-00000000	0,000,000,000	
	보통예금 합계		0,000,000,000	
총계			0,000,000,000	

다. 인장관리 실태검사

(1) 감사일시

(2) 감사결과

라. 감사 여건 확인결과

(인적, 물적 시설 등)

3. 감사시스템 정비 관련

가. 정비 방안

(업무분장과 순환보직, 투명하고 합리적인 승인절차, 거래증빙서류와 장부의 문서화, 자산이나 서류 등에 대한 접근·사용 통제,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제도의 활용 등 채무자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 정비)

나. 감사규정 제정 여부

다. 감사 여건

4. 향후 감사업무 추진계획

[별지 3] 1/4분기 감사의견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 2014회합○○ 회생 주식회사 ○○
2015. ○. ○○.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5년 1/4분기 감사의견서

2015. ○. ○.

회생회사 주식회사 ○○
감 사 ○○○

1/4분기 감사의견서

1. 채무자의 개요

- 가. 설립 연월일, 본점 및 공장소재지
- 나. 관리인 성명 및 선임일자
- 다. 회생절차 진행경과
- 라. 외부회계감사 관련 사항
- 마. 임직원 현황

2. 채무자의 업무처리 과정에 상법 제413조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
- 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

3. 분기 감사실적의 개요

가. 일상감사 사항

- (1) 감사결과
- (2) 조치사항

나. 중점감사 사항

- (1) 법원의 허가 없는 자금의 조성 및 지출 여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항목 중 허가받지 아니하고 자금을 조성 및 지출하는지 여부 등)
 - (가) 감사결과
 - (나) 조치사항

- (2) 회계계정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각종 자산, 부채 및 비용이나 수익항목 등에 대하여 적절히 회계 처리 되는지 여부 등)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 (3) 부당한 수입 감소 또는 지출증가가 있는지 여부
(관리인이 매출, 비용 및 각종 계약서 등의 조작으로 부당히 수입을 감소시키거나 지출을 증가시키는지 여부, 관리인이 불필요한 비용, 허위 혹은 비용 과다 청구 여부 등)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 (4) 채무자 조직의 능률성 관련
(회생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적절성 및 직원채용과 배치 등이 적절한지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 (5) 채무자 내부에 파벌 또는 이익집단,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의 존부
(채무자의 내부에 불필요한 경영권분쟁이나 파벌 혹은 이익집단으로 인해 회생절차 수행이 방해를 받거나 관리인의 회생절차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등)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 (6) 노동생산성의 저하, 근로 분위기의 해이 기타 채무자 운영에 있어 부정적 요인의 존부
(채무자의 회생절차 유지와 관련하여 종업원 등의 사기저하요인,

근로자들의 업무태만 및 동기부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7) 법원 및 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명한 사항

(법원이나 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조사를 명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8) 관리인이 조사를 요구한 사항

(채무자의 관리인이 감사에게 특별히 조사를 요구한 경우 등)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다. 회계 및 자금관계 보고내용의 적부

(1) 보고내용 및 제출 여부

(가) 각종 보고내용의 적절성

(나) 누락 및 허위 존부

(2) 허가 내용과 비교한 실제 실행행위 분석

4. 분기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가.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

(단위: 천원)

구분	매 출 실 적			입 금 실 적		
	전년실적	회생계획	금년실적	전년실적	회생계획	금년실적
1월						
2월						
3월						
소계						

- (1) 매출실적 분석
- (2) 자금의 운용상태 분석
(자금의 과부족 여부와 미수채권의 관리 상태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등)

나. 손익현황

다.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

(단위: 천원)

구분	변제할 채권액	금년 변제계획	금년 변제가능액	비 고
회생 담보권				
회 생 채 권				
공 익 채 권				
계				

- (1) 회생계획의 이행실태 분석
- (2) 감사보고 시점의 매출실적과 자금상황상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
- (3) 회생계획의 이행을 위한 방안의 존재 여부

라. 관리인의 각종 행위의 적정성 평가

- (1) 법원 허가 및 실행 분석
(자금 및 회계관계를 제외한 각종 허가 받은 행위와 실제 실행내용과의 일치 여부 분석 등)
- (2) 각종 계약내용 및 실행의 적절성 분석
- (3) 기타

마. 주요현안

(채무자가 처한 사항 중 감사보고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항 등)

바. 각종 소송현황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소송사항 내역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

5. 자회사에 관한 사항

(자회사의 전체적인 영업상황, 관리 및 운영 상태와 자회사가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 등)

6. 기타 특이사항

가. ○○ 미수채권 특별감사

(1) 경위

부도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공사대금 대물변제분인 아파트 20세대 잔금(약 10억 원)이 회수되지 않아 전 경영진 등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및 미수채권 회수조치를 실행

(2) 감사결과

- 법원에 보고나 허가 없이 임의사용한 3.37억 원 회수조치
- 분양대행사 미입금분 5억 원 민·형사적 회수조치 추진 중
- 상가 2개 점포 민·형사적 회수조치 추진 중

나. ○○ 횡령사건 특별감사

(1) 경위

(2) 감사결과

7. 종합 의견

[채무자가 잔여 회생계획상의 손익, 자금수지, 변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예컨대, 매출증대, 손익개선, 매출 또는 손익구조의 개편, 조직정비, 노사화합, 시설투자, 기타 회생계획완수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각종 장단기 혁신계획(Innovation)과 이를 위한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4] 상반기 감사의견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 2014회합○○ 회생 주식회사 ○○
2015. ○. ○○.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5년 상반기 감사의견서

2015. ○. ○.

회생회사 주식회사 ○○
감 사 ○○○

상반기 감사의견서

1. 채무자의 개요

- 가. 설립 연월일, 본점 및 공장소재지
- 나. 관리인 성명 및 선임일자
- 다. 회생절차 진행경과
- 라. 외부회계감사 관련 사항
- 마. 임직원 현황

2. 채무자의 업무처리 과정에 상법 제413조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
- 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

3. 반기 감사실적의 개요

가. 일상감사 사항

- (1) 감사결과
- (2) 조치사항

나. 중점감사 사항

- (1) 법원의 허가 없는 자금의 조성 및 지출 여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항목 중 허가받지 아니하고 자금을 조성 및 지출하는지 여부 등)
 - (가) 감사결과
 - (나) 조치사항

- (2) 회계계정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각종 자산, 부채 및 비용이나 수익항목 등에 대하여 적절히 회계 처리 되는지 여부 등)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 (3) 부당한 수입 감소 또는 지출증가가 있는지 여부
(관리인이 매출, 비용 및 각종 계약서 등의 조작으로 부당히 수입을 감소시키거나 지출을 증가시키는지 여부, 관리인이 불필요한 비용, 허위 혹은 비용 과다 청구 여부 등)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 (4) 채무자 조직의 능률성 관련
(회생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적절성 및 직원채용과 배치 등이 적절한지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 (5) 채무자 내부에 파벌 또는 이익집단,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의 존부
(채무자의 내부에 불필요한 경영권분쟁이나 파벌 혹은 이익집단으로 인해 회생절차 수행이 방해받거나 관리인의 회생절차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등)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 (6) 노동생산성의 저하, 근로 분위기의 해이 기타 채무자 운영에 있어 부정적 요인의 존부
(채무자의 회생절차 유지와 관련하여 종업원 등의 사기저하요인, 근로자들의 업무태만 및 동기부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7) 법원 및 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명한 사항

(법원이나 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조사를 명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 (가) 감사결과
- (나) 조치사항

(8) 관리인이 조사를 요구한 사항

(채무자의 관리인이 감사에게 특별히 조사를 요구한 경우 등)

- (가) 감사결과
- (나) 조치사항

다. 회계 및 자금관계 보고내용의 적부

(1) 보고내용 및 제출 여부

- (가) 각종 보고내용의 적절성
- (나) 누락 및 허위 준부

(2) 허가 내용과 비교한 실제 실행행위 분석

4. 반기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가.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

(단위: 천원)

구분	매출 실적			입금 실적		
	전년실적	회생계획	금년실적	전년실적	회생계획	금년실적
1월						
2월						
3월						
소계						
4월						
5월						
6월						
소계						
합계						

- (1) 매출실적 분석
- (2) 자금의 운용상태 분석
(자금의 과부족 여부와 미수채권의 관리 상태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등)

나. 손익현황

다.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

(단위: 천원)

구분	변제할 채권액	금년 변제계획	금년 변제가능액	비 고
회생 담보권				
회 생 채 권				
공 익 채 권				
계				

- (1) 회생계획의 이행실태 분석
- (2) 감사보고 시점의 매출실적과 자금상황상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
- (3) 회생계획의 이행을 위한 방안의 존재 여부

라. 관리인의 각종 행위의 적정성 평가

- (1) 허가 및 실행 분석
(자금 및 회계관계를 제외한 각종 허가 받은 행위와 실제 실행내용과의 일치 여부 분석 등)
- (2) 각종 계약내용 및 실행의 적절성 분석
- (3) 기타

마. 주요현안

(채무자가 처한 사항 중 감사보고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항 등)

바. 각종 소송현황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소송사항 내역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

5. 자회사에 관한 사항

(자회사의 전체적인 영업상황, 관리 및 운영 상태와 자회사가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 등)

6. 기타 특이사항

7. 종합 의견

[채무자가 잔여 회생계획상의 손익, 자금수지, 변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예컨대, 매출증대, 손익개선, 매출 또는 손익구조의 개편, 조직정비, 노사화합, 시설투자, 기타 회생계획완수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각종 장단기 혁신계획(Innovation)과 이를 위한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5] 연간 감사의견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 2014회합○○ 회생 주식회사 ○○
2015. ○. ○○.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5년도 감사의견서

2016. ○. ○.

회생회사 주식회사 ○○
감 사 ○○○

연간 감사의견서

1. 채무자의 개요

- 가. 설립 연월일, 본점 및 공장소재지
- 나. 관리인 성명 및 선임일자
- 다. 회생절차 진행경과
- 라. 외부회계감사 관련 사항
- 마. 임직원 현황

2. 채무자의 업무처리 과정에 상법 제413조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
- 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

3. 연간 감사실적의 개요

가. 일상감사 사항

- (1) 감사결과
- (2) 조치사항

나. 중점감사 사항

- (1) 법원의 허가 없는 자금의 조성 및 지출 여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항목 중 허가받지 아니하고 자금을 조성 및 지출하는지 여부 등)
 - (가) 감사결과
 - (나) 조치사항

- (2) 회계계정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 (각종 자산, 부채 및 비용이나 수익항목 등에 대하여 적절히 회계 처리 되는지 여부 등)
 - (가) 감사결과
 - (나) 조치사항
- (3) 부당한 수입 감소 또는 지출증가가 있는지 여부
 - (관리인이 매출, 비용 및 각종 계약서 등의 조작으로 부당히 수입을 감소시키거나 지출을 증가시키는지 여부, 관리인이 불필요한 비용, 허위 혹은 비용 과다 청구 여부 등)
 - (가) 감사결과
 - (나) 조치사항
- (4) 채무자 조직의 능률성 관련
 - (회생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적절성 및 직원채용과 배치 등이 적절한지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가) 감사결과
 - (나) 조치사항
- (5) 채무자 내부에 파벌 또는 이익집단,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의 존부
 - (채무자의 내부에 불필요한 경영권분쟁이나 파벌 혹은 이익집단으로 인해 회생절차 수행이 방해받거나 관리인의 회생절차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등)
 - (가) 감사결과
 - (나) 조치사항
- (6) 노동생산성의 저하, 근로 분위기의 해이 기타 채무자 운영에 있어 부정적 요인의 존부
 - (채무자의 회생절차 유지와 관련하여 종업원 등의 사기저하요인, 근로자들의 업무태만 및 동기부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7) 법원 및 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명한 사항

(법원이나 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조사를 명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8) 관리인이 조사를 요구한 사항

(채무자의 관리인이 감사에게 특별히 조사를 요구한 경우 등)

(가) 감사결과

(나) 조치사항

다. 회계 및 자금관계 보고내용의 적부

(1) 보고내용 및 제출 여부

(가) 각종 보고내용의 적절성

(나) 누락 및 허위 존부

(2) 허가 내용과 비교한 실제 실행행위 분석

4. 연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가.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

(단위: 천원)

구분	매출 실적			입금 실적		
	전년실적	회생계획	금년실적	전년실적	회생계획	금년실적
1월						
2월						
3월						
소계						
4월						
5월						
6월						

소계						
반계						
7월						
8월						
9월						
소계						
10월						
11월						
12월						
소계						
반계						
연계						

(1) 매출실적 분석

(2) 자금의 운용상태 분석

(자금의 과부족 여부와 미수채권의 관리 상태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등)

나. 손익현황

다.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

(단위: 천원)

구분	변제할 채권액	금년 변제계획	금년 변제가능액	비 고
회생 담보권				
회 생 채 권				
공 익 채 권				
계				

(1) 회생계획의 이행실태 분석

(2) 감사보고 시점의 매출실적과 자금상황상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

(3) 회생계획의 이행을 위한 방안의 존재 여부

라. 관리인의 각종 행위의 적정성 평가

(1) 허가 및 실행 분석

(자금 및 회계관계를 제외한 각종 허가 받은 행위와 실제 실행내용과의 일치 여부 분석 등)

(2) 각종 계약내용 및 실행의 적절성 분석

(3) 기타

마. 주요현안

(채무자가 처한 사항 중 감사보고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항 등)

바. 각종 소송현황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소송사항 내역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

5. 자회사에 관한 사항

(자회사의 전체적인 영업상황, 관리 및 운영 상태와 자회사가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 등)

6. 기타 특이사항

7. 종합 의견

[채무자가 잔여 회생계획상의 손익, 자금수지, 변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예컨대, 매출증대, 손익개선, 매출 또는 손익구조의 개편, 조직정비, 노사화합, 시설투자, 기타 회생계획완수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각종 장단기 혁신계획(Innovation)과 이를 위한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6] 감사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 2014회합○○ 회생 주식회사 ○○
2015. ○. ○○. 회생계획 인가결정

감사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예시)

2016. ○. ○.

회생회사 주식회사 ○○
감 사 ○○○

감사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1. 감사 활동의 목적 및 방향

가. 사전 예방 감사

감사 활동은 사후 부정, 비리의 적발이 주목적이 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사전에 부정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고 비리가 발생할 풍토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나. 경영 정상화에 기여

주식회사 ○○는 이미 회사가 쓰러지는 아픔을 겪은 회사이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다. 조직의 안정

주식회사 ○○는 회생계획 인가 당시 극심한 조직 간의 내홍으로 조직이 거의 와해되는 위기를 맞았던 회사입니다. 따라서 조직 간의 알력을 무마하여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라. 회생채권의 변제와 비용의 절감

주식회사 ○○는 원가와 비용을 최소화하여 남은 재원으로 회생채권(담보권포함) 변제에 충당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하므로 잉여재산의 처분과 비용의 절감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경영의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2. 감사의 방법

가. 사전 예방 감사

사과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업무의 사전 공람을 제도

화하였습니다. 법원의 감사 업무지침에는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서류는 사전 또는 사후에 공람할 것을 정하고 있지만 주식회사 ○○는 회사의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 결재 사항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사항이라도 모든 서류와 자금의 수입·지출 사항을 사전에 감사의 공람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나. 실사 감사

모든 서류를 공람하고 자금의 수입·지출 사항을 실사함으로써 허위 보고와 문서의 위조 등에 의한 부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입·지출 결의서와 서류의 공람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서류를 기록, 확인토록 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하고 항상 모든 업무가 확인 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 회의 참석

회사의 운영 현황과 영업 상황을 항상 파악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매주 소집되는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보고를 듣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연간 약 50여 회의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3. 감사 실적

가. 정기 감사

매월 초에는 현금시재 및 예금과 어음의 실물을 확인하는 감사를 전년도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예금은 한 달간의 거래 내역을 거래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자금일보와 대조하여 현재의 예금 잔고를 확인하였습니다.

나. 수시 감사

- (1)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감사의 공람에 제공토록 하여 업무의 누락을 방지하고 착오를 없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때마다 조언함으로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〇〇〇건의 서류를 공람 결재하였습니다.

- (2) 모든 자금의 수입과 지출 시에 작성되는 수입·지출 결의서를 빠짐없이 공람토록 하여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〇〇〇〇건의 수입·지출 결의서를 공람 결재하였습니다.

다. 잉여 자산 등의 정리

회사의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처분하여 회생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운영자금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잉여 자산을 매각토록 하였습니다.

(1) 차량의 매각

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노후 차량 1대를 매각토록 하였으며 대신 관리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렌터카를 1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회사 소유 부동산 매각

회생담보권과 조세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사무실 및 창고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사무실을 매각하였습니다.

(3) 기타 자산의 매각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중 일부를 매각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의 회생담보권 중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 총 출자좌수: 300좌

- 매각 좌수 및 회생담보권 변제액: 100좌 × 301,369 = 30,136,900원

라. 일반 업무 감사

- (1) 2015년 기업은행 회생담보권 변제 시 착오로 적용하지 못한 조기 변제 할인율을 적용하여 21,182,699원(연 6%)을 회수하였습니다.
- (2) 2015. 3. 31 및 7. 31.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기에 정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믿고 납부하였으나 연말 회생계획 이행실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납부한 금액

의 상당 부분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으로 확인되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조기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변제할인율을 적용하여 정산할 것을 요구하여 약 7,000,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 (3) 관리인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전혀 생소한 ○○ 사업을 ○명을 새로 고용하여 생산 설비를 갖추겠다고 하여 이를 수치상으로 부당함을 주장하며 포기를 권고하여 관리인이 이를 그만두었습니다.
- (4) 매월 초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개인별로 집계하여 공표함으로써 개개인에게 경비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5) 매월 초 전월의 매출과 수금 실적을 집계 공표하여 회사의 현황을 전 직원이 알게 함으로써 회생회사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각성하는 계기로 삼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법원 보고

가. 대면 보고

2015년 중 회사의 문제점과 업무 추진 방향 및 대책을 10회에 걸쳐 주심판사께 직접 대면 보고 하였습니다.

나. 분기별 감사의견서 제출

매 분기마다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보고 하였습니다.

5. 향후 추진 계획

가. 서류의 철저한 사전 공람

부임 초기부터 시행해온 문서 공람 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모든 서류의 철저한 공람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수입·지출 결의서의 공람

자금 수지의 철저한 파악과 지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모든 자금의 수입과 지출 시 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공람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금 지출에 대하여는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되 경영활동이나 영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조언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의견을 개진하여 영업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조직의 안정화

근래 영업부장을 1명 채용하였고 퇴사했던 영업직원을 복직시킨 것을 계기로 조직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주 5일 근무제(현재는 격주 토요일 근무)를 정착시키고, 급여를 일부나마 현실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유하겠습니다.

라. 신속한 대면 보고 및 수시 보고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 수시로 대면 보고를 함으로써 문제의 조기 발견과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였으며, 재판부의 뜻이 회사에 제대로 전달되고 경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회생계획의 수행

2016년은 회생계획 제2차 연도로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영업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독려하고 회생계획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남은 부동산인 본사 사무실도 매각하고 보다 경제적이고 저렴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안의 권고를 검토하겠습니다.

바. M&A의 검토

회사가 부실화된 원인 중에는 기존 경영인의 경영상의 과오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인 바, DIP 관리인이 기존의 경영방식을 개혁하지 않고 그

대로 답습한다면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조기 종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M&A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별지 7] 수시보고서(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 2014회합○○ 회생 주식회사 ○○
2015. ○. ○○. 회생계획 인가결정

수시보고서(예시)
- 경영개선사항에 관한 보고 -

2015. ○. ○.

회생회사 주식회사 ○○
감 사 ○○○

경영개선사항에 관한 보고

1. 매출 및 수금 관리방법 개선 검토

가. 문제점

- 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수금실적 차이 발생
 - 2013년에는 매출액 대비 수금 23.6% 부족
 - 2014년 10월까지 매출액 대비 수금 31.9% 부족
- 그동안 일부는 판매수수료(영업대행수수료)로 처리하였으나 대부분 대손처리를 함

나. 개선방안

- 모든 거래상대방과 거래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 세무 신고토록 함
- 본건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있음

2. 서류 및 보고방법 일부 개선

가. 서류

- 자금일보: 현금·예금·어음 등이 혼재되어 관리하던 것을 현금·예금과 어음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 판매실적 관리: 도매, 영업사원 등의 매출을 구분 없이 관리하던 것을 매출 Route별로 관리
- 통장 사용인감: 관리인 인감으로 통일해서 관리

나. 보고방법

- 반품관리: 영업부서 자체에서 반품결정 관리하던 것을 관리인까지 보고하고 의사결정하도록 함(반품관리의 중요성 강조)

3. 손익관리 미흡

회생절차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관리인과 심도있게 논의하여 관리방법을 모색기로 함

4. 기타

가. 부인권 행사 검토(5건, 2.32억 원)

현재 관리인은 부인권 행사보다는 본인이 필요한 금액을 회사에 입금시키는 방안으로 검토 중임

나. 구조조정 사항

- (1) 60세 이상 직원(3명)에 대해서 회사의 취업규칙 정년 60세를 초과했으므로 별도 구분하여 고용계약을 작성기로 함
- (2) 세무사 관련 비용(자문료)으로 매월 150만 원 지출되고 있어 재검토하기로 함

[별지 8] 수시보고서(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 2014회합○○ 회생 주식회사 ○○
2015. ○. ○○. 회생계획 인가결정

수시보고서(예시)

- 업무감사 결과 -

2015. ○. ○.

회생회사 주식회사 ○○

감 사 ○○○

업무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가. 감사기간: 2015. ○. ○○. ~ 2015. ○. ○○.
- 나. 감사방법: 서류감사 및 대면감사
- 다. 감사자/수감자: ○○○ 감사 / ○○○ 부장, ○○○ 과장

2. 감사대상 업무내용

- 가. 공사명: ○○ 택지개발사업 ○○건설공사
- 나. 공사기간: 2014. ○. ○○. ~ 2014. ○. ○○.
- 다. 시공사: 주식회사 ○○
- 라. 공사규모: 총공사대금 ○○억 원

3. 감사의견

가.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대응 부적절

-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공동수급회사인 ○○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송 업무를 수행토록 위임하였더라도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
- 그러나 2015. ○. ○○. 담당재판부가 조정 결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조정 수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허가 및 이의신청 절차도 취하지 못하고, 2015. ○. ○○. ○○ 주식회사로부터 당사 분담금 조정결정 통지문을 받고 위 법원 조정결정 사실을 알게 되었음.
- 회사의 배상책임을 결정하는 소송 진행과 관련한 대응 및 관리가 적절치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

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나. 전결처리 기준 불비

- 전결처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공종별 전도금청구 및 지급동의 결재를 ‘담당이사’ 전결로, 하도급 공사 계약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심의 관련 소요 비용 요청 등을 ‘전무이사’ 전결로 처리하였음.
-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결처리 기준을 마련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다. 각종 문서 및 계약서 등 작성일자 누락

- 일반 통지문서 및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일자 내지 시행일자가 누락된 사례가 있었음.
- 후일 권리, 의무 발생 등의 규명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서 작성 및 시행 시 반드시 작성 및 시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할 것임.

[별지 9]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계약서(예시)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¹⁴⁾는 회생절차와 관련한 조언 및 협력, 자금수지상황의 점검,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금수지상황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이하 ‘을’이라 한다)를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의 내용)¹⁵⁾ ‘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갑’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조언(‘을’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내용을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회생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포함)
2. ‘갑’의 자금수지상황에 대한 점검
3.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갑’의 자금수지상황 보고(정기보고는 매주로 하고,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¹⁶⁾
4. 기타 ‘갑’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는 사항

제2조(보수)

제1조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월 ○○○원으로 한다.

14)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로 표기함.

15)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1조 제2호 및 제3호의 ‘갑’을 ‘채무자 주식회사 □□□□’로 표기함.

16) 보고 시기는 매주, 격주 등 회사의 현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월간보고서 제출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3주를 넘어서는 곤란함.

제3조(‘을’의 의무)

-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별첨 구조조정담당임원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기타 ‘갑’¹⁷⁾의 영업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갑’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갑’의 의무)

- ①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비품, 인력, 기타 지원을 하고, 필요경비를 부담한다.
- ②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장부, 매출전표, 기타 서류 등(재고상품 등 동산 포함)을 열람, 복사,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 후 ‘갑’이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 1.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날
 - 2.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후에 ‘갑’¹⁸⁾의 감사를 선임한 날

17)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본항의 ‘갑’을 ‘채무자 주식회사 □□□□’로 표기함.

18)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갑’을 ‘채무자 주식회사 □□□□’로 표기함.

제6조(계약의 해지)

-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을 보관한다.

계약서 별첨: 구조조정담당임원 윤리강령 1부. 끝.

2015년 월 일

갑¹⁹⁾: 주식회사 ○○○○

주소

대표이사 ○○○○

직인날인

을: 성명 ○○○○

주소

자필서명²⁰⁾

19)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당사자는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이므로, 위와 같이 표기하고 관리인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20) 별첨된 구조조정담당임원 윤리강령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고려하여 날인 대신 자필서명으로 함.

[별지 10]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윤리강령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윤리강령

1. 목적

본 윤리강령은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본 윤리강령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기본윤리

- 가.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목적에 따른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과 채무자의 회생에 기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나. 구조조정담당임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역할에 맞는 명예를 유지한다.
- 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공사(公私)의 구별을 엄격히 하여 채무자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라.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직무와 무관하게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4. 직무수행

- 가.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 나.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권한 내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한다.
- 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요청할 수 없고, 구조조정담당임원이 그와 같은 업무를 요청받은 경우 그 업무수행을 거부한다.

5. 사적 이익추구행위 금지

- 구조조정담당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가.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무수행상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형태를 불문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구조조정담당임원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받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
 - 다.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사이에 임대차,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개인적인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 라.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증권, 부동산 기타 자산의 매매 등 부당한 거래행위
 - 마. 기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사적 이익추구행위

6. 정보유출행위 금지

- 가.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나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나.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와 거래관계

에 있는 자의 영업비밀이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나 해당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별지 11] 자금수지상황보고서(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 2014회합○○ 회생 주식회사 ○○
2014. ○. ○○. 개시결정

자금수지상황보고서(예시)
(2015. ○. ○. ~ 2015. ○. ○.)

2015. ○. ○.

회생회사 주식회사 ○○
CRO ○○○

1. 영업 현황

가. 매출실적

(단위: 백만 원)

○월	○월	전월대비증감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 ○○○ ◦ ○○○부분: ○○○ ◦ 기타: ○○○

나. 신규수주실적

(단위: 백만 원)

계약일자	계약내역	계약금액	발주처
합계 ()건			

다. 수주잔고현황

(단위: 백만 원)

전월 말		변동 내역		금월 말	
프로젝트 수	금액	프로젝트 수	매출실적	프로젝트 수	금액

2. 자금수지상황

가. 현금

(단위: 천원)

기준일자	수입		지출		잔액
	금액	주요내역	금액	주요내역	
이월현금					
2015. ○. ○.					
소계					
2015. ○. ○.					
소계					
2015. ○. ○.					
소계					

나. 받을 어음

(단위: 천원)

이월어음		변동내역		보고일 잔액	만기일자			
					1개월 內		4개월 內	
금액	건수	증가	감소 (현금 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다. 현금 및 받을 어음 합계

라. 지출상세내역

3. 인력 현황

구분	정규직원					계
	임원	Senior	Junior	Assistant	무기계약직	
14. 12. 31 (B)						
15. ○. ○ (A)						
증 감 (A-B)						

4. 법원/관리위원 허가사항

가. 허가사항 총괄표

(단위: 천원)

구분	허가건수	금액	비고
재판부 허가사항			
관리위원 허가사항			
합 계			

나. 재판부 허가사항 명세

(단위: 천원)

허가일자	문서번호	제 목	허가금액
합 계	건		-

다. 관리위원 허가사항 명세

(단위: 천원)

허가일자	문서번호	제 목	허가금액
합 계	건		-

5. 기타 사항

〈첨부〉 통장잔액증명

부 록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회생실무준칙 제1호]

관리인 등의 선임·해임·감독 기준

2006. 4. 1. 시행

2010. 11. 1. 개정

1. 목 적

이 준칙은 법인 채무자(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의 업무 수행권 및 관리처분권을 갖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 관하여 그 선임·불선임 및 해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을 유도하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감독 및 포상기준을 밝힘으로써 회생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

2. 기존 경영자 관리인

가. 의 의

기존 경영자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채무자의 대표자를 말하고, 기존 경영자 관리인이라 함은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당해 관리인을 말한다.

나. 선임 원칙과 기준

- (1)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전 사이에 채무자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 (2) 채무자에 관하여 법 제74조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이사, 지배인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다. 선임 절차

- (1)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위 심문절차에는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등 주요 채권자도 참석하여 관리인 선임 및 회생절차 개시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2) 위 심문절차가 종료한 후 신속하게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한다.
- (3) 채무자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와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결과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의 존재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다.

라. 수

- (1) 채무자에게 공동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은 1인을 선임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 (2) 아래의 경우에는 수인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을 고려할 수 있다.
 - ① 채무자의 업무적 특성상 2개 이상의 전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② 채무자 내부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기존 경영자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상호간의 업무분장을 정할 수 있다.

마. 임 기

- (1)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기제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 (2)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선임 후 채무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사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바. 해 임

- (1)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후 법 제8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 관리인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 (2) 법 제83조 제2항 제3호의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① 관리인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영업이익을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때
 - ② 관리인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영업이익을 총 3회 달성하지 못한 때

3. 제3자 관리인

가. 의 의

제3자 관리인이라 함은 법원이 제2항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이외의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당해 관리인을 말한다.

나. 선임 원칙 및 기준

- (1) 제3자 관리인은 채무자에 관하여 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거나 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 선임한다.
- (2) 제3자 관리인의 선정은 전문경영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수행의 경력 또는 소양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 (3)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를 인수한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그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참작한다.
- (4) 법인보다는 자연인을 우선하여 제3자 관리인으로 선정한다.

다. 선임방법 및 절차

- (1) 법원은 각종 경제단체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널리 경영능력 등을 구비한 전문인력을 물색하여 미리 적임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가 제3자 관리인 선정 때 활용한다.
- (2) 법원은 판사 3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복수의 후보자에 대한 구두 면접을 실시한 후 최다 득점자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최다득점자가 제3자 관리인 선임을 거절하는 경우, 최다득점자에게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 (3)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① 기존 제3자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해당 채무자의 제3자 관리인으로 재선임하는 경우
 -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제3자 관리인, 감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3자 관리인, 감사로서의 자질과 경륜, 경영능력, 청렴성 등이 인정된 자를 선임하는 경우
 - ③ 다른 채무자의 제3자 관리인 및 감사 면접에 응하였으나 선임되지 않은 자로서, 해당 면접과정에서 자질과 경륜, 경영능력, 청렴성 등이 인정된 자를 선임하는 경우
 - ④ 기존에 확보된 관리인 적임자 명단에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적절한 후보가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위 (3)의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주요 채권자, 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자, 관련 행정부처, 기타 적절한 기관에게 추천을 의뢰하거나 공개모집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추천을 의뢰할 때에는 “관리인 추천에 유의할 사항(양식 1)”을 첨부한다.

- (5) 면접위원은 면접이 종료된 후 제3자 관리인 후보자에 대한 채점이 기재된 면접표를 파산부 기획법관에게 송부한다.

라. 의견조회

법원은 선정한 후보자에 관하여 이력서를 첨부하여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을 조회하고 그 의견을 참작하여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마. 수

- (1) 제3자 관리인은 1인을 선임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2) 아래의 경우에는 수인의 제3자 관리인 선임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채무자의 업무적 특성상 2개 이상의 전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3자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상호간의 업무분장을 정할 수 있다.

바. 임 기

- (1) 제3자 관리인은 임기를 정하여 선임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체제를 확립한다. 다만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자를 인수하거나 실질적인 지배 지분을 확보한 제3자나 그가 추천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제3자 관리인의 임기는 선임일부터 2년으로 하되, 채무자의 결산기, 실적평가에 필요한 기간, 법원의 업무량,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한다.
(3)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선임된 제3자 관리인의 임기는 회생계획인가일 또는 회생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 때까지)로 하며,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위 (2)에 의하여 새로이 임기를 정한다.

- (4) 제3자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법 제83조 제2항 각 호의 해임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재선임한다.
- (5) 제3자 관리인을 재선임함에 있어서도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에게 그 의견을 조회한다.

사. 해 임

제3자 관리인의 해임에 관하여는 제2항 바.호를 준용한다.

4. 법 제74조 제3항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가. 의 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라 함은, 법원이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의 기준 및 절차

- (1) 관리인 불선임 여부는, 중소기업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① 채무자 및 채권자협의회 의견
 - ② 자산, 부채, 자본금의 규모
 - ③ 채무자에 대한 주식·출자지분의 분포
 - ④ 채무자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결정에 대한 경험 및 적합성
- (2) 제 2 항 다.호의 규정은 법원이 관리인 불선임결정을 할 경우에 준용한다.

다. 채무자의 대표자의 선정절차 및 기준

- (1)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의 단계에서는, 채무자 내부의 주주총회결의·사원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등 통상적인 대

표자 선임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대표자를 선정한다.

- (2) 회생계획 인가 후의 단계에서는, 법 제20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3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선정한 자, 회생계획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또는 회생계획에서 유임할 것으로 정한 자가 채무자의 대표자가 된다.
- (3) 채무자의 대표자의 선정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일반의 이익에 합치하여야 한다.

라. 수

- (1) 회생계획 인가 후의 단계에서 여럿의 대표자에게 채무자를 대표하게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을 정하여야 한다.
- (2) 위 (1)의 경우 여럿의 대표자 상호간에 그 업무분장을 정할 수 있다.

마. 임 기

- (1)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의 단계에서 채무자 내부의 통상적인 대표자 선임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회생계획 인가 후 단계에서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대표자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1년을 넘지 못한다.
- (3) 채무자의 대표자는 연임할 수 있다.

바. 해 임

- (1)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의 단계에서는, 채무자 내부의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등 통상적인 대표자 선임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대표자를 해임한다.
- (2) 회생계획 인가 후의 단계에서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대표자를 해임한다.

사. 관리인의 선임

법원이 법 제74조 제3항의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한 후 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한 업무의 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새로 선임된 관리인이 그 권한을 가진다.

5. 보 수

가. 적용 범위

아래 나.호, 다.호의 각 규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3자 관리인,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이하 '관리인 등'이라고 한다)에게 모두 적용된다.

나. 보수 기준

- (1) 관리인 등의 보수는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 중 당해 업종 경영자의 보수실태를 참작하고 기존의 보수체계와 채무자의 재정상태, 관리인 등의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리인 등의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관리인 등이 퇴직하는 때에는 위 (1)의 보수와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의 액수는 채무자의 퇴직금 규정, 재직기간, 관리인 등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 퇴직 사유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특별보상금 기준

- (1) 법원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 채무자의 규모와 재정상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인 등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관리인 등이 그의 경영 수완에 의하여 회생계획이 예정한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때
 - ② 관리인 등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당해 관리인 등의 최초 취임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된 때
 - ③ 관리인 등이 능동적으로 신규 자본을 물색·유입하거나 다른 우량기업과 인수·합병을 이룩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기여를 한 때
- (2) 위 (1)의 특별보상금은 채무자의 규모와 재정상황,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3억 원을 한도로 정하되, 이에 갈음하여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스톡 옵션)를 부여할 수 있다.

6. 관리인대리

- 가. 관리인대리는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선임을 허가한다.
- 나.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로 하여금 즉시 그 사유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 다. 관리인대리에 대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제4항 나.호 및 다.호를 준용한다.

7. 선임증·증명서의 수여

- 가. 채무자의 관리인에게는 선임을 증명하는 선임증을,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는 업무의 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수여한다.
- 나. 관리인 등에게 선임증·증명서를 수여할 때에는 성실한 책무 수행을 당부한다.
- 다. 선임증·증명서를 수여할 때에는 가급적 채무자의 주요 간부를 참석하게 하여 관리인 등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고 체감하게 한다.

8. 개인 채무자에 대한 준용

위 규정들은 성질에 반하지 않은 한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9. 보전관리인에 대한 준용

위 규정들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전관리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부칙, 2010. 11. 1.〉

1. 이 준칙은 2010. 1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양식] 생략

[회생실무준칙 제4호]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2006. 4. 1. 시행

2010. 11. 1. 개정

1. 목 적

이 준칙은 법인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 감사제도의 실효를 기함으로써 채무자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임시기

법원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감사를 선임한다.

3. 선임원칙 및 방법

가. 선임기준

법원은 채권자협회의 의견을 들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엄정한 직무수행을 기할 자질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감사로 선임한다.

- ① 채무자의 업종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에 전문적 경험이나 식견이 있는 사람
- ② 회계업무 또는 감사업무에 상당한 경험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선임방법

「관리인 등의 선임·해임·감독 기준」(회생실무준칙 제1호) 제3항 다.호의 규정은 감사의 선임방법으로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자 관리인”은 “감사”로 본다.

4. 겸임금지

감사는 채무자의 관리인, 관리인대리,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5. 공동감사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업종, 영업력, 영업규모, 감사의 필요성 및 그 정도 등을 참작하여 1인을 여럿의 채무자의 감사로 선임할 수 있다.

6. 임 기

가. 감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나.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길어도 3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7. 선 서 서

감사는 그 직에 취임함에 있어 [별지 양식]에 의한 선서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감사의 조사·보고의무

감사는 상법 제412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외에 법원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9. 감사의 업무수행

가. 업무수행 요령

- (1) 감사는 채무자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계장부 기타 채무자의 내부 서류를 열람하고 영업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2) 채무자는 감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고,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서류를 모두 그 결재 전 또는 결재 후 지체 없이 감사의 공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 (3)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회계 장부 기타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관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2조 참조).

나. 중점 감사 사항

감사는 엄정하고 객관성 있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① 법원의 허가 없는 자금의 조성 및 지출 여부
- ② 회계계정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 ③ 부당한 수입감소 또는 지출증가가 있는지 여부
- ④ 채무자 조직의 능률성
- ⑤ 채무자 내부에 파벌 또는 이익집단,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의 존재
- ⑥ 노동생산성의 저하, 근로 분위기의 해이 기타 채무자 운영에 있어 부정적 요인의 존재
- ⑦ 당원 회생실무준칙 제9호(“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요령”) 제2항 소정의 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상법 제412조의4 참조)
- ⑧ 관리인이 조사를 요구한 사항

10. 감사 의견서

가. 감사는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분기별 보고시에, 이와 별도로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감사의견서에는 채무자의 업무처리 과정에 상법 제413조에 규

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명기하여야 하고,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회계 및 자금관계 보고내용의 적부
- ② 당해 분기 감사실적의 개요
- ③ 자회사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특이 사항

11. 하명사항 조사 및 대면보고

가. 하명사항 조사·보고

감사는 상법 제412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외에 법원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나. 대면보고

- (1) 아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사는 그가 알게 된 내용을 지체 없이 법원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이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이 관련된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
 - ② 채무자 내부의 특이한 사정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
 - ③ 채무자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아니한 사항
 - ④ 급속을 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통상적인 체계를 거쳐서 보고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 (2) 법원은 채무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소환하여 직접 보고하게 한다.

1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채무자 내부에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거나 채무자에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2조의2 참조).

13. 경영침해 금지

- 가. 감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관리인의 직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감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장부, 공람서류 기타 감사를 위하여 제공된 문서와 자료는 신속히 열람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14. 비밀준수의무

감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선관주의의무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懈怠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임직원의 비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감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법 제414조).

〈부칙, 2010. 11. 1.〉

- 1. 이 준칙은 2010. 1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양식] 생략

[회생실무준칙 제5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준칙

2006. 4. 1. 시행

1. 목 적

이 준칙은 법인 채무자로 하여금 매년 의무적으로 적절하고 책임 있는 외부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감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법인 채무자의 재정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여 회생계획 수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를 거두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준칙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모든 법인 채무자(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채무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영세한 소규모 법인, 비영리 법인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본 준칙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3.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가.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의 개시 후 4월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부감사인과 채무자에 대한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장기 회계감사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거나 기타 사유로 당해 연도에 별도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위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외감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의 지정을 받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개시 후 4월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외부감사인을 지정요청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외감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지정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지정된 외부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호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당해 채무자가 외감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외부감사인 선정방식과 절차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외부 회계감사 면제

채무자가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후 4월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외부 회계감사 면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외부감사인의 선정자격

- 가. 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 및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해 채무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만한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나.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3년 이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외부감사인은 회생계획 인가 회계연도부터 3년간, 당해 채무자의 조사위원직을 수행하였던 외부감사인은 회생계획 인가 회계연도 익년부터 3년간 당해 채무자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 다. 동일한 외부감사인과는 3개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기간 연속하여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서약서의 제출

- 가.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지 양식 1]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관리인은 이 서약서를 계약체결 허가신청서에 첨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1항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회생계획 조항

회생계획의 심리·결의 전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별지 양식 2]의 조항을 회생계획에 삽입하게 한다.

[양식 1]

서 약 서

본인은 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직접 회계감사명령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며,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계상의 부실이나 분식결산의 결과를 밝혀내지 못한 때에는 법원이 내리는 어떠한 문책도 이의 없이 승복할 것임을 이 각서로써 서약합니다.

2008. . . .

감사인 ○ ○ ○

[양식 2]

회생계획에 삽입할 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조항

채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

[회생실무준칙 제6호]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

2006. 4. 1. 제정
2007. 1. 28. 개정
2008. 1. 22. 개정

1.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은 법인 채무자(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이하 ‘요허가금액’이라 한다)의 하한은 채무자의 연간 매출액에 따른 [별표 1]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자산 총액, 허가신청의 빈도, 업종과 규모가 유사한 다른 채무자의 요허가금액 현황,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여부 기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가감한 금액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금액은 미리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3. 회생계획 인가 전에 있는 채무자의 요허가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간매출액 100억 이하인 채무자는 500만 원으로, 연간 매출액 100억 초과인 채무자는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인가 후에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허가기준금액을 재조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요허가금액은 채무자의 영업상황에 따라 그 적정 여부를 매년 재검토한다.

[별표 1] 연간 매출액에 따른 요허가금액의 기준

연간 매출액(원)	기준액(원)
100억 이하	5,000,000
500억 이하	10,000,000
500억 ~ 1,000억	20,000,000
1,000억 ~ 5,000억	30,000,000
5,000억 초과	50,000,000

[회생실무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

2006. 4. 1. 시행
2010. 7. 12. 개정

1. 보고서의 종류

- 가. 채무자가 법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는 월간보고서, 분기 보고서,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3가지 종류로 하고,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도 지체 없이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 나. 2/4분기보고서는 제목을 “반기보고서”로 붙이고, 4/4분기보고서는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단, 매 분기 말의 월간보고서(3, 6, 9, 12월의 월간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 다. 분기의 표시는 채무자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는 1, 2, 3월이, 3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4, 5, 6월이, 6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7, 8, 9월이, 9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10, 11, 12월이 1/4분기가 된다.

2. 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횟수

- 가. 월간보고서는 그 다음달 20일까지,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결산기가 연 말인 채무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매년 3월 31일까지), 분기보고서(1/4분기, 3/4분기보고서)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기(2/4분기)보고서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결산기가 연

말인 채무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1/4분기 보고서는 4월 30일, 반기보고서는 8월 31일, 3/4분기는 10월 31일까지에 제출한다.

- 나. 해당 재판부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 수행 상태, 영업상황, 경영실태, 자금사정, 관리인의 업무수행 성실도 등을 종합하여 월간보고서를 격월간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1/4분기 및 3/4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3. 보고서를 제출할 채무자

- 가. 월간·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 포함)는 보전처분 이후 단계의 채무자가 제출하고,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는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한하여 제출한다(다만 보전처분 이후 단계의 채무자가 개시결정을 받지 않은 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가 아니라 4/4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되, 그 내용은 1/4분기, 3/4분기보고서의 작성요령에 따른다).
- 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는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제출한다.
- 다. 제2항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개인 채무자,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 전후를 묻지 않고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작성·제출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보고서의 제출방법과 부수

- 가. 월간보고서: “Excel”이나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후 4부(법원용, 재판장용, 주심판사용, 관리위원용)를 출력하여 파산과에 접수시키고, 해당 File을 주심판사에게 E-Mail로 송부한다.
- 나. 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 포함)와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Excel”이나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후 4부(법원용, 재판장용, 주심

판사용, 관리위원용)를 출력하여 파산과에 접수시키고, 해당 File을 주심판사에게 E-Mail로 송부한다.

- 다. File을 주심판사에게 E-Mail로 송부함에 있어서는 E-Mail의 제목만으로 어느 채무자가 보낸 무슨 파일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파일명은 우선 채무자 이름을 다른 채무자와 구분할 수 있도록 2, 3자로 줄여 표기하고 연도와 월 또는 분기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보고서의 작성요령

가. 월간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①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 [별지 1]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양식으로 작성
 - 부가가치세는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에서 제외할 것
- 양식 하단의 「그 달까지의 누계」칸에는 당월까지의 실적·회생계획의 누계와 그 달성률을 표기
- 회생계획상 연간 목표액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출, 입금액을 월간 목표액으로 배분함에 있어서는 회생계획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월별 목표액 비율에 따라 배분

② 자금수지표:

- [별지 2] 「자금수지표(총괄)」 및 [별지 2-1] 「자금수지실적명세」 양식으로 작성
- [별지 2] 「자금수지표(총괄)」을 작성함에 있어 회생계획상 연간 목표액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입, 지출액을 월간 목표액으로 배분함에 있어서는 회생계획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월별 목표액 비율에 따라 배분. 단 지출에는 회생계획상 변제예정 월에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의 변제 예정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작성

- ③ 어음·수표발행현황과 자금수지표(어음수표를 발행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어음수표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는 제목만 기재하고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
 - 별지 3 「어음·수표발행현황과 자금수지표」 양식으로 작성
- ④ 당해 월에 발생한 주요 사항
 - 그 달에 발생한 주요 회생계획수행상황(회생계획의 변제계획, 자산 처분계획 중 수행한 것, 수행하지 못한 것 등), 인원 및 영업, 노사관계 중 특이사항, 기타 보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재
- ⑤ 허가사항내역:
 - 허가사항 총괄표
 - 법원 허가사항 명세
 - 관리위원 허가사항 명세
- ⑥ 허가금액 이하 지출내역
- ⑦ 허가금액 이상 지출내역 [허가금액을 초과하기는 하나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사전허가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의 지출내역을 의미함]
- ⑧ 채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제9호(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요령) 소정의 자회사(이하 ‘자회사’라고만 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회사에 관한 주요 사항의 변동
- ⑨ 공익채권 현황표: [별지 4] (예시) 「공익채권 현황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금융기관 공익채권, 상거래 공익채권, 제세공과금 공익채권, 기타 공익채권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
 - 개시결정일(회생계획 인가 전 회사) 또는 회생계획 인가일(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 기준, 전년도 말, 직전 분기 말, 직전 월 말과 대비

- 증감내역과 그 원인분석
- 보유 매출채권의 합계액 기재

⑩ 시재보유 현황

-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시재보유 현황을 현금, 예금, 어음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채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 관한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내역서를 첨부할 것
- [회계연도 마지막 달의 월간보고서에는 위 기재사항 이외에 신회계연도의 월별 매출목표 및 자금수지계획, 분기별 손익목표(전년 실적 및 회생계획과 비교)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회생계획상 당해 연도 변제분에 대한 이행상황을 기재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이행상황표」를 첨부할 것. 사업계획서는 별도 파일로 제출]

나. 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1/4분기보고서 및 3/4분기보고서)

(1) 기재사항의 주요 목차

- ① 인원현황
- ② 영업현황
 - ㉠ 매출 및 입금실적,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종합의견과 전망 및 대책
- ③ 회생계획 수행현황
 -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변제현황, ㉡ 부동산 매각, ㉢ 신주발행, ㉣ 기타
- ④ 보고사항
 -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현황표, ㉡ 향후 1년간 변제할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금액, ㉢ 공익채권 현황표, ㉣ 신규자본유치 및 M&A를 위한 조치사항 및 실적, ㉤ 어음·수표 발행현황, ㉥ 가압류, 가처분, 소송현황, ㉦ 접대비 사용현황, ㉧ 사업현장 명세(건설채무자의 경우), ㉨ 기타 당기에 발생한 특이사항

(2) 기재요령

(가) 일반적인 기재요령

- 아래와 같이 각 기재 항목별로 제시하는 작성요령과 작성양식에 따라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보고서를 작성한다(당해 채무자에 해당사항이 없는 기재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제목은 기재하고 “해당 없음” 표시를 할 것).
- 제시하고 있는 작성양식 중 “[별지](예시)”로 표현하고 있는 양식은 채무자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예시)”로 표현하고 있지 아니한 [별지 양식]은 그 양식 그대로 작성한다. 다만 “(예시)”로 표현하고 있지 아니한 [별지 양식] 가운데 그와 같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 현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데 미흡한 면이 있다면, 채무자 현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양식을 자체 개발하여 작성할 수 있다(다만 제시한 양식의 기재사항은 누락되지 말아야 함).
- 기재항목에 대하여 법원이 특별히 제시하고 있는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실정에 맞게 양식을 만들어 보고한다.
- 각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적과 회생계획상의 예정치 사이에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註)를 달아 그 사유를 기재한다. 또한 대차대조표의 각 항목 중 전기에 비하여 큰 변동이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도 각기 주(註)를 달아 그 사유를 기재한다. 위와 같은 각 주(註)의 설명은 법원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것이어야 한다.
- 매출, 입금, 수주, 자금수지 등 회생계획상 연간 목표액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을 월간(또는 분기) 목표액으로 배분함에 있어서는 회생계획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월별 목표액 비율에 따라 배분.
- 손익항목의 매출원가율, 관관비율 등 회생계획상 연간 매출액 대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분기의 회생계획 목표액을 정함에

있어 그 매출액 대비율을 임의로 변경시키지 말고 연간기준 매출액 대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

-위의 기재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관리인의 판단하에 의미 있는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 권장함(예컨대, 재무제표상의 특이사항에 관한 설명, 시설투자·기술투자계획 및 실적, 인적 자원의 관리계획 및 실적, 노사화합방안, 채권회수계획 및 실적, 기타 회생계획완수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각종 장단기 혁신계획(Innovation)과 실적 등).

(나) 구체적인 기재요령

① 인원현황:

- 직급별, 본사·공장(현장)별/지역별 등으로 적절히 구분하여 작성
- 전년도 말과 직전 분기 말과 증감대비, 변동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간단히 이유를 기재

② 영업현황

○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별지 1] 양식으로 총괄표 작성

- 과거 실적, 회생계획은 1년분을 모두 기재하고 올해 실적은 다달이 기재해 나감
- 반드시 회생계획과 대비할 것(회생계획에 월별 또는 분기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기재방법: 회생계획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월별 또는 분기별 목표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표시할 것).
- 달성률은 전년 및 회생계획과 대비한 실적의 비율을 %로 기재(예컨대, 10%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110%, 10% 미달한 경우에는 90%로 기재/종전의 증감률 개념으로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부가가치세는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에서 제외할 것
- [별지 5] (예시)를 참고하여 주요 부문(품목)별 매출실적표 작성
-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각 부문(품목)별 비중 표시
- [별지 6] (예시)를 참고하여 주요 부문(품목)별 생산실적표 작성(제조업의 경우)
- 전년도 같은 분기와 직전 분기 말과 대비하고 공장가동률 표시
- 수출부문이 있는 경우, [별지 7] (예시), [별지 8] (예시)을 참고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수출대금 결제현황표를 작성
- 수주실적표
- 건설, 조선, 기타 주문생산부문이 있는 경우 수주실적표 작성(양식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작성)
- 수주실적표도 위 “매출실적” 작성요령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거 실적, 회생계획표의 수주계획을 기재하고 상호 대비
- 건설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의 경우 현장명, 발주처, 수주금액(계약변경분 포함하되 계약변경분임을 부기), 공사기간 등을 기재
- 분기 대차대조표:
- [별지 9] (예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전년도 말, 직전 분기 말과 대비하여 증감을 표시하고 증감원인을 기재
- 대차대조표는 요약대차대조표 및 상세대차대조표를 모두 작성하되 증감비교는 요약대차대조표 항목만 하여도 무방함.
- 분기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는 [별지 10., 11., 12.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① 해당 분기 손익계산서(요약)

② 1/4분기~해당 분기 손익계산서(요약)

③ 1/4분기~해당 분기 손익계산서(상세) 3개의 손익계산서를 작성 첨부

(물론 1/4분기보고서의 경우는 ② 1/4분기~해당 분기 손익계산서(요약)가 불필요함)

-위 2개의 요약 손익계산서(①, ②)에 대하여는 반드시 회생 계획(회생계획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분기로 나눈 금액), 전년도 같은 기간 2개 수치와 대비하여 항목별 달성률(※증감률이 아님)을 표시하고, 상세 손익계산서는 그냥 통상적인 결산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요약 손익계산서에는 각 항목이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원가율, 매출총이익률, 판매비율,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등)을 표기할 것.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재무회계)를 작성하되, 별도로 관리회계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와 대비하고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은 비교란에 그 내역을 기재한다[별지 10-1., 11-1. 양식]. 관리회계에 따른 손익계산서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대손상각(경상적인 것을 제외한다), 채무면제이익, 재해손실 등 채무자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이 당해 분기에 특수하게 발생한 손익항목을 제외한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위 항목 외에 추가로 관리회계에 따른 손익내역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내역과 달리 작성하려면 이를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비교란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요약손익계산서(누계)의 하단 또는 다음 장에 각 회계연도 개시 후부터 당해 분기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보상비율을

기재(이자보상비율은 이자비용 및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출하되, 그 이자비용에는 지급이자, 할인료, 사채이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지급이자에는 공익채권에 대한 이자뿐 아니라 회생채권에 대한 발생이자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함. 다만 현가할인차금상각 및 채무면제이익은 제외하고 산정)

○ 종합의견과 전망 및 대책

-영업현황(매출, 손익, 자금현황)에 대한 자체분석, 향후 영업전망, 만회대책 등을 기재

-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상의 추정손익, 추정자금수지, 변제계획을 명실상부하게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특히 “회생계획”과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원인과 대책),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동향과 해당 채무자의 영업현황(매출구조, 손익구조, 수출비중의 변화 등)에 대한 분석, 나아가 채무자가 잔여 회생계획상의 손익, 자금수지, 변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예컨대, 매출증대, 손익개선, 매출 또는 손익구조의 개편, 조직정비, 노사화합, 시설투자, 기타 회생계획완수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각종 장단기 혁신계획(Innovation)과 이를 위한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기재하기 바람.

③ 회생계획 수행현황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변제현황

-[별지 13]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현황」 양식에 따라 회생계획상 당해 분기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회생채무 내역을 기재하고 그 변제현황을 기재

-미변제금액(과거분 포함)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확한 세부내역(채권자 이름/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여부/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내역/원래 변제기/연체 시 적용하기로 한 회생계획상의 연체이자율 및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액), 지체사유(채권자미수령의 경우도 이러한 사유를 기재), 향후 변제계획 및 대책 등을 별도 표로 상세히 기재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재는 미변제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매 분기보고서마다 기재할 것.

-[별지 13]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현황」양식 중 “변제실적-전분기까지 요변제액”은 바로 전분기의 요변제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결정 후부터 전분기까지 요변제액 총액을 말하는 것임, “변제실적-미변제액”은 인가결정 후부터 전분기까지의 요변제액 중 미변제된 채권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변제실적-조기변제액”은 당분기를 포함한 향후 요변제액에서 미리 변제된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 부동산매각, 신주발행, 기타

-부동산매각, 신주발행, 기타 회생계획상 당해 분기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수행현황기재,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향후 수행계획 및 대책을 기재(미수행의 경우에 기재하는 향후 수행계획 및 대책은 미수행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매 분기보고서마다 기재)

-향후 1년 내에 수행하여야 할 부동산매각(회생계획상 이미 매각을 하였어야 할 부동산 포함), 신주발행, 기타 회생계획상의 이행예정사항과 그 이행전망(① 회생계획상 매각시기, 매각예정금액, ② 매각 불이행 시 처리방법 - 연체이자 적용 여부, 매각위임이나 공매위임 등의 조치가 강제되어 있는지 여부 등, ③ 매각 추진 경과, ④ 향후 이행 전망, 매각 불이행 시 자금운용대책 등의 요령으로 기재)

-회생계획상의 자산매각계획과 채무변제계획의 관계(실제 매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계획상의 매각예정연도에 예상매각대금 상당의 금액을 회생담보권자에게 무조건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매각된 경우에만 그 매각대금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변제조항(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에 따라 변제하면 되는 것인지, 또한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회생계획상 자금수지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④ 보고사항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종합변제실적 및 변제계획표:

-[별지 14] 「회생담보권·회생채권 종합변제실적 및 변제계획표」 양식에 따라 매 보고서마다 작성(※변제시기 또는 변제금액이 가변적인 보증채무는 본 표에서는 제외하고 별도 표로 처리)

- ㉑ 실변제대상채권액: 인가 당시 확정된 원금, 개시전이자 중 권리변경 후의 금액(즉, 면제 또는 출자전환된 채권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고, 개시 후 이자는 인가 당시 예상하여 적용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즉, 회생계획상의 개시 후 이자 금액)을 기재
- ㉒ 변제실적: 채무자의 변제행위(상계 포함)로 인한 부분만 기재, 일부 금액을 조기변제하면서 나머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변제실적에 반영시킬 것, 조기변제한 경우의 연도 표시는 당초 회생계획상의 변제연도에 의함(즉, 회생계획상 2010년도에 변제예정이던 채무를 2008년에 변제하였으면 변제실적란에 2010년도 칸을 만들어 변제금액을 기재)
- ㉓ 변동: 인가 이후 보고서작성기준일까지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의 패소로 인한 증가분, 환율·이자율

변경으로 인한 증감분, 구상권 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로 인한 감소분, 원금의 조기변제로 인한 개시 후 이자 자연 감소분 등 위 ㉞변제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변동금액을 기재하고, 각 변동항목에 대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

㉞ 채권잔액: ㉞ - ㉞ - ㉞

㉞ 변제계획: 원칙적으로 장래의 도래분만 기재하나, 지나간 연도 중에 미변제금액(채권자미수령 포함)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해당 연도칸을 만들어 미변제잔액을 기재

○ 향후 1년간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금액

-[별지 15] 「향후 1년간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금액」 양식에 따라 변제기 순서에 따라 표로 작성(※ 정확한 변제기일을 기재하고, 기존의 미변제금액도 향후 1년간 변제하여야 할 채권금액으로 포함시키되 이 부분에 대한 변제기 표시는 원래 변제하였어야 할 변제기를 기재할 것)하고, 그 변제전망(변제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하고 책임 있는 의견) 및 변제재원(○○부동산매각대금 ○○억 원, ○○주식매각대금 ○억 원, 증자대금 ○억 원, 영업수익금 ○억 원 등 회생계획상의 예상변제재원과 실제 예상변제재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16] 「보증채무 현실화현황 및 종합변제계획표」 양식에 따라 매 보고서마다 작성

-변제시기 또는 변제금액이 가변적인 보증채무(회생계획상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기로 하되,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등의 사유 발생시 채무자가 …… 변제한다.”는 식으로 규정된 채무를 의미하며, 주로 대출금 연대보증채무를 지칭)에 대하여는 별도로 표 작성

㉞ 인가 당시 보증채무액: 인가 당시의 보증채무 원금, 개시

진 이자 중 권리변경 후의 금액(즉, 면제 또는 출자전환된 채권을 차감한 금액) 및 회생계획상 지급하기로 한 개시 후 이자(결국 현실화되어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보증채무액)를 기재

- ㉞ 변제실적: 위 보증채무 중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이미 변제(상계 포함)한 부분을 기재, 일부 금액을 조기변제하면서 나머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변제실적에 반영시킬 것, 조기변제한 경우의 연도 표시는 당초 회생계획상의 변제연도에 의함(즉, 회생계획상 2010년도에 변제예정이던 채무를 2008년에 변제하였으면 변제실적란에 2010년도 칸을 만들어 변제금액을 기재)
- ㉟ 변동: 인가 이후 보고서작성 기준일까지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의 패소로 인한 증가분, 환율·이자율 변경으로 인한 증감분,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한 감소분 등 위 ㉞변제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변동금액을 기재하고, 각 변동항목에 대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
- ㊱ 채권 잔액: 계: ㉞ - ㉟ - ㉟ = 우발 + 현실화, 우발: 채권 잔액 중 아직 현실화되지 아니한 금액, 현실화: 채권 잔액 중 이미 현실화된 금액
- ㊲ 변제계획: 원칙적으로 장래의 도래분만 기재하나, 지나간 연도 중에 미변제금액(채권자 미수령 포함)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해당 연도 칸을 만들어 미변제잔액을 기재
- 공익채권 현황표: [별지 17] (예시) 「공익채권 현황」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금융기관 공익채권, 상거래 공익채권, 기타 공익채권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
 - 전년도 말, 직전 분기 말과 대비

- 증감내역과 그 원인분석
- 신규자본유치 및 M&A를 위한 조치사항 및 실적
- 어음, 수표 발행현황: [별지 18] (예시) 「어음, 수표 발행현황」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
 - 당좌개설은행 표기
- 가압류, 가처분, 소송현황: [별지 19]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
 - 가압류, 가처분 외에 계류중인 소송(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 포함)도 기재
 - 채무자가 신청인(원고)이든, 피신청인(피고)이든 불문하고 기재
 - 가압류, 가처분은 해당 분기에 있었던 것만 기재하고, 소송은 현재 계류중인 것 모두 기재
- 접대비 사용현황: [별지 20]과 같은 양식으로 기재
 - 반드시 위 내용 외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되는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하고, 실제 지출액이 이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재할 것
- 사업현장명세:
 - 건설채무자의 경우에 [별지 21] 「사업현장명세」 양식에 따라 작성
 - 미분양아파트 현황도 별도로 기재
- 기타 사항: 기간(분기, 반기, 연) 중 채무자에 있었던 중요사항 또는 특이사항 기재
- 자회사에 관한 주요 사항의 변동, 자회사의 상세손익계산서 (그 요령은 채무자에 대한 것과 같다)
 - ※ 분기보고서 작성시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가결산 수치를 토대로 가결산 수치임을 적절히 표시하여 제출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되, 추후 결산이 완료되면 과거 분기보고서 중 결산완료시 달라진 부분을 명기한 수정보고서를 제출할 것

다. 반기보고서(2/4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2/4분기보고서(회계연도의 중간보고서)는 “반기보고서”로 표기
-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은 위 분기보고서에 준함
- 반기보고서와 별도로 2/4분기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음
- 반기보고서는 반기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감사기관의 반기검토의견서 또한 나오는 대로 법원에 제출(상장기업 등 반기검토보고서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 ※ 반기보고서 작성시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가결산 수치를 토대로 가결산 수치임을 적절히 표시하여 제출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되, 추후 결산이 완료되면 과거 반기보고서 중 결산완료시 달라진 부분을 명기한 수정보고서를 제출할 것

라.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① 채무자의 개요
 - 설립연월일, 설립자, 채무자연혁, 본·지점 및 공장 소재지
 - 계열기업인 경우 소속 그룹명 및 그 현황, 소속일자, 계열기업이 된 사정(과거 계열기업이었던 경우는 과거 소속 그룹명, 계열분리일자, 계열분리된 경위)
 - 주요 업종, 생산품, 주요 판매처
 - 업계순위(매출실적, 생산시설의 규모, 시장점유율 등에 따른 업계 순위)와 주요 경쟁업체
 - 채무자 기관·부서 도표(담당자 표시)
 - 임원 현황 및 직책, 보수, 최근 5년간 임원 수의 변동추이(감사를 두고 있는지 여부, 있다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실질적인 감사인지 아니면 명목상의 감사인지 여부와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재), 보고서 말미에 임원이력서 첨부
 - 직원 현황(총수 및 사업별·직급별 현황), 최근 5년간 직원 수의

변동추이

-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른 주요 원인(파탄원인, 부도일자)
- 회생절차 신청경과(신청대리인, 신청일, 보전처분일, 개시일, 회생계획안 최초제출일, 회생계획 인가일, 계획변경일,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유무 등)
- 법원허가금액(최종증액결정일자) 및 허가대상행위, 보고서 말미에 법원의 결정문 사본 첨부
- 결산기준일
- 외부회계감사
 - ㉠ 회계법인명
 - ㉡ 회계법인 선정에 관하여 당원의 허가를 받은 일자, 허가서의 문서번호, 회계감사보수
 - ㉢ 지난 10년간 채무자를 외부감사한 회계법인의 이름 및 감사의 견(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적정 이외의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 기재)
 - ㉣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유
- 회생절차상의 조사위원
- 법률 및 회계, 세무, 노무자문에 관한 사항
- 경영고문, 자문역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정식임원 이외의 고문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성명, 선임경위와 선임일자, 보수, 사무실·차량·기사·비서 제공 여부
- ②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 관하여
 - 성명(한자) 및 인적 사항
 - 이력서
 - 선임일자(보전관리인으로든 관리인으로든 최초 선임된 일자를 기재, 관리인 불선임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일자 및 관리인 불선임결정 일자를 모두 기재), 재선임된 경우 재선임일자 및 임기, 보고서

말미에 최종 선임결정문 사본 첨부

- 현재 보수(법원이 결정해 준 본봉/상여금 또는 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만일 채무자의 사정상 반납하고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별도로 표시), 최초 선임일 이후 보수변동내역, 보고서 말미에 최종 보수결정문 사본 첨부
- 선임 전의 채무자와의 관계(직책), 관리인 등이 된 사정(법 제7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에 의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법원 직권 또는 채권자 추천에 의한 제3자 관리인)
- 전임 보전관리인 및 관리인 등의 성명, 재임기간
- 관리인대리가 있는 경우, 위 관리인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할 것

③ 자본과 관련하여

- 회생계획이 아직 인가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경우: 현재 납입자본금, 발행주식 수, 주식소유관계(총주식수 5% 이상 소유하는 주주명단 및 그 소유비율, 취득일자), 주식의 담보제공상황
- 회생계획이 인가된 채무자의 경우: 회생계획상 주주, 주식에 관한 조항
 -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대한 소각 여부, 그 비율, 이행결과
 - ㉡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납입자본금, 발행주식 수 및 그에 대한 소각 또는 병합 여부, 그 비율, 이행결과(등기부상 주식사항)
 -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출자전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포함) 여부 및 그 결과
 - ㉣ 현재 납입자본금, 발행주식 수, 주식소유관계(총주식 수 5% 이상 소유하는 주주명단 및 그 소유비율, 취득일자), 주식의 담보제공상황
 - ㉤ 회생계획상 향후 신주발행 일정
- 주권발행 여부, 상장(장외등록)법인 여부, 주당 액면가, 최근 주

식시세(또는 거래가격) 및 지난 1년간 주식시세 변동상황의 개요

- ④ 전년도(4/4분기 포함) 영업현황
 -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은 위 분기보고서에 준하여 작성
 - 대차대조표
 -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은 위 분기보고서에 준하여 작성
 - 손익계산서
 -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은 위 분기보고서에 준하여 작성
 - 자금수지표
 - 회생계획,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항목별 증감을 표시
 - 자금수지표 양식은 [별지 22] 「자금수지표(총괄)」, [별지 22-1] (예시) 「회생계획상의 추정 자금수지 내역과 당해 연도의 실제 자금수지 내역 비교표」, [별지 22-2] 「자금수지실적명세」에 따름
 - 종합의견과 전망 및 대책
 - 전년도 영업현황(매출, 손익, 자금현황)에 대한 자체분석
 - 가압류, 가처분, 소송현황
 -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은 위 분기보고서에 준하여 작성
 - 접대비 사용현황
 -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은 위 분기보고서에 준하여 작성
- ⑤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최근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할 것)
 - 신청 당시, 개시 당시, 인가 당시, 최근 자산 및 부채총액
 - 지난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 ※ 외부회계감사결과(또는 인가 전 채무자로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대차대조표인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할 것(아래 손익계산서도 동일)
 - 인가 당시 확정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액수 및 최근의 회생채

- 권, 회생담보권 잔액(원금 및 개시 전 이자, 보증채권 및 장래의 구상권 등으로 구별하여 표 작성)
- 인가 당시 및 최근의 공익채권액(금융기관채무, 상거래채무 기타 등으로 구별)
 - 최근 총채무액(회생채무와 공익채무 총계)
 - 어음·수표의 발행 여부(거래재개 일자, 당좌계정이 개설된 은행 지점 기재) 및 지난 2년간 월별 어음·수표 발행현황(매수 및 금액)
- ⑥ 영업 및 자금수지와 관련하여
- 회생계획기간 중의 추정손익계산서(회생계획안의 추정손익계산서)
 - 지난 5년간의 요약비교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
 - 금년도 사업계획
 - ㉠ 금년 업계동향
 - ㉡ 금년 채무자의 영업전략
 - ㉢ 금년 손익계획 및 자금수지계획(회생계획과 대비하여 월별·분기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의 목표치 및 연간 합계액을 기재)
 - ㉣ 수주부문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건설채무자 등) 인가연도 이후부터 작년까지의 수주실적(회생계획, 자체목표와 대비할 것) 및 금년 수주계획(회생계획 및 자체목표)
 - ㉤ 금년 사업계획의 달성 및 향후 회생계획의 완수를 위하여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예컨대, 조직정비, 판매조직개편, 우수인력유치, 보수체계정비, 신규투자, 고수익 영업부문의 강화, 특정공장의 폐쇄나 이전, 현지법인의 철수, 원가율이나 판관비의 절감, 노

사화합, 증자, 자산매각, 부동산개발, 신제품개발, 미수채권회수 등등)

-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⑦ 회생계획상의 변제계획과 관련하여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요약표 및 변제기일
 - 회생계획안에 따른 연도별·채권별·항목별(원금, 이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대상금액(회생계획안상의 종합변제계획표에 기초)과 실제 변제상황(실변제금액, 미변제금액, 미변제사유를 기재하고 향후 변제대책을 자세히 기재)
 - 회생계획상의 자산매각계획(매각예정자산내역, 매각예정시기, 매각예정가, 실제매각 여부)
 - 회생계획상의 자산매각계획과 채무변제계획의 관계(회생계획상의 매각예정연도에 예상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생담보권자에게 실제 매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매각된 경우에만 그 매각대금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변제조항(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에 따라 변제하면 되는 것인지, 또한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회생계획상 자금수지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 ※ 개시단계 채무자인 경우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과 채권자와의 협의내용, 향후 계획안 통과 일정을 기재
- ⑧ 노사관계에 대하여
 - 노동조합의 유무
 - 노조원의 수(전체 노조가입가능직원 수 중 실제가입자의 비율 표기), 노동조합이 속한 상급 노동단체
 - 최근 노사관계의 동향(특히, 최근 5년간 쟁의행위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경과 기재)
 - 최근 5년간 임금인상의 추이(만일 반납하는 상여금 등이 있다면, 그 규모)

- 올해 임금단체협약의 시기 및 전망
- 기타 노사관계와 관련한 특이사항
- ⑨ 기 타
 - 신규자본유치 및 M&A를 위하여 취한 조치사항 및 실적
 - 개시신청 당시 및 현재의 주거래은행(지점 표시,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구성원 및 대표채권자
 - 잔존 채권금액의 다액 순으로 10대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 (주소·전화·팩스번호·담당부서·담당자)
 - 구 사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채무자와의 현 관계(말고 있는 직책이 있다면 그 직책, 보수, 지원현황)
 - 기타 중요사항 및 법원에 건의할 사항
- ⑩ 감사의 의견(회생실무준칙 제4호)
 - 채무자의 업무처리 과정에 상법 제413조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명기
 - 회계 및 자금관계 보고내용의 적부, 당해 분기 감사 실적의 개요, 자회사에 관한 사항, 기타 특이 사항
- ⑪ 자회사 현황보고서 첨부(회생실무준칙 제9호)
 - 자회사의 개요
 - 설립연월일, 설립자, 채무자연혁, 자회사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본·지점 및 공장소재지
 - 주요 업종, 생산품, 주요 판매처
 - 임원 현황, 임기 및 직책, 선임 전 채무자와의 관계, 보수(임원 이력서 첨부)
 - 직원 현황(총수 및 사업별·직급별 현황)
 - 채무자의 경영 관여 정도
 - 자본에 관한 사항
 - 현재 납입자본금, 발행주식 수, 주식소유관계(총주식 수 5% 이

- 상 소유하는 주주명단 및 그 소유비율
- 주권발행 여부, 상장(장외등록)법인 여부, 주당 액면가, 최근 주
식시세(또는 거래가격) 및 지난 1년간 주식시세 변동상황의 개요
- 자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위 각 사항에 대응하는 사항
-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최근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 기준)
 - 최근 5년간의 채권·채무 총액의 추이
 - 최근 5년간의 비교 대차대조표
 - 자회사의 주요 재산목록
- 영업에 관한 사항
 - 최근 5년간의 요약 비교 손익계산서(매출액 중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당
기순이익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부기할 것)
 - 직전 회계연도의 상세 손익계산서(각 항목의 매출액에 대한 백
분율을 부기함과 아울러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에 따른 각 손익
상황을 비교할 것)
 - 차기 회계연도 손익계획 및 사업전망
- 채무자와 자회사와의 관계
 - 상호간의 영업 거래현황
 - 상호간의 금전대차 기타 채권·채무 내역
 - 회생계획 인가 당시와 전년도 및 당년도의 상호간의 채권·채무
총액의 추이
 - 상호 보증관계
 - 최근 5년간 채무자가 받은 이익배당의 내용
 - 자회사 매각계획의 유무 기타 자회사에 대한 향후 운용방침과
그 경과
- 기타 중요한 사항(채무자가 다른 회사의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그 내역과 사유 등

※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의 각종 수치는 가급적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를 것. 만약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면 가결산 결과에 의하여도 무방하나, 해당부분에 가결산 수치임을 적절히 표시하고,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회계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와 함께 법원에 수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가결산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연간보고서의 수치와 달라진 부분을 지적할 것.

〈부칙, 2010. 7. 12.〉

1. 이 준칙은 2010. 7. 12.부터 시행한다.

[별지 양식] 생략

[회생실무준칙 제9호]

자회사(子會社)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2006. 4. 1. 시행

1. 이 준칙은 채무자의 자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영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준칙에서 자회사라고 함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해외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가. 채무자가 당해 회사 지분(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상법 제342조의2 참조)
 - 나. 채무자가 당해 회사 지분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 회사의 최대 지분 소유자인 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 다. 채무자가 당해 회사의 지분 소유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지분 소유자와 공동으로 당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3. 제2항 각 호의 지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 채무자의 자회사 및 관리인이 각자 소유하는 지분은 이를 모두 합산하여 채무자의 지분으로 본다.
4. 채무자가 다른 회사의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과 사유를 매년 채무자 현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채무자는 매년 채무자 현황보고를 제출할 때에 아래 사항을 명기한

자회사 현황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회사의 개요

- 설립연월일, 설립자, 채무자연혁, 자회사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본·지점 및 공장소재지
- 주요 업종, 생산품, 주요 판매처
- 임원 현황, 임기 및 직책, 선임 전 채무자와의 관계, 보수(임원 이력서 첨부)
- 직원 현황(총수 및 사업별·직급별 현황)
- 채무자의 경영 관여 정도

나. 자본에 관한 사항

- 현재 납입자본금, 발행주식 수, 주식소유관계(총주식 수 5% 이상 소유하는 주주명단 및 그 소유비율)
 - 주권발행 여부, 상장(장외등록)법인 여부, 주당 액면가, 최근 주식 시세(또는 거래가격) 및 지난 1년간 주식시세 변동상황의 개요
 - 자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위 각 사항에 대응하는 사항
- 다.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최근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 기준)

- 최근 5년간의 채권·채무 총액의 추이
- 최근 5년간의 비교 대차대조표
- 자회사의 주요 재산목록

라. 영업에 관한 사항

- 최근 5년간의 요약 비교 손익계산서(매출액 중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부기할 것)
- 직전 회계연도의 상세 손익계산서(각 항목의 매출액에 대한 백분율을 부기함과 아울러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에 따른 각 손익상황을 비교할 것)
- 차기 회계연도 손익계획 및 사업전망

마. 채무자와 자회사와의 관계

- 상호간의 영업 거래현황
- 상호간의 금전대차 기타 채권·채무 내역
- 회생계획 인가 당시와 전년도 및 당년도의 상호간의 채권·채무 총액의 추이
- 상호 보증관계
- 최근 5년간 채무자가 받은 이익배당의 내용
- 자회사 매각계획의 유무 기타 자회사에 대한 향후 운용방침과 그 경과

바. 기타 중요한 사항

6. 채무자는 자회사에 관한 주요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월간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특히 분기보고서에는 자회사의 손익계산서(당해 분기까지의 실적을 누계하여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에 따른 각 손익상황을 비교한 제5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상세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채무자가 주주총회의 결의, 임원의 구성 기타 자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주주 또는 경영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채무자의 보고서를 법원에 전자메일로 송부할 때에는 그에 첨부할 자회사의 보고서도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회생실무준칙 제10호]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2006. 4. 1. 시행

1. 목 적

이 준칙은 법인 채무자(이하 '채무자'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이 근로자 측과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 수준을 결정하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원 칙

채무자의 근로자들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회생계획상의 추정 임금인상률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로 인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절 차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이하 '관리인 등'이라고 한다)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 수준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근로자 측과 합의를 할 때에도 합의 예정안을 법원에 사전 보고하고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보고 자료

관리인 등이 위 3항에 따라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 수준 및 합의 예정안을 법원에 보고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과거 실적

- (1) 최근 3년간 회생계획상의 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이익 달성 정도
- (2) 최근 5년간 직급별 임금인상률
- (3) 과거 상여금 지급률(단체협약 내용 및 실제 지급률)
- (4) 인상 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나. 당해 연도 협상 과정 및 관리인 의견

- (1) 노동조합 유무, 노동조합 가입자의 수 및 비율, 상급노동단체, 최근 노사관계의 동향
- (2) 회생계획상 예정된 당해 연도 임금인상률·인건비총액·매출액 대비 인건비율
- (3) 당해 연도 임금인상 요구내용과 그 협상과정
- (4) 당해 연도 적정임금 기타 근로조건 수준 또는 합의 예정안·관리인 등의 의견

다. 인상 후 예상 자료

- (1) 직급별 1인당 연간 실수령 총액 기준, 인상 전 임금·인상 후 임금·인상액·인상률(연간 호봉승급분 포함)
- (2) 인상 전·인상 후 예상 인건비총액(제수당 및 퇴직금충당금 포함)·인건비부담증가율
- (3) 임금인상 후의 당해 연도의 추정 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이익 및 회생계획 달성률
- (4) 인상 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회생실무준칙 제14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2006. 4. 1. 시행

1. 목 적

이 준칙은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기종결이 적합한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촉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여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한다.

3. 수행가능성의 판단 시 고려 요소

가. 긍정적인 요소

-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 수준을 대폭 초과 달성하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상당한 정도로 초과 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경상이익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나. 부정적인 요소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익채권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노사쟁의, 기타 채무자 내부의 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간섭 등이 계속되어 채무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4. 조기종결의 운영 기준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제3항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위 가.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중 제3항 가.호의 요소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면서 제3항 나.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위 가.호 및 나.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회생계획 수행실적에 비추어 제3항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

- 가.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는 경우에 향후 채무자의 회생계획의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인에게 주요 채권자들의 협의체(이하 '채권자협의회'라고 한다)가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후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 나. (1) 채권자협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그 구성원으로 정할 수 있다.
- 다. 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위 가.호의 권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협의회와 사이에 채권자협의회 내부의 구성과 운영 및 활동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라. 관리인은 회생계획에 위 다.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인집회의 결의 또는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에게 월간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협의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범위를 벗어난 지출 및 중요 자산의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계획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 바.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에게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판단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간섭하거나 시설 투자 및 인력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지출의 통제를 하는 등 채무자의 사업활동 및 경영권의 본질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감사 직무 편람

2016년 1월 25일 인 쇄
2016년 1월 27일 발 행

비 매 품

발 행 법 원 도 서 관
인 쇄 성 문 인 쇄 사
02) 2272-7553

